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장 호 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
- 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언론학 석·박사
(언론/미디어 법제 전공)
-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연구부장,
아산 YMCA 이사
- 논문 및 저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최근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외 다수

1. 서 론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부로 명문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언론중재제도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¹⁾ 2005년 이전까지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받은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다. 법원은 초상권을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 규정했다.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은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의 속성을 갖고, 재산권으로서는 자신의 초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언론보도를 통해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는 주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고, 재산권으로서 초상권 침해는 타인의 초상을 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한다(이승선, 2006).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초상권 보호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결해왔다. 예를 들면 국가는 범죄수사와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촬영이 적법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²⁾

그러나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초상권

1) 제5조 1항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분쟁은
언론 자유와 개인 인격권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법적 기준 통해 해결해야

침해는 보다 엄격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대한 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다.³⁾ 비록 사진 촬영이 아파트 주차장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사진 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 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보험사에게 초상권 침해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침해법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衡量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인의 초상권 침해 여지가 높은 분야 중 하나가 언론이다. 개인의 초상은 언론보도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력 감시와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이 언론의 주된 기능인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개인의 초상은 당사자에게는 수치스러워 공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상과 화면

에 익숙한 독자와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면 언론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해야하고, 종종 초상권 침해 분쟁을 일으키곤 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법적 기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한 위법성 조각의 주요 기준도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취재보도방법의 적절성으로, 언론중재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위수는 “사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위 사실과 일체가 되어 오로지 공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수단방법이 위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한위수, 1994). 김옥조 역시 “공공의 이해와 관계있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이고, 그 사진의 내용이나 촬영의 수단·방법이 위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지”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판결. 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은밀한 촬영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의 일환이고, 촬영장소가 “일반인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영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 13979판결.

주장했다(김옥조, 2005). 김경호도 “초상을 침해한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보도의 내용이 진실성에 기초한 것인지,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이익 형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경호, 2004).

초상권 침해 피해자의 지위나 초상의 촬영 장소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박용상은 공인과 사인의 초상권을 구분하면서, “공적인물이라고 하여 바로 그 초상의 공개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시사적 사안에 관계되어 정당한 공적 관심을 환기하는 경우에만 그의 초상 공개는 가능하다”고 보았다(박용상, 2008). 한편 임건면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제한되지만, 그 초상이 초상 본인에 대한 부당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까지 수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임건면, 2001). 고명식은 사람이 공공장소에 나타난다고 하여 전부 초상의 촬영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군중 앞에 나서서 주목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것은 초상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초상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명식, 2003).

2.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판례분석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 소송의 대부분은 언론사가 당사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초상을 사용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로 언론사의 무책임한 취재보도관행으로 발생한 경우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

피해자가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상권 침해 대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초상권 관련 법적 분쟁이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과 다른 점은 보도내용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판결의 주된 요인이 되지 않고,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다.

법원은 보도내용의 공익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보도된 사안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가를 판별하기도 했고, 원고가 공인인지 일반인인지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원고의 공인 여부를 동시에 거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상의 당사자가 사진촬영이나 사진의 게재 여부를 승낙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었다.

1) 공익성 기준 : 공인과 사인의 구분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지나치게 사생활 보호를 강조할 경우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왔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면 사적 사안의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은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언론보도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면 개인의 사적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도내용 자체의 공익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고 공인에게는 사생활 보호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언론자유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에 대해 친북용공의혹을 제기한 주간지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포금지

법원의 경우, 보도내용 자체의 공익성을 판단하기보다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 공인에게는 사생활 보호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언론자유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 보여

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⁴⁾ 법원은 입증되지 않은 친북의혹을 제기하고, 김대중 후보의 사진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고, 관련기사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진실입증이 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한 보도가 아니라 비방 목적의 보도라면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인 원고의 지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97년 TV 뉴스 앵커를 지낸 한 방송사의 간부가 기자신분을 밝히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다 몰래 촬영당해 타방송사에 보도되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⁵⁾ 법원은 “원고의 행동을 촬영하여 방송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했다. 음주운전의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년 후에도 음주운전 단속 관련 보도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번에는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⁶⁾ 원고를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 방송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원고의 모습을 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여 방영하자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방영,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없이 많이 행해지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 서울지법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도 보여준 방송사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판별하지 않고, 방송내용의 공익성 여부만을 판별했다. 범죄보도가 공익성을 띠는 경우는 그 내용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4)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5)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6)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피의자의 성명이나 신상 정보 등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⁷⁾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은 소위 “○양의 비디오”에 등장한 남자가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일부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⁸⁾(보도내용의 진실성 부족으로 명예훼손도 일부 인정되었다). 언론사들은 “○양의 비디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도할만한 사건이고, 자신들의 보도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비디오에 대한 고발보도라며 공익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보도 내용에 공익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기사들을 읽는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대리만족,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궁금증 고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고 보았다. 비록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의 단행본 수기를

일부 게재한 잡지사에 대한 소송이 1991년 제기되었다. 피고 잡지사가 원고의 수기 중 성폭행 부분만을 발췌해 무단으로 게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잡지사가 수기의 “일부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고,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 기사를 삽입하는 등으로 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고, 원고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⁹⁾ 이 사건에서는 기사내용의 공익성이나 원고의 공인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불법 방북으로 유명해진 한 인사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여, 그와는 무관한 호화결혼식을 비판하는 뉴스에 사용한 방송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¹⁰⁾ 법원은 원고가 공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한 유명 영화배우의 여동생이 사실은 여동생이 아니라 딸이라는 암시를 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당사자의 승낙 없이 사진을 게재한 월간지에 대해 법원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규정하고 판결을 내렸다.¹¹⁾ 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정의하면서,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사생활의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7)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 판결.
 8)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9) 서울지방법원 1991. 1. 17. 선고 90가합15896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11)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공익성과 더불어
언론에게 주어진 또 다른 면책사유는
본인의 승낙

“그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사진을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에 덧붙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인의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고가 영화배우로 활동한 당시는 공인의 신분이지만,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설사 공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 유명 여성연예인의 스캔들 기사를 다루면서 이미 오래전에 공표된 선정적 사진을 무단 게재한 잡지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¹²⁾ 법원은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아울러 초상권 침해도 인정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진을 원고에 대한 추문 기사의 일부로 인식케 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유명인의 경우 비교적 초상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2) 승낙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공익성과 더불어 언론에게 주어진 또 다른 면책사유는 본인의 승낙이다. 언론사가 패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피고의 동의를 얻

지 않고 무단으로 취재하거나 보도를 해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취재원과 약속한 대로 음성이나 화면을 변조하지 않았거나, 취재원에게 약속한 취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한 경우나,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언론사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다.

1993년에는 국내 대학생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외국잡지사에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¹³⁾ 뉴스위크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대생 5명이 대학정문을 걸어 나가고 있는 사진 아래에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사진 속의 학생들은 사진촬영을 인지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었고 기사내용과도 아무 관련이 없었다. 법원은 “초상의 획득 및 공표가 공익적인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공익성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잡지사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설사 범죄나 불법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수치스러운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들은 가장 전형적인 사생활 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1994년 한 방송사가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 문제를 보도하면서 취재원

12) 서울지방법원 1989. 7. 11. 선고 88가합3116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89나36528 판결.

13) 서울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4. 3. 30. 선고 93나31886 판결.

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원고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자 취재원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¹⁴⁾ 법원은 언론이 취재원의 승낙을 받고 개인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보도했으나 그 승낙범위를 넘어 개인의 신분을 공개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설사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언론사가 피해자의 촬영을 사전에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면 사생활 침해로 인정되었다. 한 방송사가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는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한다고 학생들을 설득하여 취재한 후, 실제로는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에 화면을 사용해, 마치 그들이 퇴폐적인 신입생 환영회를 한 것처럼 오인케 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¹⁵⁾ 법원은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라고 판

결했다. 설사 방송프로그램이 공익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생활 비밀 및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유명인사의 결혼식 화면을 호화결혼식 비판 뉴스화면으로 사용한 방송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판결에서 법원은 촬영 당시 원고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설사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결혼식 보도에 관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 데 대해 동의한 것일 뿐, 그 화면을 향후 방송사가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사용하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¹⁶⁾

인신매매에 관한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한 방송사가 서울역 부근 일용노동자들에게 인신매매범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며 인터뷰 촬영을 요구했고, 그들은 얼굴과 목소리 등을 조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응했다. 그러나 정작 방송에서는 음성변조도 하지 않았고 얼굴 일부분을 방영하여,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방송사가 원고들의 신원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범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방영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배상을 명령했다.¹⁷⁾

한 월간지는 서울 일부 지역의 향락문화를 비판 보도하면서, 기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게재해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¹⁸⁾ 법

14)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18)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언론중재제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해

원은 잡지사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진을 찍고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라고 판결했다. 잡지기사의 공익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여성잡지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여성들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기사와 무관한 여성들의 사진을 마치 인터뷰에 응한 여자들의 사진인 것처럼 편집해서 초상권 침해 판결을 받기도 했다.¹⁹⁾ 법원은 문제의 기사가 미혼인 원고들의 인격 및 행실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방송사가 펜션분양 사기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보도된 회사가 사기분양을 했는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원고의 회사가 사기업체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700만 원, 동의 없

이 회사대표의 얼굴을 공표하고 음성을 변조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인정,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²⁰⁾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상권 침해로 제기된 소송이나 초상권 침해로 간주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17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는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경시해서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무모한 보도관행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가 패소한 판결의 상당수가 언론의 명백한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여러 법적 개념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고,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위법성 조각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언론중재제도와 초상권 침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언론중재제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

20) 서울중앙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판결

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초상권 침해도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인격권으로 포함시켰다.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라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발효된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초상권 침해 사건은 165건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처리한 전체 조정 및 중재 청구건수 2,245건의 7.3%에 해당했다. 초상권 침해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0.3%로 전체평균 61.0%보다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성원, 2007).

2005년 7월부터 2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초상권 침해사례 165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촬영, 게재해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언론사에서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였다. 법적 소송과 다른 점은 피해를 주장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적인물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는 점이다. 16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보도내용과 관련 있는 일반인의 초상이나 업체의 상호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경우가 55건, 보도내용과 무관한 일반인의 초상이나 업체의 상호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경우가 37건이었다. 촬영 당시 동의 범위를 넘어 초상을 게재한 경우가 21건이었고, 타 매체나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무단 사용한 경우가 10건이었다. 범죄보도와 관련한 초상권 침해사례도 42건이었는데 이중 33건은 범죄피해자 혹은 제보자의 초상권 침해 사례였고, 범죄가해자 혹은 피의자, 피고인의 초상권 침해는 9건이었다(장성원, 2007).

초상권 침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같은 구제수단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손

해배상이 주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사례를 보면, 청구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배상액은 이보다 크게 낮아, 최저 49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에 달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41건의 초상권 침해 배상에 대한 액수별 분포를 보면, 100만 원 미만의 손해배상 사건은 13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건이 13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10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건이 5건에 해당했다(김동하, 2007).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한 조사관에 따르면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고, “법원과 비슷한 고려 요소를 가지고 손해배상 합의 권고액 내지 결정액을 정하고 있다”(장성원, 2007). 법원 역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액수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제도 역시 손해배상에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결정문을 통해 나타난 손해액 산정방법을 보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재결정문에 나타난 배상액 산정기준을 보면 단순히 여러 요인들을 나열할 뿐 각각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경위, 2001년도 방송분을 재방송한 점, 신청인의 나이, 직업, 방송된 신청인 초상과 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특정의 정도

초상권 침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같은
구제수단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손해배상이 주된 구제 수단되고 있어

및 신청인 초상의 노출시간, 인터넷 다시보기 방송중단 조치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2007서울중재1).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행사의 취지 및 행사의 성격, 촬영 경위, 신청인에게 법의 침해의 고의성 정도, 신문의 배포부수, 신청인의 나이, 직업, 초상의 특정 정도 및 행사주체업체가 신청인에게 미리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2007서울중재3).

손해배상의 모호한 기준은 피해를 청구하는 측이나 언론사 측 모두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김동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비록 법원의 것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너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위자료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위로하거나 비난받을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김동하, 2007).

그러나 비록 피해자에게는 적은 액수의 보상금이라 할지라도 언론사에게는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목적도 있지만, 언론에게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언론중재법 제3조는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정, 반론 혹은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정도가 지나칠 경우 언론자유에 부당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4.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

언론중재제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언론매체의 보급률이나 피해자의 특성 등 일반적 고려요인 외에, 초상권 침해의 고의성, 보도내용의 공익성, 피해자의 참여도, 피해의 정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진실성 다툼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규모를 판단할 때 비교적 언론중재위원회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침해의 고의성 여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발생한 고의적 초상권 침해와 과실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구별해서, 과실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를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촬영 후 공표하였거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작한 경우 등은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수의 증액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형부작용에 관한 9시 TV뉴스에서 한자로 가장하여 몰래 촬영 후 “기자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을 골라 보도” (손해배상 1억 청구, 구두사과 후 취하. 2007서울조정306)

마리톤과 같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일간지 기사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컴퓨터 조작하고 동의 없이 사용(손해배상 500만 원 청구, 100만 원 배상조정. 2007서울조정215)

반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줄 오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사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보도협조 요청을 받아 취재 후 촬영하여 게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직접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2개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각 230만 원씩 합 460만 원 청구, 각 100만 원씩 합 200만 원 중재결정. 2007서울중재3, 2007서울중재4)

일간지가 임신부 관련 사진을 게재했지만, 당시자로부터 직접 확인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로부터만 승낙을 받은 경우(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15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316)

2) 보도내용의 공익성 여부

지금까지 언론중재위가 다룬 초상권 침해 사례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 보도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성이 강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오락적,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가급적 줄이고, 공익성이 낮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간지에 게재된 용역업체 직원의 철거민 부녀자 폭행 사진에서 폭행을 방관하는 듯 보이는 사람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 피해자는 “누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진을 게재하는데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손해배상 1,000만 원 청구, 10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348)

비록 해당 사진은 언론사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공권력의 방관 등에 대한 고발성 기사로서 공익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 산정에서 감액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선방송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를 들고 의류상점에 들어가 커피를 쏟은 후 상점주인의 반응을 동의 없이 촬영 후 방송(손해배상 250만 원 청구, 115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16)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오락적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고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산정에서 증액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의 책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보도내용에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상권 피해자가 언론보도를 자

침해의 고의성 및 보도 내용의 공익성 여부,
피해자의 책임, 촬영거부의 정도, 피해의 입증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초할만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나 언론이 보도한 행위의 적극적 참여자라면 손해배상의 한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보험영업을 하는 운전자가 주차단속중의 주차단속원을 폭행한 사건의 현장 사진을 입수해 전송한 통신사(2개의 통신사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청구, 각각 700만 원과 200만 원 조정결정. 2007서울조정70)

비록 피해자는 신용과 명예의 훼손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가 책임져야할 불법행위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초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배상액수는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대학가 축제현장에서 “편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여성의 사진을 배포한 통신사와 이를 게재한 두 개의 무료일간지(3개 언론사에 총 7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총 20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171)

대학축제처럼 일반에게 공개되고 통상 사진촬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배상액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4) 촬영거부의 정도

언론의 사진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촬영을 거부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진촬영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지는 현

장에서 단순히 자신을 “찍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당사자가 적극적인 촬영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수 산정에서 감액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도중 사진기를 들고 있는 사진기자가 기계 앞에서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자가 연합뉴스 사진기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찍힌 사진이 신문에 날 것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찍힌 사진이 신문에 실릴 거라고 제게 말했더라면, 사진을 찍는 것을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찍힌 사진을 기사에 이용할 것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장(3개 언론사에 총 7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총 20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171)

취재진에 둘러싸여 고통스러워하는 유명 영화배우 옆에서 취재도중 사진에 찍힌 사진기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 “취재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모습을 찍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2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조정불성립. 2007서울조정198)

위의 사건에서처럼 공개적으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촬영하는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보다는 사진촬영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피해의 입증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의 입증도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적어도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 외에 구체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수긍할만한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날씨를 보도하면서 추운 겨울 몸을 웅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통신문사가 촬영하여 게재한 사례. 신청자는 수치심으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주장(100만 원 손해배상청구, 30만 원 중재결정. 2007서울중재6)

위 사건에서 피해청구자의 주장처럼 추운 겨울 몸을 웅크린 사진의 공개가 죽고 싶거나 미칠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맺음말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무책임한 인격권 침해로 인해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감안해 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의 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판결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인격권 침해에 제동을 걸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가 다른 초상권 침해 사건 역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적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구제 신청자가 공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

라 모두 일반인들이었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 결정의 경우,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영역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엿보인다.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고의적 침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언론의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 초상권 보호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킨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 모두가 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의 손질도 필요하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신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개인의 초상을 왜곡되게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인상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주는 경우에만 중재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오보는 아니고 단지 수치스럽거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초상을 공개한 언론보도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 주장도 아니고 오보도 아니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는 인격권 피해자 개념을 넓게 잡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신청자격을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장성원, 2007).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 등 언론보도에 대한 모든 불만이 언론중재위원회로 청구될 수도 있어, 언론중재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현행과 같이 오보에 대한 정정과 반론으로 국한시키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만은 예외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명식(2003). 언론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와 사법적인 보호법리. 『언론과 정보』, 제9호, pp. 97-137.
- 김경호(2003).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형.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pp. 246-273.
- 김경호(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권 2호, pp. 88-120.
- 김동하(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27권 3호, pp. 5-38.
- 김옥조(2005).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 손원선(1998). 초상권 침해에 대한 등의 한계. 『언론중재』, 18권 4호, pp. 71-81.
- 엄동섭(1998).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8권 2호, pp. 24-37.
- 이승선(2006). 초상의 상업적 이용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8권 1호, pp. 219-247.
- 임건면(2001).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18권 1호, pp. 213-237.
- 장성원(2007). 초상권 등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7권 3호, pp. 114-139.
- 한위수(1999).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권 2호, pp. 47-61.

미국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

박 아 란

미국 오레곤 대학 언론법 전공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동 대학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석사
- 조선일보 기자
- 현(現) University of Oregon,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박사과정 (언론법 전공)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1890년 Harvard Law Review에 실린 Samuel Warren과 Louis Brandeis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¹⁾에서 비롯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새로운 법률 영역을 탄생하게 만든 이들의 논문은 지금까지 발간된 법률 논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논문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²⁾ 황색 저널리즘이 판치던 19세기 후반, Warren과 Brandeis는 “즉석 사진과 신문은 개인과 가정의 신성한 구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기들이 ‘벽장 안에서 속삭여지던 것이 지붕 위에서 외쳐지도록’ 만들고 있다”며 사진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³⁾ 그러나 그들이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을 염려했다기보다는 Warren의 가족사를 들춰내던 신문이 그의 아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⁴⁾

사진과 동영상은 언론 보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

다. 사진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촬영하고 이를 보도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언론의 자유로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사진은 현장의 모습을 확대하고 강화하며 사진의 영속성과 재생산을 통해 그 촬영된 시각적 이미지는 무심결에 본 것(casual glance) 이상의 힘을 갖게 된다.⁵⁾ 특히 사진 속 이미지가 개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나 은밀한 비밀을 담아낼 경우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위법할 것인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미국의 법원은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가 상충하는 경우 각각의 사건에서 그 특별한 상황과 사실(fact)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익 형량의 방법(ad hoc weighting of the competing concerns)으로 판단을 내렸다.⁶⁾ 따라서 두 권리 중 어느 것이 일반

1)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2) Anthony Lewis, *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A Biography of the First Amendment* 68 (2007).

3) Warren & Brandeis, *supra* note 1, at 195.

4) Lewis, *supra* note 2, at 69.

5) William K. Jones, *Insult to Injury: Libel, Slander, and Invasions of Privacy* 231 (2003).

6) Nadine Strossen, “Protecting Privacy and Free Speech in Cyberspace,” 89 Geo. L. J. 2103, 2104 (2001).

근래들어 사진과 관련된 개인의 이미지는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에 의해
더욱 위협받고 있어

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연방대법원도 “진실된 보도는 언제나 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회피하면서 두 권리의 상충은 각각의 사건에 적합한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⁷⁾

근래에 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특히 사진과 관련된 개인의 이미지는 Warren과 Brandeis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에 의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초소형 몰래 카메라나 망원렌즈 촬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외에도,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는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동영상을 손쉽게 촬영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무제한으로 배포, 확산 및 공유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법대 교수인 Daniel Solove는 자신의 저서 첫 장에서 인터넷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이른바 “개똥녀(Dog Poof Girl)” 사건을 소개한 뒤 프라이버시의 기대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서 “미래의 세대들은 더 이상 많은 프라이버시를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예견하고 있다.⁸⁾

이 글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는 주제에 대해 미국 판결과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1960년에 발표된 이후 미국의 프라이버시법과 판결을 지배해온 William Prosser 캘리포니아 법대 학장의 4가지

프라이버시 침해 분류⁹⁾에 따라 (1) 사적 영역의 침입 (2) 사적 사실의 공개 (3) 영리적 이용 (4) 허위 사실의 공개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어서 사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간략하게 언급한 뒤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법과 판결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1. 사진과 동영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권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있으며¹⁰⁾, 현재 프라이버시권은 보통법(common law) 또는 법령에 의해 미국의 모든 50개 주에서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¹¹⁾ 프라이버시 관련 연방 법령으로는 유·무선으로 행해지는 도청을 막기 위한 연방도청법(Federal Wiretap Act)¹²⁾과 연방정부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1974년 제정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¹³⁾이 있다. 또한 탈의실 등에서의 은밀한 몰래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2004년 비디오 관음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¹⁴⁾이 제정되어 합리적 프라이버시가 예견되는 사적인 영역에서 승낙 없이 타인의 나체를 비디오나 사진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Prosser의 분류에 따라 4가지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진과 동영상에 의한 침해에 한정

7) Florida Star v. B.J.F., 491 U.S. 524, 532-33 (1989).

8) Daniel J. Solove,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49 (2007).

9)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 L. Rev.* 383 (1960).

10) See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11) T. Barton Carter et al., *Mass Communication Law in a Nutshell* 124 (6th ed, 2007).

12) 18 U.S.C. § 2510-2520 (2000).

13) 5 U.S.C. § 552 a(b) (2000).

14) 18 U.S.C. § 1801 (2000).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적 영역의 침입(Intrusion)

사적 영역의 침입은 언론의 보도 내지 기사 발간이라는 결과물 자체보다는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다. 즉 기자가 취재를 위해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불법 침입하거나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하거나 외부에서 도청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모두 이러한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체포 또는 압수, 수색에 언론기자를 대동하여(ride-along) 현장에 있는 일반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한 바 있다.¹⁵⁾

주마다 법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사진기자가 사적인 장소를 그 장소에 대한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적 영역의 침입이 인정되기 위한 요소로는 대개 (1) 의도적으로 타인의 홀로 있는 공간이나 사적 관심사를 침입할 것과 (2) 이러한 침입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불쾌한(offensive) 정도일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¹⁶⁾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비록 사진의 뉴스가치가 미약할지라도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2007년 연방고등법원은 사진기자의 수정헌법 1조상

의 권리를 인정하며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부인한 판결을 내렸다. 2004년 8월호 하퍼스(Harper's)지는 이라크에서 전사한 하사관의 시신이 덮개가 열려 있는 관속에 누워있는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에 분노한 유족들은 감정적인 고통(emotional distress)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사진기자 와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역주민 1,200여 명이 참여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사진기자의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¹⁷⁾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매우 공격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위법한 취재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Jacqueline Kennedy Onassis 및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며 위협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던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이다.¹⁸⁾ U.S. Healthcare 임원의 고액 연봉에 대한 취재를 위해 임원 부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집 주위를 감시하던 시사 프로그램 "Inside Edition"의 방송 리포터에 대해서도 사진이나 음향설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을 괴롭히는 일체의 행동을 불허하는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었다.¹⁹⁾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언론의 취재방식도 끊임없이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 몰래 카메라 사건인 푸드 라이언(Food Lion) 사건²⁰⁾ 외에도 Diemann v. Time, Inc. 판결²¹⁾에서 연방고등법원은 "수정헌법 1조가 언론이 취재를 위해 불법 침해

15) See *Wilson v. Layne*, 526 U.S. 605 (1999).

16) Restatement (Second) of Torts §652B (1997).

17) *Showler v. Harper's Magazine Foundation*, 222 Fed. Appx. 755 (10th Cir. 2007), cert. denied, 128 S. Ct. 196 (2007).

18) *Galella v. Onassis*, 487 F.2d 986 (2d Cir. 1973).

19) *Wolfson v. Lewis* 924 F. Supp. 1423 (E.D. Pa. 1996).

20) *Food Lion, Inc. v. Capital Cities/ABC, Inc.*, 194 F.3d 1345 (4th Cir. 1999). 이 사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위장취업으로 인한 사기(fraud)와 불법침입(trespass)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21) 449 F.2d 245 (9th Cir. 1971).

사적 사실의 공개는 당황스러운 개인적 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사진·동영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중 대표적 유형

및 절도를 저지르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영역을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증(license)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몰래 카메라에 의한 취재방식의 불법성을 판단한 바 있다.²²⁾

또한 1999년 ABC 방송의 리포터가 심령상담소에 위장 취업해 몰래 카메라로 상담소 직원들의 대화를 촬영한 Sanders v. ABC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녹취된 대화가 다른 동료 직원들도 들을 수 있는 대화여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리포터의 몰래 카메라에 의한 촬영은 사적 영역의 침입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²³⁾

반면 자궁암 검사 연구소의 잦은 검사 오류를 보도하기 위해 ABC 방송의 프로듀서가 연구소 관련자로 위장한 채 연구소 소장과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경우, 연방고등법원은 촬영 장소가 일반인도 혈액 채취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대화 내용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며 사적 영역의 침입을 부정했다.²⁴⁾ 따라서 몰래 카메라에 의한 모든 촬영이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잠입한 장소의 접근가능성, 녹취된 대화의 은밀성, 녹화된 취재 내용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2) 사적 사실의 공개(Disclosure of Private Facts)

사적 사실의 공개는 당황스러운 개인적 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유형이라고 하겠다. 위법한 사적 사실의 공개로 인정되려면 원고는 1) 뉴스가치성(newsworthiness)이 없는 사실, 즉 정당한 공적 관심사(legitimate public concern)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사실의 공개가 있었고 2) 이러한 공개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몹시 불쾌한(offensive)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²⁵⁾ 특히 Diaz v. Oakland Tribune 판결²⁶⁾ 이후 많은 주에서 법원은 언론사인 피고 대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뉴스가치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시작했다.²⁷⁾ 따라서 진실되지만 사적인 내용(true but private facts)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자는 공개된 내용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²⁸⁾

미국에서는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은 정확한 사실이 보도되어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는 원고에게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22) *Id.* at 249.

23) Sanders v. ABC, 978 P.2d 67, 77 (Cal. 1999).

24) Medical Lab. Mgmt. Consultants v. ABC, 306 F.3d 806 (9th Cir. 2002).

25) Restatement (Second) of Torts §652D (1977).

26) 188 Cal. Rptr. 762 (Cal. Ct. App. 1983). 학생회장인 디아즈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폭로한 지역신문에 대해 법원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원고인 디아즈가 공개된 사실의 뉴스가치성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판결했다.

27) Robert Trager et al., *The Law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186 (2007).

28) Barbara Dill, *The Journalist's Handbook in Libel and Privacy* 136 (1986).

이 있다. 반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 보도를 했음에도 타인의 당황스런 모습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어 언론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²⁹⁾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한 사적 사실의 공개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인질극에서 작은 수건만을 움켜쥐고 나체로 탈출하는 여인의 사진을 보도하였으나 법원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언론사를 면책한 경우³⁰⁾, 유괴된 뒤 살해된 6세 여아의 두개골을 TV가 그대로 방영하였으나 유괴사건의 공익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부정한 경우³¹⁾ 등이 있다. 이 같은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가치성(news-worthiness)” 또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legitimate public concern)”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 언론사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으로 작용한다.³²⁾

따라서 사적 사실 공개에서 면책사유가 되는 “뉴스가치성” 내지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미국 법원은 사건 뉴스나 정치 문제에 대한 논평뿐만 아니라 오락적인 내용 또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뉴스로서의 가치, 즉 뉴스가치성을 인정하고 있다.³³⁾ 따라서 뉴스가 조금이라도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법원은 폭넓게 뉴스가치성을 인정할 것임

로³⁴⁾,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서 많은 경우 언론사가 승소할 것이다.

그러나 뉴스가치성이라는 것은 “기술적(descriptive)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규범적(normative) 용어”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만약 뉴스가치성이 순수한 기술적 용어로 사용된다면 언론사가 보도하는 모든 뉴스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뉴스가치성을 갖고 있으므로 언론사는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부터 자유롭게 면책될 것이다.³⁵⁾ 반면 순수한 규범적 용어로 쓰이게 된다면 무엇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몫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은 달갑지 않게도 일종의 뉴스 편집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³⁶⁾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공직에 출마한 여성의 자녀들이 청소년 범죄에 연루됐던 사실을 폭로한 신문사에 대해 제기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서 뉴스가치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³⁷⁾ Tobriner 판사는 “특정 사건이 뉴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언론사가 진실한 보도에 대해 면책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기사의 사회적 가치, 기사가 사적 영역을 침해한 정도, 원고가 공적인 관심사에 참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뉴스가치성 판단을 위한 “세 가지 기준(3 Prong Test)”을 제시했다.³⁸⁾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衡量하기 위한

29) Wayne Overbeck,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197 (2006).

30) Cape Publ'ns, Inc. v. Bridges, 423 So.2d 426 (Fla. Dist. Ct. App. 1982).

31) Armstrong v. H & C Comm'n, 575 So.2d 280 (Fla. Dist. Ct. App. 1991).

32) See Forsher v. Bugliosi, 608 P.2d 716 (Cal. 1980); Gilbert v. Medical Economics Co., 665 F.2d 305 (10th Cir. 1981).

33) Campbell v. Seabury Press, 614 F.2d 395, 397 (5th Cir. 1980).

34) Bruce W. Sanford, *Libel and Privacy* §11.3 (2d ed. Supp.2002).

35) Comment, “The Right of Privacy: Normative-Descriptive Confusion in the Defense of Newsworthiness,” 20 *U. Chi. L. Rev.* 722, 725 (1963).

36) Shulman v. Group W Prod., Inc., 955 P.2d 469, 481 (Cal. 1998).

37) Kapellas v. Kofman, 459 P.2d 912 (Cal. 1969).

38) *Id.* at 922.

‘뉴스가치성’ 또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
 언론사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으로 작용해

것으로 그 후 많은 판결에서 채택되었다.³⁹⁾

또한 연방고등법원은 Campbell v. Seabury Press⁴⁰⁾ 사건에서 세 가지 기준 외에 “논리적 연관성(logical nexus)”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참여하게 된 공적 관심사와 언론에 의해 보도된 사실 간에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논리적 연관성 기준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Shulman v. Group W Prod., Inc.⁴¹⁾ 판결에서 뉴스가치성 판단을 위해 사용되었다. Ruth Shulman과 그녀의 가족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중상을 입었는데, 구조헬기에 동승한 “On Scene: Emergency Response” 제작팀은 Ruth가 전복된 차량에서 구출되는 장면과 구조되어 헬기 내부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장면을 녹화하여 방영하였다. 몇 달 후 자신이 차에서 구조되는 장면 및 헬기 내부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간호사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을 병실에서 시청한 Ruth는 충격에 빠져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적 사실의 공개 및 사적 영역의 침입, 즉 두 가지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에 대해 따로 판단을 하였다. 우선 사적 사실의 공개에 대해서 “Ruth의 구조 및 응급처치 과정에 대한 보도는 뉴스가치가 있는 주제에 실질적으로 관련(substantially relevant)되어 있으므로 정당함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부인하였다.⁴²⁾ 반면 헬기 내부에서의 촬영에 대해서는 “당시 구조헬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인정되는 앰블런스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환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사적 영역의 침입이며 이 경우 뉴스가치성은 면책특권으로서 주장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⁴³⁾

Ruth 사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을 작성한 Mosk 판사는 논리적 연관성 기준은 언론사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히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용인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세 가지 기준이 사적 영역의 침입 정도와 사인의 자발적 공적 사건 참여여부를 고려하는 반면 논리적 연관성 기준은 보도된 사실이 뉴스가치가 있는 주제와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결과, 만약 인터뷰하기를 꺼리는 성폭력 희생자를 인터뷰하여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방영할 경우 세 가지 기준에 의하면 뉴스가치성이 부인될 것이나 논리적 연관성 기준에 의할 경우 뉴스가치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⁴⁴⁾ 이러한 비판은 결국 뉴스가치성을 결정하는 법리의 허술함과 복잡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기사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의 공익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법원은 기사와 분리하여 사진의 공익

39) John A. Jurata, “The Tort That Refuses to Go Away: The Subtle Reemergence of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36 *San Diego L. Rev.* 489 (1999).

40) 614 F.2d 395 (5th Cir. 1980).

41) 955 P.2d 469 (Cal. 1998).

42) *Id.* at 488.

43) *Id.* at 490.

44) *Id.* at 503 (Mosk, J., dissenting).

성 여부를 따로 판단하였다. 1942년 미주리주 대법원은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가 줄어드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여성을 취재하여 그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배고픔에 시달리는 폭식가(Starving Glutton)”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타임(Time)지에 대해 “원고의 희귀 질환에 대한 보도가 비록 공익적 내용일지라도 원고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여 그의 신원을 드러낸 것은 공익과는 관련이 없다”며 타임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였다.⁴⁵⁾

(3)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타인의 이름, 동일성, 이미지 등을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할 경우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이라는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 특히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이들의 이미지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right to publicity)이 인정된다.

영리적 이용이라는 침해 유형은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 등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자가 이로 인해 상업적 이득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론사가 뉴스 보도를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비록 언론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일지라도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특별한 이득을 창출하지 않는 한 영리적 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⁴⁶⁾

반면 언론사가 유명인의 사진을 자사의 신문이나 잡지, TV 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특별

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영리적 사용으로 인한 침해가 인정된다. 그 예가 여가수 Cher의 인터뷰를 실은 포럼(Forum)지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플(People)지와 유에스(US)지를 빗대어 “Cher가 People에게도 US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Forum에 털어놓았다”라며 일간지에 Cher의 사진을 실은 자사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건이다.⁴⁷⁾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은 포럼지의 광고는 Cher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인간 대포알(Human Cannonball)”이라 불리며 대포 속에 들어가 포환 대신 발사되는 자의 전체 기예 행위(entire act)를 뉴스시간에 방영한 경우 정당한 언론보도로써 보호받을 것인가?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이러한 보도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로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반면⁴⁸⁾, 연방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언론사가 동의 없이 전체 기예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원고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해 사건을 오하이오주 법원으로 환송하였다.⁴⁹⁾

흥미로운 것은 유명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신문이나 뉴스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러한 사진은 대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또는 미약할지라도 뉴스가치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어 대부분의 경우 원고인 사인이 패소한다는 점이다.⁵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파파라치의 공격적인 사진 촬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배우 Jennifer Aniston은 파파라치가 망원렌즈로 촬영한

45) Barber v. Time, Inc., 159 S.W.2d 291 (Mo. 1942).

46) Overbeck, *supra* note 29, at 208.

47) Cher v. Forum Int'l, 692 F.2d 634 (9th Cir. 1982).

48)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 Co., 351 N.E.2d 454 (Ohio, 1976).

49) Zacchini, 433 U.S. 562, 575 (1977).

50) Overbeck, *supra* note 29, at 216.

허위 사실의 공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여 공중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에 대해 격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알려지지 않은 금액으로 파파라치와 합의하는 등⁵¹⁾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파파라치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다.⁵²⁾ 1998년에 입법된 캘리포니아주의 “반(反) 파파라치 법(Anti-paparazzi Statute)”⁵³⁾은 파파라치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파라치는 공격적인 촬영으로 얻은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허위 사실의 공개(False Light)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여 공중에 널리 알리는 것이 허위 사실의 공개(False light)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이러한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명예훼손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미국 10여 개 주에서는 이 유형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⁵⁴⁾ 하지만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의 공개는 잘못된 정보의 발행에 기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성(reputation)을 보호하는 반면 허위 사실의 공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허위 사실 보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결은 1967년 연방대법원의 *Time, Inc. v. Hill*⁵⁵⁾ 판결이다. 이 판

결은 사진이나 영상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주창한 *New York Times v. Sullivan*⁵⁶⁾ 판결의 법리를 프라이버시 소송에 적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저명한 NYT 칼럼니스트였던 Anthony Lewis는 자신의 신간에서 *Time v. Hill* 판결문의 결과가 반복되었던 과정을 언급하며 공인에 의한 소송이 아닌 일반 사인에 의한 소송에서 법원이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원고에게 보다 입증하기 쉬운 “태만(negligence)”을 입증하게 해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⁵⁷⁾

허구화(Fictionalization), 즉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보도하는 것은 허위 사실 공개의 전형적인 예이다.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The Sun)지는 97세 할머니의 사진을 호주에 사는 101세 노파가 임신했다는 허위 기사에 사용하였다가 그녀에게 1백만 불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⁵⁸⁾

왜곡(Distortion)은 맥락에 맞지 않는 사진을 사용하거나 다른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부적절하게 배치한 경우 발생하는 허위 보도의 유형이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다정하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이 두 잡지의 다른 기사에 사용되었다. 한 잡지

51) *Names & Faces*, Wash. Post, Sept. 4, 2006, at C03.

52) 이에 대해 파파라치 자신들조차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유명한 할리우드 파파라치 Nick Stern은 정신적 문제로 기행을 보이는 가수 Britney Spears를 둘러싼 파파라치들의 과도한 촬영 행태를 비판하며 할리우드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See John Plunkett, “Holy Moly attacks ‘seedy’ paparazzi,” *Guardian*, Feb. 12, 2008, <http://www.guardian.co.uk/media/2008/feb/12>.

53) CAL. CIV. CODE §1708.8 (West Supp. 2007).

54) Carter, *supra* note 11, at 164-165.

55) 385 U.S. 374 (1967).

56) 376 U.S. 967 (1964).

57) Lewis, *supra* note 2, at 62-67.

58) *People Bank & Trust Co. v. Globe Int'l*, 978 F.2d 1065 (8th Cir. 1992).

에서는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지속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진을 게재했고 다른 잡지에서는 “첫눈에 빠진 사랑은 성적 매력에 이끌린 것이므로 위험하다”라는 내용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면 허위 사실의 공개로서 위법할 것인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전자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뤄졌으며 불쾌한 내용의 진술이 없다고 보았지만⁵⁹⁾, 후자의 경우 사진 속 등장인물을 비도덕적으로 묘사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⁶⁰⁾

2. 사진과 동영상에 의한 명예훼손 (Defamation)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된(false) 사실에 대한 진술(statement of fact)을 필요로 하므로 사진 자체만으로 명예가 훼손됐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진에 수반된 설명(caption)이 허위 진술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도 있다.⁶¹⁾

가수 Madonna의 경호원이자 옛 연인이었던 James Albright는 Madonna의 자서전을 발행한 출판사 및 자서전에 실린 사진을 게재한 피플(People)지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된 사진은 Madonna의 백댄서 중에서 동성애자라고 알려진 자를 사진 설명에서 경호원 Albright라고 잘못 언급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2005년 연방고등법원은 사진과 이에 수반된 사진설

명은 독립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서전의 내용과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독자라면 해당 사진의 설명만으로 원고를 동성애자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주장을 부인했다.⁶²⁾

방송의 경우에도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등장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ABC 다큐멘터리는 흑인 여성의 길거리 매춘 문제를 다뤘는데, 길을 지나가던 20대 흑인 여성 Ruby Clark이 배경 인물로 보여진 뒤 Ruby는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매춘부로 의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을 배척했으나 연방고등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자⁶³⁾, ABC 측은 배심원이 선정되기 직전 40,000달러를 Ruby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의 변호사는 “Ruby가 합의에서 이겼지만 그녀는 결코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Ruby의 심적 고통이 합의금만으로 치유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반면, ABC 측의 변호사는 방송사가 경제적 이유로 합의하긴 했지만 Ruby의 주장은 “꼬투리 잡기(nit-picking)”라고 주장했다.⁶⁴⁾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인물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사진 속의 인물은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한 경우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최근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2003년 보스턴(Boston)지가 문란한 십대들의 성을 다룬 기사에서 내용과는 무관한 여고생인 원고가 무도회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59) Gill v. Hearst Corp., 40 Cal. 2d 224 (Cal. 1953).

60) Gill v. Curtis Publ'g, 38 Cal. 2d 273 (Cal. 1952).

61) Nancy Wolff, *The Professional Photographer's Legal Handbook* 231 (2007).

62) Amrak Prod. Inc. v. Morton, 410 F.3d 69 (1st Cir. 2005).

63) Clark v. Am. Broad. Co., 684 F.2d 1208 (6th Cir. 1982).

64) Dill, *supra* note 28, at 168-99.

인터넷의 등장은 사진·동영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주장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기사와 무관하다”고 명시한 사진설명이 사진과 기사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차단했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다.⁶⁵⁾ 그러나 2006년 연방고등법원은 사진설명의 글자 크기가 본문 기사의 글자 크기보다 작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러한 사진설명은 합리적인 독자가 간과하거나 지나칠 수 있으므로 독자들이 사진 속의 여고생을 부정적인 기사와 연관 지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⁶⁶⁾

3. 인터넷과 향후 전망

인터넷의 등장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공인의 경우 노출이 심한 사진 또는 나체 사진의 유포가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케이스로는 Dr. Laura의 나체 사진 공개 사건이 있다. 라디오 및 TV 토크쇼 진행자이자 베스트셀러 “여성이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Ten Stupid Things Women Do to Mess Up Their Lives)” 등의 저자인 Dr. Laura는 순결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 코멘트로 유명했다. 하지만 1998년 당시 51세이던 Dr. Laura는 남편과 별거 중이

던 20대 시절에 사귀었던 애인이 그 당시 촬영했던 나체 사진을 Internet Entertainment Group(IEG)에 판매하면서 자신의 보수적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⁶⁷⁾ 여배우 Pamela Anderson의 섹스 비디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유명해진 IEG는 Dr. Laura의 나체 사진도 온라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그녀의 신체 각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줌인(zoom in) 서비스까지 제공하였다.

이에 Dr. Laura는 IEG를 상대로 법원에 자신의 나체 사진 공개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곧 금지 명령을 해제하였다. 그 이유는 Dr. Laura의 사진이 벌써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그러한 금지 명령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미 발행된 사진의 재발행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는 선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⁶⁸⁾ 그 후 항소를 준비하던 Dr. Laura는 돌연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8년 여배우 Alissa Milano와 그녀의 가족들은 인터넷에 유포된 Alissa의 나체 사진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뒤 이를 공개한 웹사이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권징재판에서 승소했으며 다른 두 웹사이트들과는 비공개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⁶⁹⁾

그러나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공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개똥녀

65) Stanton v. Metro Corp., 357 F. Supp. 2d 369 (D. Mass. 2005).

66) Stanton, 438 F.3d 119 (1st Cir. 2006).

67)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113 *Yale L.J.* 1151, 1199 (2004).

68) *Id.* n.230.

69) See Greg Miller, *Actress Prevails in Suits over Nude Photos in Web*, L.A. Times, Dec. 21, 1998 at C3.

사건처럼 미국에서는 뉴욕 지하철의 성추행범을 핸드폰으로 찍어 온라인에 공개하거나⁷⁰⁾, 핸드폰을 훔쳐간 자의 사진을 현상수배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인터넷상에 유포함으로써⁷¹⁾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Solove 교수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창피주기(Shaming)”에 대해 이는 사회 규범과 예절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적법 절차(due process) 없이 찍음으로써 “디지털 주홍글씨(Digital Scarlet Letter)”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⁷²⁾ 따라서 인터넷과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될 것이다.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염려하는 Rodney Smolla 교수는 평범한 일반인들의 삶조차도 현대사회에서는 뉴스와 오락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불륜 따위의 지극히 사적인 일들도 뉴스가치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공적인 생활영역과 사적인 생활영역 사이의 구분이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한다.⁷³⁾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촉구하는 Smolla는 “프라이버시가 갖는 사회적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언론은 사회도 더 이상 그러한 언론을 존중하지 않음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⁷⁴⁾ 결국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서만 파악하기보다는 둘다 보호되어야 할 가치 있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상호 존중 및 합리적 이익형량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

70) Tracy Connor, *Hunt Perv Caught in a Flash*, N.Y. Daily News, Aug. 26, 2005, <http://www.nydailynews.com/front/story/340923p-291030c.html>.

71) Kevin Poulsen, *Camera Phone Haw Life After Theft*, Wired, Aug. 29, 2005, <http://www.wired.com/gadgets/digitalcameras/news/2005/08/68668>. 이 기사에서도 한국의 개똥녀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72) Solove, *supra* note 8, at 92-99.

73) Rodney A. Smolla, “Privacy and the First Amendment Right to Gather News,” 67 *Geo. Wash. L. Rev.* 1097, 1098(1999).

74) *Id.* at 1138.

프랑스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

박진우

프랑스 파리5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 및 동 대학원 석사
-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과 DEA 졸
- 한국언론재단 프랑스 통신문(2003년 ~)
- 현(現) 프랑스 파리 6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사회학 및 언론학 전공)
- 논문 :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프랑스의 언론보도 책임과 피해구제제도」 외 다수

1. 들어가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초상권 보호의 권리·의무의 문제는 오늘날 미디어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이다. 미디어의 발전과 그 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더욱 많은 사람들의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정치인이나 소위 '유명인들' 및 그 주변의 관련자들 범위를 넘어서,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들의 미디어 노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방송시장의 메인 스트림으로 등장한 각종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 장르의 핵심은 바로 이들 연예인들 및 일반인들의 "생생한 삶", 그러니까 달리 말해 '사생활'의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는 것이었다. 방송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또한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삼는 수많은 매체들을 출현시켰다.

프랑스 사회는 본격적인 대중문화, 미디어 산업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반에 위와 같은 양상 속에서 생겨날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법

제를 마련한 바 있다. 1970년 7월 9일에 제정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내용을 추가한 민법 제9조는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미디어 보도를 둘러싼 각종 사생활, 인격권, 초상권 보호에 관한 모든 법제의 준거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의 원칙은 대상이 유명인이건 일반인이건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가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의 '단호함'은 양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단호함이 바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 보호에 대하여 프랑스 사회가 가장 엄격한 언론법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기존 법제의 '엄격함'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곤란한 수많은 난제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보완책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 속에서 실증법이 점점 무력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

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초상권 보호에 대한 논쟁은 바로 이러한 단계를 대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프랑스에서 초상권 - 사진 및 영상 보도 - 을 둘러싼 법제 관련 논쟁의 양상들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이미 프랑스의 미디어 산업은 포화 상태이다. 수많은 인쇄, 방송 매체 및 새로 등장한 전자 매체들은 매일매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이나 기타 일반인들의 '얼굴'을 다양한 매체 형태로 새롭게 재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정보들은, 하지만 프랑스의 현행 법제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 일쑤이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법 분쟁의 건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법조계는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집행에 있어서의 '균형성(proportionnalité)'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최근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2. '초상권'을 둘러싼 법규의 근본 원리

'초상권(droit à l'image)'의 문제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언론법제에서 근본적으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졌다.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생활 침해 보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재판들은 '사생활 보호'와 '초상권 보호'를 부속 항목들로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많은 경우 초상권은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초상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선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초상권 관련 법제의 일반 원리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랑스의 초상권 제도는 지난 1950년 11월 4일자로 제정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u 4 novembre 1950), 1970년 7월 9일에 등장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률」 그리고 이 법을 통해 개정된 민법 제9조(Article 9 du Code Civil)에 그 근거를 둔다.

1950년 유럽 협약은 초상권을 해당 유럽 협약을 체결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사생활 존중 원칙의 일환으로 다룰 것을 명시한다. 이 협약의 제8조("모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와 교류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후 초상권 문제를 다룬 모든 국제적 협약 그리고 각국의 판례 근거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그러니까 사생활 존중의 원칙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따라서 이 원칙에 근거하여 사적인 장소나 사적인 활동을 담은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원칙 위반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당사자의 동의"인 셈이며, 이것이 결여되었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배포에 대한 책임이 생겨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초상권의 문제는 이른바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프랑스 법원은 초상권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해

있다.

프랑스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법정 역시 초상권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한다. 1995년 5월 23일에 공표된 파리 고등법원의 한 판례는 이 원칙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및 해당 이미지의 이용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그것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재확인한바 있다.¹⁾ 이 판례를 근거로 현재 프랑스의 초상권 관련 법제는 해당 자연인으로부터의 ‘명시적인 허가’의 내용을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정한다.²⁾

- **촬영의 동의** : 여기서 ‘동의’의 범위는 촬영된 해당 이미지 그 자체 뿐 아니라, 이 이미지가 공개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 그것의 공개에 대해서 까지 포괄한다. 만약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공개를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공개는 금지된다.
- **촬영 대상자 관련** : 만약 공인이나 유명인 혹은 그들의 가족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일 경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터넷상으로 몽타주 이미지(합성사진)를 게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 : 사진 속에 담긴 인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할 경우, 만약 사진

촬영자의 원래 포커스에서 벗어난 주변에 해당 당사자의 모습이 담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Civ. 1re 12 décembre 2000, Bull. civ. I, n° 322).

- **동의를 형식** :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허락을 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배포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우선 민법 제9조는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정은 이 경우 우선 해당 매체의 배포 혹은 방송을 금지시킨 다음, 언론사로부터 해당 이미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압류할 수 있다. 해당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 경우, 법정은 인터넷 사이트 책임자에게 해당 이미지 혹은 웹페이지 전체를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이미지가 공공질서의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한다.

- **특정인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을 무단으로 녹음 혹은 촬영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26-1조에 의거, 징역 1년 혹은 4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위의 형태로 녹음 혹은 촬영된 것을 보관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대중들이 알 수 있게끔 방치하거나 공

1) 파리 고등법원, 1995년 5월 23일자 판결 (CA Paris 1re ch., 23 mai 1995, D. 96)

2) Christophe Bigot, ed., *Médias et vie privé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7, pp. 104-105.

개하는 경우, 형법 제226-2조에 의거, 징역 1년 혹은 4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어떤 유형을 통해서든 해당 녹음이나 촬영된 것을 공개하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26-8조에 의거, 징역 1년 혹은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테러리즘) 공격에 의한 희생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는, 1981년 7월 29일자로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속조항에 의거,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당사자의 '동의(accord)'의 두 가지 유형

그렇다면 언론사가 초상권을 위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촬영한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률상으로는 당사자의 "서면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그 이미지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1995년 파리 지방법원의 판례는 이에 대하여 언론사가 "명시적인 동의(autorisation expresse)"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autorisation tacite)"를 얻는 경우에는 초상권 위배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① 명시적인 동의 :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만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해당 동의서 속에는 이미지의 배포의 유형과 형식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

사진 매체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 1995년에는 만약 사진일 경우에는 배포 이전에 사진 촬영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그 배포에 대한 동의와 함께 명시되어야만 한다는 판례가 다중 지방법원에서 마련된 바 있는데, 이는 촬영 당사자도 모르는 불법 촬영이 더욱 성행하면서 이에 보다 엄격히 대처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CA Dijon, 4 avril 1995, JCP 1996, IV 1528). 또한 사진 매체의 경우, 촬영된 사람이 설사 사진작가에게 촬영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진의 배포(사진이 신문에 게재되거나 방송 프로그램 속에 등장하는 것)를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또 다른 판례가 나온 바 있다.³⁾

② 암묵적 동의 : 그렇지만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설사 서면으로 된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주로 공인들이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행하는 것을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이는, 즉 공인들의 공적 활동은 "이미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하지만 특정 사례가 과연 이러한 원리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수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프랑스의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사건에 대한 배경 사진으로 삼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법정은 해당 이미지는 설사 공공장소에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3) 리옹 고등법원, 1996년 1월 11일자 판례 (CA Lyon, 11 janvier 1996), *Legipresse*, décembre 1996, n° 137-1, p. 147.

4) Roland Dumas, *Le droit de l'information*, Paris, PUF, 1996, p. 577.

프랑스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칙 및 판례들은
대단히 엄격한 편

판사의 직업적 활동과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장면에 해당하므로 이는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⁵⁾ 또한 유명 영화배우 카트린느 드뇌브(Catherine Deneuve)가 칸느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파리 고등법원은 해당 사진이 설사 당사자가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서 행사장에 참석하는 장면인 만큼 이것은 '공인의 공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진이 영화제 관련 기사나 당사자가 출연한 영화에 관한 기사와는 무관한 기사에 일종의 '클리셰'로 실린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⁶⁾ 이렇듯 '암묵적 동의'에 대한 법정의 해석은 대단히 엄격한 편이다.

(3) 두 가지 판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칙 및 판례들은 대단히 엄격한 편이다. 현실 속에서 이를 증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키네 대(對) 르 푸앙' 재판 그리고 '미셸 리브 대(對) Xodo' 재판은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프랑스 재판부의 판례 경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⁷⁾

① 1984년 7월 4일자 대법원(파쇄원) 판결

1984년 프랑스의 주간지 <르 푸앙(Le Point)>은

“파이프 흡연자”에 대한 기사에서 “480가지 발암물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파이프 흡연자 모임의 회장인 자키네(Jaquinet)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이프 흡연자 모임과 자키네 측은 즉각 이것이 자신의 초상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르 푸앙> 지를 출판하는 출판사인 SEBDO 사(社)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르 푸앙> 지 역시 자키네의 사진 네거필름을 자사에 양도한 사진통신사 라포(Rapho) 사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다.

SEBDO 사는 자키네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키네가 자신의 사진 촬영을 라포 사에 허가한 것은, 자신이 유명한 파이프 흡연자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보도할 경우에 한해 자신의 사진을 복제할 권한을 준 것임을 상기시켰다. <르 푸앙> 지의 기사는 본질적으로 담배의 유해함을 '비난'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기사에 당사자의 사진을 배치한 것은 결국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키네 측은 라포 사에 대해서는 사진의 활용을 허락하였지만, <르 푸앙> 지와는 일체 동의를 위한 접촉도 없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SEBDO 사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② 1990년 6월 12일자 대법원 판결

프랑스의 유명 배우인 미셸 리브(Michel Leeb)는

5) CA Paris 1re ch., 19 septembre 1995, D, 95, IR 238.

6) 파리 고등법원, 1995년 9월 12일자 판례 (CA Paris, 12 septembre 1995), *Legipresse*, mars 1996, n° 129-III, p. 21.

7) 아래의 판례들은 Christophe Bigo, “Droits sur l'image des personnes : une matière réorganisée”, *Gazette du Palais*, 18-19 mai 2007을 참조하였다.

1985년 10월 12일 프랑스의 유통업체인 Xodo 사의 두 매장에서 독자들과의 만남 및 사인회 행사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Xodo 사는 3개 일간지에 미셸 리브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를 대규모로 실었으며, 또한 그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였다. 그런데 미셸 리브는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에 대한 그러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 적이 없으면서 예정된 사인회에 참석을 거부했다. 그리고 미셸 리브와 Xodo 사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베르사이유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Xodo 사의 광고 행위가 행사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계약법 차원에서 미셸 리브가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사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Xodo 사는 배우의 이미지를 출판하기 전에 허락을 구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Xodo는 배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베르사이유 항소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초상권' 관련 법제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들

그렇지만 앞서의 논의에서처럼 '초상권(droit à l'image)' 개념에 대한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또한 새로운 매체 환경의 도래 속에서, 최근 프랑스의 법 연구자들 및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물리

적 외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사생활 존중의 권리 그리고 타인의 초상을 어떤 식으로든 침해하는 것은 불법 과실이라는 원리와 함께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프랑스의 법체계 속에서는 - 앞서 언급된 1950년 유럽 협약의 규정 이외에는 - 초상권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가 들어있지는 않으며, 이를 시도한 적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재판부나 법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초상권'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법적 범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마저 서로 엇갈리고 있다.

(1) 초상권 개념의 이중적 성격과 '재산권화' 경향

초상권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권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초상속 인물의 이해관계 보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른바 '초상권'은 권리자에게 속하는 고유한 권리인가,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혹은 당사자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러한 조건 하에서 초상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범주인가? 사실 그동안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판결에 대하여 프랑스의 일부 연구자들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이들에게 민사 책임만을 부과하는 기존 원칙이 "훨씬 단순하고 엄격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민법 1382조를 초상권 침해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후자의 이들이 보기에 초상권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권리이지만 그러면서도 특수한 성격의 권리로서, 당사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droit négatif)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도래 속에서
최근 프랑스의 법 연구자들 및 종사자들 사이에서
초상권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 빈번해져

것이다.

최근의 판결 경향은 분명히 양자의 주장이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쟁점은 민사 책임의 해결 방식은 일종의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지, 그것이 곧 초상권 자체를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민사 책임의 해결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각 개인이 자신의 초상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 가지는 독점권의 인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에 당사자가 이 독점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것이 초상에 대한 고유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논란은 두 번째 쟁점, 즉 인물의 초상에 대한 일종의 '재산화(patrimonialisation)' 경향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프랑스의 법 체계 - 즉 '초상권'에 대한 보호와 그것의 위배에 대한 민사 처벌 -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일종의 재산권으로 부여할 것인가, 또는 초(超) 재산권적(extra-patrimonial)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인물의 초상에 대한 '상업적 거래'의 존재 및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초상권을 둘러싼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소송 당사자인 초상권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 혹은 초 재산권적 가치의 침해에 항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초상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양자는 서로 뒤섞여 있으며, 많은 경우 두 가지 모두가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현대 사회에서 인물의 초상에 대한 재산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불가피하다.⁸⁾

그렇기에 프랑스의 많은 연구자들은 최근, 초상권 문제를 민법 제9조에 결부시킨 것이 너무 인위적이지는 않은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프랑스의 모든 판례들이 각자의 초상의 존중받을 권리를 신성시해왔으며, 이는 자신의 초상이 기록되거나 그것을 출판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상권은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와 직접 결부되었으며, 그 결과 1970년에 민법 조항으로 삽입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의 초상권의 '재산권화' 경향은 분명히 사생활 존중권 침해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초상권이 재산권으로 간주될 경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논란은 결국 초상권자와 자신의 초상을 기록(촬영)하는 행위의 주체(화가, 사진사)의 권리 그리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의 주체(언론사)의 권리 사이의 이른바 "권리의 충돌(Conflits des droits)"⁹⁾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2) 초상권에 관한 최근 판례들의 경향 변화

8) Emmanuel Gaillard, "La double nature du droit à l'image et ses conséquences en droit positif français", *Recueil Dalloz Sirez*, 1984, pp. 161-162.

9) Jean-Pierre Ancel,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dans la jurisprudence récente de la Cour de cassation", *Rapport de la Cour de Cassation, 2e partie, Etudes et documents*, 2000, p. 62

1990년대 이후 프랑스의 초상권 관련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초상권의 '비상업적 이용' 형태에 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초상권이 특정인의 상업적 이용의 대상이 될 경우에 대한 판결의 원칙은 비교적 명확하였으며, 또한 이 경우에 판결 결과 역시 그러하였다. 그런데 명백하게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이용 형태가 아닌 경우, 과연 초상권 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초상권이 이처럼 절대적인 권리인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신는 사람에 대해 항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여러 가지 판결들은 이에 대해 그만큼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처벌의 원칙에 가까스로 도달하였을 뿐, 이를 제외하면 프랑스의 재판부는 초상권 분야의 수많은 법률 소송들에 대하여 사실상 앞서 언급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이러한 상황은 가시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이전의 판례에서 초상권 보호와 정보의 자유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원칙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하게 전자의 우위를 강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후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큰 틀에서 정의하자면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초상권 보호 및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에 각각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자.

① 상황 적합성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 증대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우, 그동안 해당 상황의 본질에 대한 고려와는 무관하게 해당 인물에 카메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사건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앵글 속에 들어와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 논의는 2001년 2월 이후, 상황 전체의 적합성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으로 대체되고 있다.

1995년 7월 25일, 파리 중심부의 생 미셸(Saint-Michel) 전철역에서 북아프리카계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일련의 사진 화보를 게재하였는데, 잡지사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민들로부터 사진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파리 마치>는 즉각 초상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은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10조와 민법 제9조 및 16조에 의거,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이미지 출판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에서만 허용되므로, <파리 마치>의 생 미셸 역 테러 사건의 희생자였던 X 부인의 사진 출판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01년 2월 20일, 프랑스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판례는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결정적이다.¹⁰⁾ 요약하자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필요성이 사건의 해설을 정당화한다면,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출판한 것 역시 이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사진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희

10) Chambre civile 1, audience publique du 20 février 2001.

초상권 보호와 정보의 자유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세부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두 권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피는 방향으로
판례 변하고 있어

생자 시민들 하나하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센세이셔널' 한 측면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설(indécence)' 추구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존엄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자유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출판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같은 날 대법원은 파리의 생 베르나르(Saint-Bernard) 교회의 점거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 진압작전에 참가한 한 경찰관이 제기한, 즉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는 어느 운동단체의 전단지에서 자신이 진압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고 있는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소송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핵심은 그동안 초상권 침해 판결의 오랜 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이른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기준을 법원이 포기한 것이다. 이를 대신하여, 이른바 "이미지 출판의 상황의 적합성의 평가(l'appréciation de la légitimité du contexte de la publication de l'image)", 그러니까 인물의 초상에 대한 출판의 자유를 누리기에 해당 상황이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상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② 새로운 언론 자유의 영역 창출 여부에 대한 검토

초상권 보호 원칙의 상황 적합성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사생활 보호 관련 법제를 적용할 때에도 보

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특정한 이미지가 과연 합법적으로 배포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조건에 따라 대단히 상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이미지의 배포가 대중적으로 새로운 "언론 자유의 영역"을 창출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배포는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호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법적 판례들은 상당히 많으며, 여기에 대해 프랑스 재판부는 대단히 구체적인 판정 기준들을 들이밀고 있다.

예컨대 모나코 왕가의 출산 소식을 다룬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 대하여, 2004년 2월 19일 프랑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이 정치적인 중요성, 혹은 왕실 내부 차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 사건일 경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사진 영상물은 "정보의 긴급함(nécessité de l'information)"이라는 요건에 부응하며, 따라서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주간지 <프랑스 디망쉬(France-Dimanche)>의 1999년 7월 9일 ~ 15일자의 표지에는 모나코의 왕녀 카롤린의 출산에 대한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잡지 안에는 당사자가 공공장소 - 1999년 5월 모나코에서 자신이 주관한 32회 국제 꽃 전시회에서 찍힌 세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모나코 왕실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은 해당 사진을 찍은 Y에게 1프랑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과, 해당 출판물의 판매 정지 처분을 명령하였다. 또한 왕실의 출산은 정보의 필요성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프랑스 디망쉬> 측은 출산 소식을 다루면서 출산 준비

및 장소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보도하였는데 이것이 어떤 정보의 필요성에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해당 보도물에 대한 상세 조사를 통해, 사건을 보도한 <프랑스 디망쉬>와 Y 기자가 설사 사생활의 일부를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9조에 명시된 사생활 존중의 원칙에 따른 금지조항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단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¹¹⁾

또한 2001년 8월 8일 영화배우 장 폴 벨몽도(Jean-Paul Belmondo)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 소식과 현장 사진을 게재한 8월 23일자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에 대하여 제기된 초상권 침해 소송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진은 배우가 응급구조반의 들것에 실려서 구호 헬리콥터에서 내려지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1심에서는 사진에서 동료들과 구조 요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배우의 모습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공항에서 망원 카메라로 당사자가 모르게 찍은 사진으로서, 사진이 배우의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영역을 건드리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포착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의 교통사고 소식 및 현장 사진은 민법 9조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이미지의 출판은 대중에 대한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해당 사진과 그것을 설명하는 기사가 직접 관련된 것이며, 공공장소에서 찍혔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며, 또한 유명 배우가 당한 사고인 만큼 사건

의 ‘시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기사 및 사진들이 민법 제9조에 명시된 제약 규정들을 지키는 한에서 사생활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보도 사실 그 자체가 선형적으로(a priori) 불법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는 ‘언론 자유’의 범위가 조금씩이나마 점차 넓어지는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2001년 7월 12일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사회 현상들을 다루는 모든 일반적인 토론들을 어떤 형태로 보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포한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물론 초상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단순히 ‘사건’ 그 자체에 연루된 인물일 경우, 또 이미지가 순수하게 사건 보도에 관련된 경우에만 한한다. 즉 모든 범위의 정보라 할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사건’ 그 자체와 이슈 그리고 공중의 관심을 ‘정당하게’ 끌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보들만이 여기에 관련된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언론 자유의 영역을 조금씩이나마 늘려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하겠다.

③ 이미지와 그것을 묘사하는 정보의 결합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초상권 침해 여부, 혹은 특정 이미지 사용의 합법성 여부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이미지와 그것을 묘사하는 정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2001년 이후 프랑스 법정의 판례는 과거 이미지 포착 조건의 합법성 여부에

11) 대법원 판결, 2004년 2월 19일.

최근 프랑스 법원은 이미지와 이를 묘사하는
정보 사이의 의미적 관계, 즉 의미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 보이고 있어

서부터, 점차 이미지와 이를 묘사하는 정보 사이의 의미적 관계(lien signifiant), 즉 의미(sens)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해당 인물의 초상 보도가 과연 대중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실현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지는 훼손되어서도, 왜곡되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은 만약 자신의 동의 없이 출판된 이미지가 위의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할 경우, 동의의 부재가 자동적으로 이미지 출판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래 판례들이 증명하듯이,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특히 최근의 초상권 판례들 속에서 당사자의 동의보다는 의미의 왜곡 및 훼손 여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이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의 존재 조건 그리고 이미지와 기사의 의미상 결합 여부에 대하여 사례별로 대단히 엄격한 검토를 행하고 있다.

- 1999년 5월 10일, 프랑스의 민영방송 TF1은 사이클 선수들의 약물복용 문제를 다룬 뉴스에서, 당시 약물복용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인 갑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경마장으로 나란히 들어가는 이미지를 기사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여 내보낸 바 있다. 해당 부부는 이 이미지의 방영에 대해 항의하였고, 법정에서는 민법 제9조에 의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TF1에 내려졌다. 2004년 6월 30일, 프랑스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 TF1 측의 항소에 대하여, 갑 부부의 모습이 촬영된 이미지가 과연 사이클 선수들

의 약물복용 문제를 다룬 뉴스의 주제에 왜 사용되었는지를 질문하면서, 또한 갑 부부의 아들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들 이슈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당사자들의 허락 없는 방송이 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하여, 이미지의 내용을 따져 보아도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의 방송으로 결국 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심의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¹²⁾

-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는 2000년 12월 7일자 표지 커버 기사로 어느 부부에 의한 자녀 살해 및 유기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었다. 이 기사와 함께 해당 부모의 사진이 6장 실려 있었는데, 여기에는 남편 갑의 사진, 부인 을이 1994년 12월 5일에 사망한 아들 루빈(Lubin)에게 수유기를 물려놓고 있는 사진, 부부의 결혼사진 및 을 부인이 경찰에 인도되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부부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과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해당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은 사진들이 갑과 을의 소송, 아이의 죽음의 상황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파리 마치>가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미지들이라고 보았다. 특히 아이에게 수유기를 물려주고 있는 사진이나 결혼식 사진은 <파리 마치>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프랑스의 거의 모든 매체들이 게재하였던 것

12)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audience publique du 30 juin 2004.

으로, 이는 이들 부부의 사생활과 두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004년 11월 15일에 내려진 판결에서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당사자들의 가족생활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갑 혹은 을의 사생활이나 어떤 권리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¹³⁾

-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는 1999년 12월 30일자에서 당시 대규모 부정회계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엘프(Elf)사의 대표 이사의 근황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부친상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법정에 제기하였다. 베르사이유 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그 사진의 복제 및 이용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2004년 6월 3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해당 간행물 속에서 사진들은 단순히 원고 갑의 얼굴을 확인(identification)시켜주는 것이고, 사진을 설명하는 기사들 속의 정보들은 최근 갑이 연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의거, 갑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비록 갑의 공적인 행위와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진 출판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¹⁴⁾

(3)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미지의 출판에 대한 제한

이처럼 최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비추어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법규 적용을 점차 사례별로 상세하게 판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당 이미지가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거의 엄격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만약 특정 이미지의 출판으로 인해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모든 출판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 2000년 6월 13일, 16세 소년 로맹(Romain)이 스쿠터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그 다음 주 주간지 <파리 마치>는 "고속도로, 잊혀진 전쟁"이라는 제목 하에 이 16세 소년의 사연을 다루었다. 여기에는 들것에 실린 채 얼굴이 피범벅이 된 한 소년의 시신이 바삐 움직이는 구조요원들의 움직임 사이로 클로즈업되어 있는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사진 아래에는 "그는 스쿠터로 폭주했다. 그는 16살이다. 의사들이 그를 살려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소년의 유족 X는 이 사진이 죽은 아들 로맹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며,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4년 11월 4일 프랑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잡지사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정보를 제공할 자유라는 권리는 개인의 권

13)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audience publique du 25 novembre 2004.

14)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audience publique du 30 juin 2004.

해당 이미지가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권' 과
관련될 경우, 프랑스 법원은
과거의 엄격함을 그대로 유지해

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기사는 사실 보도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얼굴이 피범벅이 된 희생자의 모습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의명성'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역시 일종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설사 언론 자유의 원칙은 사회 현상의 보도에 있어 이미지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포함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⁵⁾

- 잡지사 코지프레스(Cogedipresse)와 HFM은 1998년 2월 6일, 프랑스 남부의 코르시카 섬에 있는 아자시오(Ajaccio)에서 코르시카 분리주의자 테러집단에 의해 도로변에서 살해된 아자시오 경찰서장의 시신이 쓰러져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출판한 것과 관련, 유가족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다. 당시 원심 판결은 역시 민법 제9조에 의거, 출간된 사진이 살해된 아자시오 경찰서장이 도로변에 시신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과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러한 출판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들이 발행한 잡지 <VSD>와 <파리 마치>는 게재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한 파리 지방법원의 결정에 맞서 “언론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항소하였다. 당시 두 잡지사가 독자들에게

고지한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1) 해당 사진의 보도는 민법 9조에서 요구하는 조항에 저해되지 않으며, 2) 유가족들의 “감정적인 요소”를 침해하였을 뿐,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3) 해당 출판물은 독자들에게 대한 정보 제공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이는 유럽 협약 제10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자유의 차원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2004년 11월 4일자 대법원 판결은, 우선 1심과 2심에서 과연 독자의 알 권리가 해당 사진의 출판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결여되었음을 비판하였다. 만약 설사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요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에서와 같은 형태로 당사자의 모습이 그의 ‘존엄성’에 해가 될 정도의 사진일 경우에는 합법적 출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설사 사건 보도에 부수적인 클리셰(cliché)라고 하더라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된 셈이다.¹⁶⁾

결국 프랑스의 법정은 독자들의 알 권리가 과연 해당 사진의 출판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언론사가 독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희생자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 재판부는 해당 출판물·프로그램 속의 사진·영상 이미지와 이것과 결합되어 있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 보다 주

15) Chambre civile 2, audience publique du 4 novembre 2004.

16) Chambre civile 1, audience publique du 20 décembre 2000. 그렇지만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반론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이 ‘언론 자유’와 ‘초상권 보호’ 사이에서 채택해 온 사안별 특수성의 원칙에 비추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희생자가 공직자(경찰서장)였으며, 또한 이미 죽은 사람인 경우에도 초상권 보호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을 낳기도 하였다.

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가 과연 해당 기사에 비추어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검토가 판례의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재판부는 과거와 달리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2000년대 이후 '언론 자유의 권리'에 대한 프랑스 법정의 보다 유연한 태도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과거의 엄격함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영역임을 우리는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치며

지난 2004년 6월 24일 유럽 인권법정(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은 개인의 초상권과 공익과의 관계에 대한 유명한 판결 - 흔히 '하노버 판결'이라고 불린다 - 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을 천명한 바 있다. 그 중 다음 조항들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 1) 이미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등급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타인의 권리 역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2) 이미지가 과연 공익에 대한 토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익에 이바지하는 이미지 - 즉 민주주의적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미지 - 와 단지 사생활에 관련된 이미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3) 대중의 알 권리(le droit du public à être informé)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인의 사생활 측면에 관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대중(certain public)'의 호기심에 관한 것에 그치는 것은 여기서 제외된다.¹⁷⁾

유럽인권법정은 초상권 혹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인 수많은 언론 보도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주장하는 "독자의 알 권리"가 과연 민주주의적인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중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본질적인 권리이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인 - 특히 정치인 - 의 사생활의 측면까지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들의 사생활 전부가 정치적 토론, 혹은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유럽인권법정의 이러한 입장은 이 글에서도 언급된 2001년 이후 프랑스의 재판부가 발표한 일련의 판례들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초상권 보호에 대단히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가장 엄격한 처벌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사회 역시 미디어의 발전과 이에 따른 대중적인 '수요'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 역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1년 이후 프랑스 사회는 이 문제를 과거의 판례들에서 벗어나 대중의 알 권리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사안별로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

17)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ffaire von Hannover c. Allemagne*, requête n° 59320/00, Strasbourg, Le 24 juin 2004 (<http://www.echr.coe.int/echr/>)

초상권 보호와 알 권리의 양자 사이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답안 내놓기 위해 프랑스 사회는 고민 중

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격권, 인격적 존엄권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경향이다. 유럽인권법정의 2004년 판결은 결국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두 가지 요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원칙적 판단에 관한 코멘트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초상권 관련 판례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 변화한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답안을 내놓기 위한 기나긴 모색의 과정에 들어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 자료〉

- Bigot, Christophe, ed., *Médias et vie privée*, in *Problèmes politiques et sociaux*, n° 940, Septembre 200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 "Droits sur l'image des personnes : Une matière réorganisée", in *Gazette du Palais*, 18-19 mai 2007, pp. 9-17.
- Dumas, Dumas, *Le droit de l'information*, Paris, PUF, 1996.
- Gaillard, Emmanuel, "La double nature du droit à l'image et ses conséquences en droit positif français", *Recueil Dalloz Sirez*, Chronique-XXVI, 1984, pp. 161-162.
- www.legifrance.fr

2007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I. 들어가는 말

선진 취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 통제함을 강행하였고 이 결과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에 언론의 오보 및 부정확한 기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이의 반면교사로 기자실 복원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정부와 언론의 취재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가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

성 선 제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 미 인디애나대 법학석사 및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변호사
- 가톨릭대, 영산대 법대 교수

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겸양을 미덕으로 공개적인 표현을 삼가는 전통적 사회에서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개방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서구식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출판에 관한 법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도에 우리 사법부가 형성한 언론관계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계 판례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고찰하고,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법원의 판단과 이에 대한 적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동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1월 24일자 판결(2006나28135)에서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원보도가 인용한 제3자의 의견이 실제로 표명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표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반론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2006년 2월 10일 파기환송한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재판에서 제1심 판결 중 동아일보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아일보의 취소재판보도를 허용하며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18,89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정홍보처(이하 신청인)는 동아일보(이하 피신청인)가 지난 2001년 7월 4일과 5일 『국정홍보처장 ‘특하명 성명’』 제하의 보도 등 3차례에 걸쳐 국정홍보처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파기 후 제2심 법원으로 환송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을 담당할 법원은 판결문에

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또 다른 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의하더라도, 2001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보도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므로 이 사건 보도는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에 대해 “(구) 정간법 제19조의 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환송 후 당심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

며, 피신청인이 환송 후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의견의 경우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년 4월 12일자 판결(2006가합16537)에서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6년 7월 25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 및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보가 부

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동원호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해 선원들이 납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반론보도청구 소송의 기본적 법리에 충실하게 사실적 주장을 판단하여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인정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형식적 법리에 치우쳐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년 4월 12일자 판결(2006가합12856)에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설 연구소와 동 연구소 소속 비상임 운영위원들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6년 3월 26일 20시 「KBS 스페셜」 프로그램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 제하의 방송에서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모 씨 등이 대표적인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들의 공정성과 도덕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 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고 전제한 후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모 씨 등이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 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모 씨 등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천명하면서 진실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7월 18일자 판결(2006가합102784)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

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정정보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2006년 10월 20일자 A1면 『조선일보 또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2면 『“컴퓨터 돌려 보니 조선일보 뽐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1일자 A2면 『“종합지 매출 1위라 뽐았다” 선정 이유 하루 만에 뒤집어』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35면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 제하의 사실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시인했으며 2001년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인정한 전근표 국세청장의 2006년 7월 인사청문회 발언을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1년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뒤집었고 국세청의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이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문제 삼은 청장들의 발언에 대한 표현과 기사의 일부

표현은 어느 정도의 평가 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 그 기초되는 청장들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점, 전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세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도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일간지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100% 진실이 아닌 경우 모두 허위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Ⅲ. 명예훼손 소송

2007년 언론관계 판결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이 주를 이루었다. 명예훼손 소송이 양적으로는 주를 이루고 있고 법원의 판결 동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첫째, 대법원은 2007년 6월 1일자 판결(2004다61372)에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

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인터넷 형식의 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기존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이른바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문체의 기사

중 원고의 범죄경력을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 기사의 주된 보도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과 동종의 전과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경력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그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보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문제의 보도에 관하여 피고 언론사가 위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체의 특성이 보도의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 또는 월간지여서 사실 확인의 요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도 정확한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이 위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특별히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또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전형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공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5월 9일자 판결(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5월 9일 장모

씨 등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택상의 3녀인 장모 씨, 이승만의 양자인 이모 씨 등의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 「서울1945」에서 장택상과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증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여운형 암살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원고 이모 씨 등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

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 등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공익 또는 공인이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의 사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으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V.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의 결과 2007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6월 27일자 판결(2006가합70429)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시사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의 편집장, 편집인,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임대표였던 최모 씨, 한국기자협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시사저널에서 기사삭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시사저널 경영진의 기사삭제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 논평, 성명을 보도하거나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기사를 삭제한 것은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이 사건 기사 등에는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가 중앙일보 출신으로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통적으로 적시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삭제지시가 편집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등은 시사저널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이의 편집권 침해 여부의 논란을 다룬 것으로서 그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원고는 편집국장이 원고의 기사 삭

제 권유 또는 지시에 불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편집인의 자격으로 시사저널 회장 등과의 간부회의를 열면서 더 이상 편집국장에게는 회의 개최 사실 및 그 후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이 직접 인쇄소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편집국장이 이미 기사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간부회의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과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정상적인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편집국장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원고의 이러한 기사 삭제 지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중앙일보 출신으로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역시 "원고의 이력 및 그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삼성 고위층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친분이 두텁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기사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인 것처럼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원고가 편집국장에게 기사 삭제를 권유 또는 지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위 기사로 인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명예훼손보다는 자신의 삼성고위층과의 친분관계였으며, 당시까지 원고는 자신이 삭제를 권유하던 기사를 본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과 간부회의를 통한 기사 삭제지시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를 직접 겪은 시사저널의 기자들과 그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의 내부적 자유 즉, 편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고양시킨 의미 있는 판결이다.

V. 인터넷 관련 소송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7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5월 18일자 판결(2005가합64571)에서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이 커졌음에도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지켜져야 하는 점,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발생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실명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누구나도 포털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인터넷의 이용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역무를 이용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적인 판단에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이 이루어져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에 대하여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염려가 있는 점,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단지 신고함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표현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네이버, 다음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서비스란에 조선일보의 기사, 동아닷컴의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연속하여 올리고, 네티즌들이 위 기사들에 원고의 실명 등의 정보를 댓글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기사들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기사에는 특정인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미니홈피의 초기화면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와 특정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에서 말하는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 기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피고들로서는 위 기사들로 인하여 사인인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사망한 특정인과 관련한 원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기사들 중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원고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게시하였다 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실명, 미니홈피의 주소, 또는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하여 쉽게 원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사들이 가리키는 '김모 씨'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 뉴스서비스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뉴스 기사를 공급받아 이를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고 있고, 뉴스서비스 담당자는 제공받은 기사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는 등 최소한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을 뿐 기사를 수정, 삭제, 편집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뉴스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편집판'이라 불리는 주요화면(뉴스홈, 정치면, 사회면, IT면 등)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따라서 비슷한 범주의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편집판에 오르는 주요 기사는 제각기 다르다), 편집판의 제한적 공간 및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더구나 포털사이트는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와의 사이에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사 하나만 게시되나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언론사로부터 송부되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된 채 남아있는 기사가 아니라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편집판에 올리기 위하여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한 기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한 기사가 네티즌들의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티즌이 분야별 뉴스란을 통하여 위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들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원고의 신상정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고,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법원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적극 게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 불법적인 내용의 표현물이 너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면 삭제 요청, 해당 커뮤니티 활동 정지 등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에게 해당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서 이용자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가치중립적인 서비스에 불과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 카페, 클럽 등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1인 미디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게시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 또는 게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검색서비스의 경우 비록 피고들이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이른바 금칙어 설정 등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게시물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

는 등 피고들이 쉽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네티즌에게 알려주는 등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물들이 확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전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전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노무현 정부의 언론의 오보 및 과장보도에 대한 강경하고도 적극적인 입장 천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법원은 정부기관의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정부기관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언론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으나 일부의 사건에서는 충분한 취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미진하고 일방적 보도로 인하여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일부의 판결은 반론보도청구 소송의 기본적 법리에 충실하게 사실적 주장을 판단하여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인정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형식적 법리에 치우쳐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부의 판결은 허위 사실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천명하면서 진실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한 것은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의 결과 2007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시사저널 판결은 언론의 자유의 내부적 자유 즉, 편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고양시킨 의미 있는 판결이다.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

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7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공인이나 공적인 문제

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하여 명예훼손의 인정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중시하는 판결이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추상적으로 충분한 취재의 기회를 전제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을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인터넷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프라인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따갑고 때로는 불유쾌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는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격언을 되새기며 이 글을 맺는다. □

2007년도 조정·중재신청 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조정사건 1,043건 처리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신청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청구권별 신청 비율은 정정보도청구 52.8%, 손해배상청구 33.5%, 반론보도청구 11.0%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가 전체 신청건수의 86.3%를 차지했다. 반론보도청구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 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피해구제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매체 MBC-KBS-조선일보-동아일보 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청 증가 추세

신청인은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신청 비율이 전년 대비 4.2%p 감소하였다.

피신청인을 매체유형별로 보면 신문이 60.8%, 방송이 24.0%로 나타났고, 신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도 10.8%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체별 신청건수는 MBC 69건, KBS 67건, 조선일보 39건, 동아일보 33건, 문화일보 32건, 한겨레 31건, SBS 25건 순으로 많았다.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 953건, 초상권 53건, 음성권 12건, 프라이버시 침해 11건으로 명예훼손 침해가 가장 많았으나, 2005년 93.7%, 2006년 92.4%에 이어 2007년에는 91.4%를 차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손해배상 청구권 도입으로 초상·음성·성명 및 사생활침해 등의 조정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 64.8%로 전년대비 4.2%p 증가, 손해배상 조정액 평균 313만원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는 합의 34.4%, 취하 37.2%, 조정불성립결정 18.6%, 직권조정결정 5.2%, 기각 4.0%, 각하 0.6%로 집계되었다.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합의율은 1.7%p, 기각·각하율은 1.4%p 각 상승하였고, 조정불성립결정은 1.8%p 감소하였다. 정정·반론 등의 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된 사례는 64.8%로, 2006년의 60.6%보다 4.2%p 상승하였다.

매체별로는 잡지에 대한 피해구제율이 80.0%로 가장 높고, 방송이 55.9%로 가장 낮았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율은 40.7%, 이의신청율은 59.3%이며, 이의신청은 대부분 피신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액 평균은 313만 원으로 권리 도입 이후 매년 3백만 원대 초중반 수준에서 비슷

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신청과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중재신청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고 중재신청한 건수는 14건이었다.

시정권고 202건, 자살관련 상세 묘사 시정권고 건수 대폭 감소

또한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710종의 매체를 심의하여 이 중 202건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중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200건이며 제3자가 신청하여 시정권고한 건수는 2건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2006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건사고의 피의자·피고인의 신원공개 건수가 다소 증가한데다 마약의 용량·용법 공개 건수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자살관련 상세 묘사에 대한 시정권고는 38.8%→21.8%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언론들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기사화하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4년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34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언론사, 대학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해 총 7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1. 청구건수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년 연속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44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정정·반론 청구 등과 같은 병합 청구건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구 분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청 구 건 수	724	759	883	1,087	1,043
전년대비 증감		35	124	204	△44

2.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61.7%, 지역중재부가 38.3%로 나타나 서울중재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역중재부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1개 중재부에서 처리한 건수는 평균 107건, 지역 1개 중재부의 처리건수는 평균 40건이었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연 도 \ 중재부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서 울	592	67.0	709	65.2	644	61.7
부 산	35	4.0	42	3.9	25	2.4
대 구	14	1.6	31	2.9	32	3.1
광 주	44	5.0	55	5.1	63	6.0
대 전	19	2.2	29	2.7	41	3.9
경 기	87	9.9	113	10.4	84	8.1
강 원	15	1.7	14	1.3	14	1.3
충 북	10	1.1	13	1.2	23	2.2
전 북	29	3.3	50	4.6	65	6.2
경 남	25	2.8	20	1.8	37	3.5
제 주	13	1.5	11	1.0	15	1.4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84건, 전북중재부가 65건, 광주중재부가 63건으로 3개 중재부가 지역중재부의 청구건수인 399건의 53.1%를 처리하였고, 강원중재부와 제주중재부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6년에 비해 경기중재부와 부산중재부의 청구건수가 각 29건, 17건 감소한 반면, 경남중재부, 전북중재부, 대전중재부의 청구건수는 각 17건, 15건, 12건 증가하였다.

3. 청구권별 청구건수

각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보면, 정정보도청구 52.8%, 손해배상청구 33.5%, 반론보도청구 11.0%로 나타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가 전체 청구건수의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한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론보도청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청구명	연도		2005		2006		2007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531	60.1	546	50.2	551	52.8	1,628	54.0		
반 론	194	22.0	211	19.4	115	11.0	520	17.3		
추 후	17	1.9	12	1.1	28	2.7	57	1.9		
손 배*	141	16.0	318	29.3	349	33.5	808	26.8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3,013	100.0		

*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통계임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청구건수

청구명	연 도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정·손배	78	67.2	198	65.6	232	83.8		
정정·반론	9	7.8	57	18.9	19	6.9		
반론·손배	17	14.7	16	5.3	12	4.3		
추후·손배	8	6.9	10	3.3	5	1.8		
정정·반론·손배	4	3.4	20	6.6	9	3.2		
정정·추후·손배			1	0.3				
계	116	100.0	302	100.0	277	100.0		

* 병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였으므로 2005년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신청인 유형은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청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기관의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4.2%p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신청인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개 인	385	43.6	529	48.7	525	50.3
국가기관	146	16.5	151	13.9	101	9.7
지자체·공공단체	53	6.0	46	4.2	62	5.9
일반단체	152	17.2	172	15.8	145	13.9
종교단체	19	2.2	9	0.8	10	1.0
회 사	116	13.1	145	13.3	176	16.9
교육기관	12	1.4	35	3.2	24	2.3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별로 보면 신문이 60.8%, 방송이 24.0%를 차지했는데 신문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방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도 증가하여 10.8%를 차지했다. 뉴스통신은 2.9%, 잡지 1.0%였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MBC로 69건이다. 이어 KBS(67건), 조선일보(39건), 동아일보(33건), 문화일보(32건), 한겨레(31건), SBS(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16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지역 일간지 중 청구건수가 7건 이상인 매체를 보면, 경인매일 9건, 새전북신문 8건, 충청투데이·경기신문·경인일보·전북일보 각 7건이다. 경제지는 한국경제 20건, 매일경제 13건이며, 케이블 TV는 YTN 8건, 뉴스통신은 연합뉴스 23건, 뉴시스 7건 순이었으며, 인터넷신문은 오마이뉴스 15건, 노컷뉴스 11건, 에클레시아뉴스 9건, CNB NEWS 7건 순 이었다.

지역주간신문 중에서는 충청리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간행물로 분류되는 교회의 후보(3건)와 대학신문도(2건) 있었다.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매체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신 문	609	69.0	752	69.2	634	60.8
방 송	174	19.7	216	19.9	250	24.0
잡 지	33	3.7	25	2.3	10	1.0
뉴스통신	18	2.0	17	1.6	30	2.9
인터넷신문	48	5.4	77	7.1	113	10.8
기 타	1	0.1		0.0	6	0.6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표 1-7〉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 터넷 신 문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TV	케이블 TV	이동멀티 미디어				
1,043	278	226	130	225	24	1	10	30	113	6
100.0(%)	26.6	21.6	12.5	21.6	2.3	0.1	1.0	2.9	10.8	0.6

6. 주된 침해유형

조정대상 보도의 침해유형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나 주 침해사항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초상·성명·음성권이나 프라이버시 등 기타 인격권 침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명예이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청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주된 침해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명예훼손	827	93.7	1,004	92.4	953	91.4
신용훼손	23	2.6	17	1.6	2	0.2
초 상 권	15	1.7	48	4.4	53	5.1
음 성 권	2	0.2	7	0.6	12	1.1
성 명 권	14	1.6	1	0.1	3	0.3
프라이버시			4	0.4	11	1.0
기 타	2	0.2	6	0.6	9	0.9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침해의 경우, 대부분 동의없이 촬영, 무단공표되는 경우가 77.3%, 동의는 받아 촬영 되었으나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된 경우가 20.4%를 차지했다. 아예 보도내용과 관계없는 자료화면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2.3%)도 있었다.

〈표 1-9〉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청 구 건 수	비 율(%)
동의없이 무단공표	68	77.3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18	20.4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2.3
계	88	100.0

8. 조정대상기사 분야

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사는 사건·사고·고발 기사가 61.8%를 차지했고, 이어 정치·선거 관련 기사 8.9%, 경제·산업 관련 기사 6.5%, 교육 3.4%, 노동관련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0〉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정치·선거	93	8.9
국방·외교	19	1.8
경제·산업	68	6.5
사회(사건/사고/고발)	645	61.8
보건·복지	24	2.3
스포츠·연예	13	1.2
레저·생활	25	2.4
환 경	17	1.6
종 교	26	2.5
노 조	31	3.0
교 육	35	3.4
미 디 어	16	1.5
기 타	31	3.0
계	1,043	100.0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방송매체 이외의 신문·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75.2%, 탐사·심층·기획 보도기사 8.8%, 논단 및 칼럼 기사 3.3% 순이었다.

논단·칼럼, 비평, 만평, 가십 등의 의견성 기사도 많지는 않지만 조정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의 경우, 뉴스가 62.4%, 시사고발 22.0%, 교양정보 9.6% 순이었다.

〈표 1-11〉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별	건 수	비 율(%)
스트레이트	596	75.2
사 설	16	2.0
논단 및 칼럼	26	3.3
인 터 뷰	10	1.3
외부필자 기고	11	1.4
비 평	21	2.6
탐사·심층·기획보도	70	8.8
만화·만평	4	0.5
사 진	17	2.1
통 계·표	1	0.1
가 십	7	0.9
기 타	14	1.8
계	793	100.0

〈표 1-12〉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방송 장르별	건 수	비 율(%)
뉴 스	156	62.4
시 사 고 발	55	22.0
토 론	3	1.2
교 양 정 보	24	9.6
연예 · 스포츠	2	0.8
다큐멘터리	7	2.8
기 타	3	1.2
계	250	100.0

10. 접수유형

조정신청사건의 접수유형을 보면, 방문 43.5%, 인터넷 29.8%, 우편 24.1%, 구술 2.6% 순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에 의한 신청이 전년보다 6.9%p 상승하여 3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띄고, 구술 신청도 증가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3〉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접수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방 문	295	62.0	580	53.4	454	43.5
우 편	74	15.5	245	22.5	251	24.1
인 터 넷	74	15.5	249	22.9	311	29.8
구 술	33	6.9	13	1.2	27	2.6
계	476	100.0	1,087	100.0	1,043	100.0

* 인터넷 및 구술에 의한 신청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짐

제2장 처리결과 현황

1. 처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합의 34.4%, 직권조정결정 5.2%, 조정불성립결정 18.6%, 취하 37.2%, 기각 4.0%, 각하 0.6%로 집계되었다. 2006년에 이어 취하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년 대비 합의율은 1.7%p, 기각·각하율은 1.4%p 각 상승하였고 직권조정결정 비율은 비슷하며, 조정불성립결정은 2.2%p 감소하였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분 연도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100.0	37.8	3.5	2.3	20.5	2.2	1.7	32.0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100.0	32.7	2.7	2.6	20.8	2.0	1.2	38.0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의 의미는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합의된 경우, 직권조정결정된 사건 중 양당사자 이의없이 동의된 경우, 취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조정결정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피해구제율은 이 피해구제건수를 기각·각하 건수를 제외한 조정건수로 나눈 것이다. 지난 해 피해구제율은 64.8%이고 이는 2006년도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이다.

〈표 2-2〉 피해구제율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1,043	48	995	645	64.8

3. 청구권별 처리결과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추후보도청구에 대한 비율이 80.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반론보도청구로 71.8%로 나타났다. 범죄협회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 청구하는 추후보도청구나, 복잡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수 요건이 아닌 반론보도에 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각 63.7%, 63.1%를 기록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해구제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합의율은 반론보도청구가 가장 높고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낮았으나, 조정결정률과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높았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취하된 건 중 보도율(82.4%)이 가장 높았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의	이의	계 속								
2005	정 정	531	225	18	10	(4)		108		9	7	154	(80)	63.5
	반 론	194	84	9	7			32	(1)	7	1	54	(30)	66.7
	추 후	17	9									8	(2)	64.7
	손 배	141	16	4	3			41		3	7	67	(48)	51.9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정 정	546	220	13	10			108	(1)	14	12	169	(90)	62.3
	반 론	211	79	6	8			37	(1)	2		79	(42)	61.2
	추 후	12	8					1				3	(3)	91.7
	손 배	318	49	10	10			80		6	1	162	(115)	55.9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정정	551	223	12	17	(1)		103	(5)	22	3	171	(94)	63.7
	100.0%		40.5	2.2	3.1			18.7		4.0	0.5	31.0		
	반론	115	52	2	1			22		4	1	33	(25)	71.8
	100.0%		45.2	1.7	0.9			19.1		3.5	0.9	28.7		
	추후	28	7					2		2		17	(14)	80.8
	100.0%		25.0					7.1		7.1		60.8		
	손배	349	77	8	14	(1)		67		14	2	167	(124)	63.1
100.0%		22.1	2.3	4.0			19.2		4.0	0.6	47.8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피해구제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국가기관으로 74.5%를 보였고, 이어 교육기관 69.6%, 일반단체 67.4%, 개인 63.8%, 회사 61.6%, 지자체·공공단체 53.2% 순이었다.

종교단체의 경우 2006년 피해구제율이 11.1%를 기록한 반면 2007년의 피해구제율이 매우 높게 향상된 것이 주목된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개 인	385	127	13	9	(3)	92	(1)	13	10	121	(61)	56.6	
	단 체	국가기관	146	69	10	3		14		1	1	48	(34)	78.5
		지자체·공공단체	53	24	1	3	(1)	10				15	(10)	67.9
		일반단체	152	65	1	1		35		2	4	44	(26)	63.0
		종교단체	19	7	1			3				8	(7)	78.9
		회사	116	37	5	4		26		3		41	(21)	55.8
		교육기관	12	5				1				6	(1)	5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개 인	529	163	20	15		93		16	2	220	(128)	60.9	
	단 체	국가기관	151	66	3	7		30		1		44	(35)	69.3
		지자체·공공단체	46	17	4	1		10		1		13	(8)	64.4
		일반단체	172	55	2	5		34		3	11	62	(36)	58.9
		종교단체	9	1				8						11.1
		회사	145	35				49	(2)	1		60	(34)	49.3
		교육기관	35	19				2				14	(9)	8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개 인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단 체	국가기관	101	44	1	2		15	(1)	3		36	(27)	74.5
		지자체·공공단체	62	21		1		20				20	(12)	53.2
		일반단체	145	48	3	1		31		7	3	52	(40)	67.4
		종교단체	10	6								4	(4)	100.0
		회사	176	65	3	7		38	(1)	4		59	(37)	61.6
		교육기관	24	10		2				1		11	(6)	69.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법조인·연예인·공공기관장이 100%를 보였으나 청구건수가 매우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료인이나 정당정치인의 피해구제율은 각 30.8%, 40.0%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 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국회의원	28	9				11	(1)			8	(4)	50.0
법조인	5	3								2	(2)	100.0
공무원	31	11				5		2		13	(10)	72.4
군인/경찰	13	6				4				3	(2)	61.5
기초광역단체장/의원	28	3		2	(1)	9	(1)			14	(9)	50.0
정당·정치인	5					1				4	(2)	40.0
의료인	14	2		4				1		7	(2)	30.8
문화예술인	19	9	1			5				4	(1)	57.9
종교인	18	11				2	(1)	3		2	(1)	86.7
회사원	80	25	2	1		14			1	37	(15)	53.2
언론인	13	4		1		4				4	(3)	53.8
교육자	59	13	4	1		4				37	(29)	78.0
개인사업가	73	26	5	7		12		3		20	(13)	62.9
금융업종사자	2	1				1						50.0
연예인	3									3	(3)	100.0
학 생	14	4		1	(1)	2		4		3		50.0
시민활동가	11	3		2		2		3		1	(1)	50.0
공공기관장	3									3	(3)	100.0
조합대표협회장	14	7	2							5	(4)	92.9
기타	92	28	1			14		11	2	36	(27)	70.9
계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	100.0	30.8	2.9	3.6		17.1		5.1	0.6	39.2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잡지에 대한 청구건수는 적으나 피해구제율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 68.0%, 뉴스통신 65.5%, 인터넷신문 65.0%, 방송 55.9% 순이었다. 인쇄매체에 비해 방송의 피해구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							
2005	신 문	609	239	17	8	(2)	113		11	6	215	(123)	64.4
	방 송	174	58	12	8	(2)	38	(1)	7	1	50	(22)	57.2
	잡 지	33	15	2	2		11				3	(3)	60.6
	뉴스통신	18	6				6		1	2	3	(2)	53.3
	인터넷신문	48	15		2		13			6	12	(10)	59.5
	기 타	1	1										10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신 문	752	242	20	16		144		13	7	310	(193)	62.2
	방 송	216	57	8	9		66	(2)	2	5	69	(30)	46.4
	잡 지	25	17	1	1		2				4	(2)	80.0
	뉴스통신	17	6				1		2	1	7	(7)	92.9
	인터넷신문	77	34		2		13		5		23	(18)	72.2
	기 타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신 문	634	226	12	15	(1)	112	(3)	25		244	(172)	68.0
	방 송	250	71	7	17	(1)	52	(1)	11	1	91	(53)	55.9
	잡 지	10	4	2			2				2	(2)	80.0
	뉴스통신	30	10	1			6	(1)	1		12	(7)	65.5
	인터넷신문	113	44				22		5	5	37	(23)	65.0
	기 타	6	4								2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은 초상권침해가 81.1%로 높게 나타났고, 명예훼손이 64.5%, 프라이버시(사생활)침해가 60.0%를 기록했다. 음성권과 성명권 침해는 각 41.7%, 33.3%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							
2005	명예훼손	827	322	30	20	(4)	174	(1)	15	13	253	(148)	63.2
	신용훼손	23	5				4		1	2	11	(5)	50.0
	초상권	15	3	1			1		3		7	(5)	75.0
	음성권	2	1				1						50.0
	성명권	14	2								12	(2)	28.6
	프라이버시												
	기타	2	1				1						5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명예훼손	1,004	318	20	25		213		20	13	395	(238)	59.3
	신용훼손	17	5	2			5	(2)			5	(4)	76.5
	초상권	48	27	6	3		5				7	(3)	75.0
	음성권	7	4	1							2	(1)	85.7
	성명권	1					1						0.0
	프라이버시	4	1				1				2	(2)	75.0
	기타	6	1				1		2		2	(2)	7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명예훼손	953	331	18	29	(1)	185	(5)	38	4	348	(233)	64.5
	신용훼손	2					2						0.0
	초상권	53	21	3	2	(1)	2				25	(18)	81.1
	음성권	12	1	1	1		3				6	(3)	41.7
	성명권	3									3	(1)	33.3
	프라이버시	11	4				1		1	1	5	(2)	60.0
	기타	9	2				1		4	1	1		50.0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처리결과

〈표 2-8〉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 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정정	조정정정	불성정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9	9							2		2				5
	국민일보	7	7									1				6
	내일신문	10	10							1		3				6
	동아일보	33	32						1	9	3	6	2			13
	문화일보	32	31		1					6	2	13	3			8
	서울신문	17	17							7		2	3			5
	세계일보	4	4							1						3
	조선일보	39	36		2				1	16	1	9	3			10
	중앙일보	16	13					2	1	4				2		10
	한겨레	31	29		2					14	4	6				7
	한국일보	8	8							6						2
소계	206	196		5			2	3	66	10	42	13			75	
지방일간지	서울	시민일보	2	2						1						1
		내외신문	2	2						1						1
		서울일보	3	3						1	2					
	부산	국제신문	1	1						1						
		부산일보	3	3								1				2
	대구·경북	경북일보	2	2						2						
		매일신문	6	6						4			2			
		영남일보	4	4								2				2
		경북문화신문	4	4						2						2
		대구시민일보	2	2												2
	광주·전남	경상매일신문	2	2								2				
		광주매일	3	3						2						1
		광주일보	1	1						1						
		대한일보	5	5						2						3
		목포일보	2	2						1						1
		무등일보	1	1												1
		전광일보	2	2						2						
		전남일보	3	3						1						2
		호남매일	1	1						1						
		호남일보	5	5						1	1	3				
대전·충남	광남일보	2	2						1						1	
	전남도민일보	4	4						1	2					1	
	남도일보	3	3						1						2	
	순천신문	1	1						1							
	대전일보	3	3						2						1	
	충도일보	5	5						4						1	
	충청신문	1	1						1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권 정 정	조 정 성립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방 일 간 지	대전·충남	중앙매일	2	2												2		
		대전투데이	2	2						1							1	
		충청투데이	7	7						3			2				2	
	인	경기도민일보	4	4						2							2	
		경기매일	2	2									2					
		경기신문	7	7						1				2			4	
		경기일보	3	3													3	
		경인매일	9	9									6				3	
		경인일보	7	7						2				2			3	
		천·경	시대일보	4	4						1			2				1
			우리일보	2	2						1							1
			인천일보	3	3						2			1				
		기	중부일보	5	5									5				
	전국매일		4	4						2							2	
	평화일보		4	4						1			1				2	
	수도일보		4	4						1			2				1	
	인천신문		2	2													2	
	일	일간경기	2	2						1							1	
		강원	강원도민일보	2	2								2					
		충북	동양일보	2	2						2							
			중부매일	4	4						2							2
			한빛일보	1	1													1
		새충청일보	2	2													2	
		지	대전북신문	8	8						1			2				5
			전라일보	4	4						1							3
			전북도민일보	4	4						1							3
			전북일보	7	7						3							4
	전북중앙신문		3	3													3	
	전북매일		4	4						1							3	
	대전북신문		3	3						2							1	
	전북대중일보		4	4									2				2	
	전북연합신문		6	6						2							4	
	전주일보		5	5						2							3	
경남	경남도민일보	6	6						3							3		
	경남매일	3	3						2							1		
	경남신문	1	1						1									
	경남일보	4	4						1			2				1		
	울산매일	2	2						1							1		
	울산신문	1	1													1		
제주	제민일보	1	1													1		
	제주일보	1	1													1		

매체 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	조정성립결	기각	각하	취하
	제주 한라일보	3	3								2				1
	소 계	227	227							77	5	39	6		100
경제지	매일경제	13	12		1					8					5
	서울경제	4	4							1	1				2
	파이낸셜뉴스	6	6							2					4
	한국경제	20	19						1	10		1	1		8
	헤럴드경제	5	4		1					3					2
	머니투데이	3	3							1		2			
	소 계	51	48		2				1	25	1	3	1		21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1	1										1		
	일간스포츠	1						1		1					
	소 계	2	1					1		1			1		
특수일간지	국방일보	1	1									1			
	디지털타임스	3	2					1		2					1
	매일노동뉴스	4	4							3					1
	환경일보	2	2							2					
	전자신문	4	4										1		3
	소 계	14	13					1		7		1	1		5
외국어일간지	Korea Herald	2	2							1					1
	소 계	2	2							1					1
무료일간지	메트로	1			1					1					
	AM7	2			2					1					1
	소 계	3			3					2					1
중앙방송	KBS-TV	6	4			2						1	2		3
	KBS-1TV	42	36		5	1				9	4	10			19
	KBS-2TV	19	16		1			1	1	3	1	4	2		9
	MBC-TV	69	57		4	6				20	18	16	2		13
	SBS-TV	25	17		6					8		5	4	1	7
	소 계	161	130		16	9			5	1	40	23	36	10	1
지방방송	부산KBS-1TV	4	4							1					3
	대구KBS-1TV	1	1												1
	창원KBS-1TV	2	2									2			
	전주KBS-1TV	1			1					1					
	광주KBS-1TV	2	2												2
	순천KBS-1TV	2	2									1			1
	제주KBS-1TV	2	2							1					1
	강릉MBC-TV	1			1										1
	삼척MBC-TV	1	1							1					
	원주MBC-TV	3	3							3					
	춘천MBC-TV	1	1												1
	청주MBC-TV	2			2										2

매체 유형	구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조결	권정정	조정성립결	기각	각하	취하	
지방방송	대전MBC-TV	1	1													1	
	대구MBC-TV	5	3			2				2		2				1	
	안동MBC-TV	1	1							1							
	포항MBC-TV	2	2							1		1					
	마산MBC-TV	4	4									3	1				
	전주MBC-TV	4	3			1				1		1				2	
	광주MBC-TV	1	1							1							
	여수MBC-TV	2	2													2	
	제주MBC-TV	2	2							1						1	
	광주PBC-R	1	1													1	
	소 계	45	38			5	2				14		10	1			20
	지역민방	GTB-TV	2	2							2						
KNN-TV		4	4							3						1	
TJB-TV		2	2							1						1	
TBC-TV		1				1										1	
CJB-TV		2	2							1						1	
KBC-TV		1	1													1	
J-TV		4	3			1				1						3	
UBC-TV		1	1								1						
JIBS-TV		2	2													2	
소 계		19	17			2				8	1					10	
케이블TV	YTN	8	7					1		4		2				2	
	MBN	2	2									2					
	한국경제외우TV	2	1			1				2							
	YTN STAR	1	1													1	
	t v N	5	3			2				1						4	
	Mnet	1							1							1	
	서경방송	2	2									2					
	비즈니스엔	1				1										1	
	평화방송TV	1	1							1							
	Story On	1	1													1	
소 계	24	18			3	1	1	1	8		6				10		
이동멀티미디어	TU미디어	1				1				1							
	소 계	1				1				1							
뉴스통신	연합뉴스	23	18			4			1	7		4	1			11	
	뉴스스	7	5			2				3	1	2				1	
	소 계	30	23			6			1	10	1	6	1			12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3	1						2	3							
	주간동아	5	5								1	3				1	
	주간조선	2	2								2						
	이코노미21	1	1													1	

매체 유형	구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결	권 정결	조 불성결	정 립정	기 각	각 하
시사주간지	시사한국	1	1										1			
	시사IN	5	5						1			2				2
	소 계	17	15						2	4	3	5	1			4
시사주간신문	일요시사	2	2						2							
	일요신문	1	1													1
	소 계	3	3						2							1
지역주간신문	CNB저널	2	2						2							
	동작신문	2	2								2					
	마포신문	2	2						1							1
	울산여성신문	1	1													1
	경북문화신문	2	2						1							1
	담양주간신문	1	1									1				
	나주뉴스	2	2						1	1						
	순천시민의신문	2	2									2				
	큰여수신문	2	2													2
	남해안신문	1	1													1
	여수신문	1	1													1
	나주신문	1	1						1							
	신안신문	1	1													1
	장성군민신문	2	2													2
	고흥타임즈	1	1						1							
	서해안신문	2	2						1			1				
	아산투데이	2	2									2				
	보령시민신문	4	4						1							3
	금산저널	2	2									2				
	충남시사신문	1	1													1
	안산타임스	2	2						1							1
	부천자치신문	3	3								1	2				
	부평신문	1	1						1							
	평택시민신문	1	1						1							
	동부고차로저널	1	1									1				
	광명지역신문	1	1													1
	뉴스앤뉴스	2	2													2
	원주투데이	2	2						2							
	인제신문	2	2													2
	충청리뷰	7	4			3				4		1				2
나우리신문	1	1							1							
연기신문	2	2							1						1	
목포투데이	1	1							1							
완주신문	2	2							1						1	
함안아라신문	3	3							2						1	

매체 유형	구 분		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결	권 정결	조 불성결	정 립결	기 각	각 하	취 하
지역주간신문	양산시민신문	1					1										1
	고성신문	2	2							1							1
	김해신문	3	3							2							1
	미륵산	2	2									2					
	양산신문	2	2							1							1
	소 계	75	71			3		1		28	4	14					
특수주간신문	수산신문	1	1									1					
	교통신문	3	3								2						1
	개인택시신문	2	2							1							1
	컴퓨터타임즈	2			2												2
	기독교신문	2	2							2							
	PD저널	1	1									1					
	e조은뉴스	4	4							2				2			
	여행미디어	2	2									2					
	한국교육신문	1	1							1							
	미디어오늘	2	2														2
	가스산업신문	2	2								2						
	건설교통신문	1	1							1							
	목재신문	3	3							1		2					
	목회자신문	1	1							1							
	한국광고신문	1	1							1							
	한국안경신문	2	2							2							
	전문건설신문	1	1							1							
	한국시사정보신문	1	1														1
	전국아파트신문	2	2									2					
소 계	34	32			2				13	4	8	2					7
월간지	신동아	3	3							1	2						
	월간조선	3	3							1							2
	KTX매거진	2	2									2					
	BESTBABY	1			1					1							
	군사세계	1	1							1							
	소 계	10	9		1					4	2	2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11	11							5		2					4
	오마이뉴스	15	15							8		5					2
	프레시안	1	1									1					
	쿠키뉴스	1	1														1
	e조은뉴스	2	2									2					
	CNB NEWS	7	7							5		2					
	투데이코리아	1	1							1							
	대자보	1			1					1							
데일리안	3	2		1													3

매체 유형	구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결정	조정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데일리팝	1	1							1					
	브레이크뉴스	3	3							1					2
	이데일리	4	4							2	2				
	데일리서프라이즈	3	3							2					1
	메디컬투데이	2	2							2					
	오트데일리	2	2												2
	무토미디어	1	1												1
	코카뉴스	2	2							1					1
	위드뉴스	1			1					1					
	아이뉴스24	2	2												2
	메디게이트뉴스	1	1												1
	인터넷미디어오늘	2	2									1			1
	인터넷환경일보	3	3							2		1			
	무브온21	1							1					1	
	애플레시안뉴스	9	9							4			5		
	이투데이	2		2								2			
	소통뉴스	6	6							2					4
	양산뉴스	1						1							1
	제주투데이	4	4							2					2
	광주투데이	2	2							1					1
	광양만권뉴스	1	1												1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	3	3							1		2			
	엔에스아이뉴스	2	2												2
	울산e조은뉴스	2	2												2
	진도뉴스	2	2									2			
	퍼스트데일리	1	1												1
	조선닷컴	3	2						1					3	
	플라마	2	2												2
	청주기별	1			1					1					
	JBS	1	1							1					
	화곡동교회홈페이지	1	1											1	
	소 계	113	104	2	4			1	1	1	44	22	5	5	37
	기타	관악	1	1							1				
개봉교회주보		1	1											1	
한성대신문		2	2							2					
성도교회주보		1	1											1	
신광교회주보		1	1							1					
소 계	6	6							4					2	
총 계	1,043	953	2	53	12	3	11	9	359	54	194	42	6	388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충북중재부가 7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북중재부 76.9%, 부산중재부 73.9% 순이었다. 2006년과 달리 중재부별로 비교적 고른 피해구제율을 보였는데 2006년에는 중재부별로 큰 차이를 보였었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가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							
2005	서 울	592	224	27	18	(4)	130	(1)	17	9	167	(96)	62.2
	부 산	35	8	1			7		1		18	(10)	55.9
	대 구	14	4				2				8	(4)	57.1
	광 주	44	17				8			1	18	(7)	55.8
	대 전	19	8				5				6	(4)	63.2
	경 기	87	27	1			24			1	34	(16)	51.2
	강 원	15	7								8	(7)	93.3
	충 북	10	4								6	(3)	70.0
	전 북	29	15	2	2		4				6	(2)	65.5
	경 남	25	15							4	6	(5)	95.2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100.0%	37.8	3.5	2.3		20.5		2.2	1.7	32.0			
2006	서 울	709	236	23	26		157	(2)	16	13	238	(157)	61.5
	부 산	42	15				10				17	(6)	50.0
	대 구	31	10				10				11	(4)	45.2
	광 주	55	6				16		1		32	(10)	29.6
	대 전	29	15				2				12	(10)	86.2
	경 기	113	25	4			17		3		64	(38)	60.9
	강 원	14	4	1					2		7	(5)	83.3
	충 북	13	7								6	(3)	76.9
	전 북	50	21	1	2		8				18	(11)	66.0
	경 남	20	14								6	(5)	9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100.0%	32.8	2.7	2.6		20.8		2.0	1.2	38.0			
2007	서 울	644	224	20	28	(2)	121	(3)	33	6	212	(140)	64.3
	부 산	25	10	1			1	(1)	2		11	(5)	73.9
	대 구	32	13				7	(1)	2		10	(5)	63.3
	광 주	63	21		4		11				27	(19)	63.5
	대 전	41	16				9				16	(11)	65.9
	경 기	84	20	1			24		4		35	(23)	55.0
	강 원	14	8				2				4	(1)	64.3
	충 북	23	11				1				11	(7)	78.3
	전 북	65	19				5				41	(31)	76.9
	경 남	37	13				11		1		12	(9)	61.1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 ()안의 숫자는 합의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손해배상 청구액 조정액 현황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고 1천억 원에서 최저 1원까지 다양하였다. 평균액은 약 4억 원, 중간액은 2천만 원이다. 1천억 원을 청구한 신청인이 한 명 있어 평균액이 2006년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이를 제외하면 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로 200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조정액 평균은 약 313만 원이다. 최고액은 1천만 원, 최저액은 49만 원, 중간액은 2백만 원이다.

〈표 2-10〉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청 구 액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5	141	500,000	4,150,000,000	278,180,778	50,000,000	1,000,000	10,000,000	3,452,381	3,500,000
2006	318	10,000	3,000,000,000	109,545,629	25,000,000	300,000	15,000,000	3,229,750	1,500,000
2007	349	1	100,000,000,000	400,663,571	20,000,000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11.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액은 대부분 1백만 원~5백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다. 조정액 분포는 1백만 원~2백만 원이 36.5%, 2백만 원~5백만 원이 28.8%로 전체 65.3%를 차지했으며, 5백만 원~1천만 원 17.3%, 1천만 원 이상 9.6%, 1백만 원 미만 7.7%로 집계되었다.

2006년도에 비해 5백만 원~1천만 원의 분포 비율이 많이 상승하였고 1천만 원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구 분 연 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2005		4	13	3	1	21
		19.0	61.9	14.3	4.8	100.0%
2006	7	15	11	1	6	40
	17.5	37.5	27.5	2.5	15.0	100.0%
2007	4	19	15	9	5	52
	7.7	36.5	28.8	17.3	9.6	100.0%
계	11	38	39	13	12	113
	9.7	33.5	34.4	11.6	10.8	100.0%

12. 손해배상 병합청구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병합된 청구의 처리결과를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병합된 청구의 합의율이 단독 청구의 합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배상청구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금전배상이 아닌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2〉 손해배상 병합 청구사건 처리결과

구 분 병합청구명	청구명	건 수	합의건수	합의율 (%)	단독청구 합의율 (%)	취하건수	취하건수 중 보도된 건수	취하건수 중 보도율 (%)	피해 구제율 (%)
정정·손배 (231건)	정 정	231	103	44.6	37.0	59	36	61.0	65.2
	손 배	231	41	17.7	33.7	115	91	79.1	58.9
반론·손배 (12건)	반 론	12	5	41.7	40.0	2	2	100.0	58.3
	손 배	12	2	16.7	33.7	5	5	100.0	58.3
추후·손배 (5건)	추 후	5	3	60.0	17.4	2	1	50.0	80.0
	손 배	5	1	20.0	33.7	4	3	75.0	80.0
정정·반론·손배 (9건)	정 정	9	3	33.3	37.0	4	4	100.0	100.0
	반 론	9	5	55.6	40.4	3	3	100.0	100.0
	손 배	9	2	22.2	33.7	6	6	100.0	100.0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1.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조정사건과 별도로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재신청한 건수는 14건이었다. 이를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 12건, 프라이버시 2건으로 명예 이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 사건들은 그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고 피신청인 측도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재신청건 모두 처음부터 중재로 신청된 경우는 없고,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여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한해 중재부가 권유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중재로 변경 신청한 것이었다.

〈표 3-1〉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연도 \ 구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계	21	3		15	1		2	
100.0%		14.3		71.4	4.8		9.5	

2. 중재신청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중재 청구액 평균은 약 740만 원으로 조정 청구액 평균 3억 9천 7백만 원의 1.9% 수준이다. 중재액 평균은 175만 원으로 조정액 평균 313만 원의 5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조정 청구액보다 중재청구액이 낮은 것은 중재건이 대부분 소액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연도 \ 구분	청구건수	청 구 액				중 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5	10,000,000	30,000,000	22,000,000	20,000,000	700,000	7,500,000	4,240,000	5,000,000
2007	12	1,000,000	30,000,000	7,383,333	5,000,000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21건(청구건수 32건)이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건수가 17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건수는 3건,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건수는 1건 이었다.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 처리결과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하	계속
2005	9	2	4	1	2		2	7		2	5	2	
2006	24	6	6	8	2	2	4	20		14	4	5	1
2007	21	6		4	10	1	1	17	3	2	4		15
계	54	14	10	13	14	3	7	44	3	18	13	7	16

〈표 4-2〉 매체별 자동소제기 처리결과

매체명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하	계속
동아일보	1				1		1						1
문화일보	2	2						1	1				2
서울일보	1				1			1					1
전남도민일보	1				1			1		1			
호남일보	1			1				1					1
서울경제	1	1						1					1
주간조선	1				1				1				1
나주뉴스	1	1						1					1
가스산업신문	1				1			1			1		
KBS-TV	2	1				1		2					2
MBC-TV	9	1		3	5			8	1	1	2		6
계	21	6		4	10	1	1	17	3	2	3		16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 정

1981. 3. 31 ~ 2007. 12. 31.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계	11,364	3,710	214	212	(27)	2,268	(269)	284	72	4,604	(2,405)	60.2%
	100.0%	32.6%	1.9%		1.9%	20.0%		2.5%	0.6%	40.5%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합의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조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 조정건수

■ 중 재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계	21 (100.0%)		21 (100.0%)				

◇ 시정권고현황 ◇

2007년에는 일간 104종(중앙일간지 27종, 지방일간지 77종), 종합주간 19종, 지역주간 240종, 월간 7종, 뉴스통신 2종, 인터넷신문 338 종 등 총 710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20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2006년의 190건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총 200건이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39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가 80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살관련 상세묘사가 44건(21.8%), 마약용량 · 용법공개가 30건(14.9%), 목격자 · 신고자 · 피해자 신원공개가 21건(10.4%), 사생활침해 14건(6.9%) 순이었다.

〈표 5-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7.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범의 침해					사회적 범의 침해				국가적 범의 침해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계	5,188	713	133	1,778	1,025	259	977	228	75			4,812	78	15	220	62	1
	100.0%	13.7%	2.6%	34.3%	19.8%	5.0%	18.8%	4.4%	1.4%			92.8%	1.5%	0.3%	4.2%	1.2%	0.0%

2006년에 비해 자살관련 상세묘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38.8%→21.8%),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31.7%→39.6%), 마약용량·용법공개(5.3%→14.9%)는 대폭 상승했다.

특히 자살관련 상세묘사의 시정권고 비율이 2006년 38.8%에서 2007년 21.8%로 감소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에 대해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시정권고 건수는 2005년 11건, 2006년 4건에 이어 2007년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127건(62.9%)을 차지하였으며, 인터넷신문 43건(21.3%), 뉴스통신 20건(9.9%), 주간지 및 주간신문 11건(5.4%) 등의 순이었다. 일간신문의 비율은 2005년 89.0%, 2006년 79.8%에서 2007년 62.9%로 대폭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7%, 2006년 8.6%에서 2007년에는 21.3%로 월등히 높아졌다.

〈표 5-2〉 2007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구분	간 별	구 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 폭 력 피해 자 신원공개	정 신 질 환 자 신원공개	피 의 자 피 고 인 신원공개	목 격 자 자 신 고 피 해 자 신원공개	사 생 활 침 해 등	마 약 용 량 용 법 등 공개	자 살 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간신문	중 앙 지 역	21			13	1	4	1		2	
	지 역	105		1	40	11	4	21	28		
주간신문	중 합 지 역	6			1		3	1		1	
	지 역	5					1		3	1	
잡 지											
뉴스통신		20		1	9	3	1	3	3		
인터넷신문		43	1		17	6	1	4	10	4	
총 계		200	1	2	80	21	14	30	44	8	
		100.0%	0.5%	1.0%	40.0%	10.5%	7.0%	15.0%	22.0%	4.0%	

〈표 5-3〉 2007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구분	간 별	구 분	신 청 유 형				처 리 결 과				
			개 인 적 법 익 침 해	사 회 적 법 익 침 해	국 가 적 법 익 침 해	기 타	시 정 권 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신문	중 앙 지 역	20	18	2				16		4	
	지 역	1		1						1	
	특 수	1		1		1					
주간신문	중 합 지 역	1	1							1	
	지 역										
방 송 잡 지		10	3	7				1		2	7(이첩)
잡 지		1		1		1					
뉴스통신		5	5					1		4	
인터넷신문											
총 계		39	27	12		2	18		12	7	
		100.0%	69.2%	30.8%		5.1%	46.2%		30.8%	17.9%	

제3자가 신청한 심의건수는 모두 39건으로 이중 2건만이 시정권고 되었으며, 기각 18건, 취하 12건, 기타 7건 이었다. 2005년의 17건에 비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정권고로 이어진 건수는 감소했다(3건→2건).

2006년에 비해 기각률은 높아진 반면(22.8%→46.2%), 취하율은 대폭 감소하였는데(72.0%→30.8%) 이는 시정권고 신청을 통해 사과문 게재, 기사삭제 등을 요구하거나 사전방송금지를 요청하는 등 여전히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1. 상담처리결과 현황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34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2006년도의 2,304건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신청유형은 전화상담이 1,916건(81.8%)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이 190건(8.1%), 인터넷실시간상담 113건(4.8%), 인터넷게시판상담 91건(3.9%)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비해 전화상담 비율이 소폭 상승했고(79.7%→81.8%), 방문상담 비율 역시 소폭 상승했으며(7.7%→8.1%),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소폭 감소했다. (실시간상담 5.7%→4.8%, 게시판상담 6.1%→3.9%)

상담결과 1,776건(68.0%)에 대해 조정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이 가운데 696건이 실제 조정신청접수가 되었다. 조정신청접수율은 39.2%로 2006년도의 555건(32.3%)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어 소송제기 등의 법적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291건(11.1%), 타기관 안내 221건(8.5%), 기타 218건(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 상담신청유형

※ ()은 %

연도	구분 계	상 담 유 형					
		전 화	방 문	인터넷실시간	인터넷게시판	이메일상담	기 타
2004(4. 1.~12. 31.)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	2,304	1,836	178	132	140	7	11
2007	2,343	1,916	190	113	91	14	19
계	8,816	6,913	811	569	402	52	69
	(100.0)	(78.4)	(9.2)	(6.4)	(4.6)	(0.6)	(0.8)

〈표 6-2〉 상담처리결과

※ ()은 %

연도	구분 계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안내	법적절차안내	제상담예정	타기관안내	자체종결	기 타	총 계	조정신청접수
2004(4. 1.~12. 31.)	1,816	1,151	533	91	183	103	11	2,072	318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446
2006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555
2007	2,343	1,776	291	81	221	23	218	2,610	696
계	8,816	6,309	1,664	294	947	204	438	9,856	2,015
		(64.0)	(16.9)	(3.0)	(9.6)	(2.1)	(4.4)	(100.0)	(31.9)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조정신청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조정신청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불가능한 시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459건(61.0%)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 성명권 · 음성권 침해가 247건(10.3%), 사생활침해 63건(2.6%), 신용훼손 43건(1.8%)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비해 명예훼손과(58.0%→61.0%) 초상권 · 성명권 · 음성권 침해(9.4%→10.3%)로 다소 증가한 반면 신용훼손은 다소 감소하였다.(4.9%→1.8%)

〈표 6-3〉 피해유형별 상담건수

* ()은 %

연도	구분 계	피해유형					총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성명권·음성권침해	사생활침해	기타	
2004(4.1~12.31.)	1,816	1,034	153	137	15	527	1,866
2005	2,353	1,710	51	172	42	435	2,410
2006	2,304	1,384	118	224	65	594	2,385
2007	2,343	1,459	43	247	63	582	2,394
계	8,816	5,587	365	780	185	2,138	9,055
		(61.7)	(4.0)	(8.6)	(2.0)	(23.6)	(100.0)

〈표 6-4〉 월별 상담신청현황

* ()은 %

월	구분 건수	상담유형					
		전화	방문	인터넷실시간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기타
1월	208	169	31	2	5	0	1
2월	186	148	10	8	13	3	4
3월	218	174	18	13	9	2	2
4월	215	179	14	11	10	1	0
5월	212	168	16	14	12	2	0
6월	221	181	12	15	8	3	2
7월	202	167	16	11	7	1	0
8월	194	166	12	8	6	1	1
9월	167	135	12	9	8	0	3
10월	182	148	20	7	7	0	0
11월	180	153	12	9	3	1	2
12월	158	128	17	6	3	0	4
계	2,343	1,916	190	113	91	14	19
	(100.0)	(81.8)	(8.1)	(4.8)	(3.9)	(0.6)	(0.8)

2. 매체별 현황

상담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 914건(38.1%), 방송 709건(29.6%), 인터넷 325건(13.6%), 통신 63건(2.6%), 월간지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신문매체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41.6%→38.1%), 방송(24.0%→29.6%)과 인터넷(11.8%→13.6%)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신문매체 내에서는 일간신문이 699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매체가 차지하는 상담비율이 2005년 8.5%, 2006년 11.8%, 2007년 13.6%로 상승하고 있다.

〈표 6-5〉 매체유형별 현황

* ()은 %

연도	구분 계	매체유형								총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월간지	통신	인터넷	기타	불명	
2004(4.1~12.31.)	1,816	641	201	565	35	33	103	13	333	1,924
2005	2,353	780	234	595	57	76	215	10	561	2,528
2006	2,304	750	247	575	58	64	282	15	408	2,399
2007	2,343	699	215	709	31	63	325	24	330	2,396
계	8,816	2,870 (31.0)	897 (9.7)	2,444 (26.4)	181 (2.0)	236 (2.6)	925 (10.0)	62 (0.7)	1,632 (17.6)	9,247 (100.0)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3. 신청인별 현황

상담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1,368건((58.4%), 회사가 260건(11.1%), 일반단체가 178건(7.6%), 공공단체 72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개인상담이 대폭 증가하였고(47.0%→58.4%), 일반단체의 상담도 다소 증가하였다(5.9%→7.6%).

상담시 상담자 대부분이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여 익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 비율이 2006년도의 736건(31.9%)에 비해 대폭 줄어든 433건(18.5%)으로 상담시 위원회를 신뢰하며 상담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6〉 신청인별 현황

* ()은 %

연도	구분 계	신청인유형							불명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공공단체 등	기타		
2004(4.1~12.31.)	1,816	829	141	229	28	7	47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2	696	
2006	2,304	1,084	135	267	25	9	48		736	
2007	2,343	1,368	178	260	26	4	72	2	433	
계	8,816	4,522 (100.0)	574 (51.3)	984 (6.5)	98 (11.2)	98 (1.1)	28 (0.3)	206 (2.3)	4 (0.1)	2,400 (27.2)

4. 교육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언론사, 대학, 공공기업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7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 35회(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12회, 대학 10회, 공·사기업 9회, 기타 6회였다.

교육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34회,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30회, 언론분쟁 롤플레이 8회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루머의 확대 재생산과 인격권

김 형 일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매년 대형 콘서트를 열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가수 나훈아 씨가 2007년 2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하고 잠적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퇴설, 중병설, 해외도피설, 국내 여배우와의 염문설 등의 구체적인 소문들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었다. 12월 들어 일부 언론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관련 소문을 기사화했고 이 기사는 다시 네트워크를 타고 블로그와 게시판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한국일보, 2008. 1. 27.).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고 급기야 일본 폭력조직 개입설까지 나도는 등 삼류소설을 방불케 하는 엽기적 괴담으로 비화되었다. 마침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부산지역 병원과 호텔을 중심으로 내사에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 근거 없는 루머인 것으로 드러났고, 급기야 2008년 1월 25일, 당사자인 나훈아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함으로써 사건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예인과 관련한 루머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델 출신의 한 연기자는 뜬금없이 사망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고, 아들에 대한 루머 때문에 수년간 친자확인소송을 벌여 배상을 받아낸 여성 아나운서도 있었다.

연예인과 관련한 루머가 확산되는 과정은 항상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활동이 뜸하다 싶으면 몇 가지 사소한 의혹들이 결합되어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형성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몇 차례의 운색 과정을 거치면 '아니 뎀 굴뚝에 연기나라'는 속담처럼 점점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당사자들은 루머가 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렇다고 침묵하면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루머는 기정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그의 인격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만다. 그러나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오명이나 악평이라도 있는 것이 연예인의 서글픈 숙명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소문이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침해된 권리가 원상복구 되는 것은 아니다.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문을 받아낸다고 해도 실추된 이미지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고, 물

질적 손해배상은 간접적 보상일 뿐이다.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연예인이기에 무책임한 루머보도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들의 경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수백 명의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룬 기자회견장에서 나훈아 씨는 언론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러분이 펜으로 나를 죽이는 거다”라며 자신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언론매체를 인격살인자로 규정했다.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쓴 언론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쓴 것뿐이야. 방조자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매체에 대해서조차 “나는 한 줄도 안 썼어. 방관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써 내려갈 때는 대한민국 언론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 신중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의 주장에 다소 비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네트워크 사회가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옥죄는 거대한 ‘괴물’로 변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며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언론보도와 인격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는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인격권이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

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이재진, 2006). 현행법에서 인격권이 명시된 사례는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부여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인격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중요한 권리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침해되는 인격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언론자유와 상충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두 권리가 충돌할 때는 양자의 이익을衡量하여 절충하기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형법 제309조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함으로써 보도내용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 1996. 8. 23. 선고 94도3191판결). 따라서 나훈아 씨 관련보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든가 아니면 최소한 기사가 그렇다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다면 인격권의 침

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언론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① 특정인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는지의 여부 ② 정보 접근의 난이도 ③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④ 취재원의 신뢰도 ⑤ 보도의 긴급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처벌의 수준이나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진, 2006). 다음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 1998. 10. 9. 선고 97도158판결).

그러나 나훈아 씨의 행적과 관련한 최근의 추측성 보도들은 인터넷과 증권을 떠도는 소문들을 모아서 보도한 것일 뿐 사실 여부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도 없고 언론이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물론 당사자가 언론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해야 할만큼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 나훈아 씨의 행적에 대한 추적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대중들은 물론 나

훈아 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언론은 이들 유명 연예인들은 공인(public figure)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연예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끌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접근하고자 하며, 때로는 선정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유명세를 타게 되며 나아가서는 언론에 접근하여 반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진, 2006). 이는 미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과 유사한데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공인은 공개적으로 대중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고자 하며, 언론에 접근할 가능성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구분된다고 본다(Gertz v. Welch, 418 U. S. 323(1974)).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서 공인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아직 공인에 대해 기능적인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가 공인인지 아닌지 여부보다는 명예훼손적 언사가 진실인지 아닌지의 진실성 여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공익성 여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재진, 1999).

사실 언론에서 종종 공인이라 부르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유명인(celebrity)이라고 해야 한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①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②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엡센스 국어사전). 공인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도덕심이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신순철, 2006). 연예인들은 개념적으로 공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에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유명인과 공인

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취재를 용이하게 한다. 연예인을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어도 위법성 조각사유나 상당성의 원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예인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불리 법적 대응을 했다가 더욱 악의적인 보도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록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해당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한편으로 연예인들은 언론을 통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언론과 공조하는 면도 있다.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소위 '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생활을 조작하기도 하고 온갖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상업적으로 신비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일정부분 상호협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필요에 따라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하면서 온갖 인격침해를 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네트워크 사회와 루머의 확산

뜬소문, 유언(流言), 풍문(風聞) 등으로 해석되는 루머(rumor)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체제에서 혹은 정치적 불안, 전쟁 등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루머가 일말의 진실을 담는 경우도 있다. 여론에 수렴되지 못한 민중의 욕구와 원망을 담고 있는 잠재적 여론인 것이다. 그러나 루머는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지극히 안정적인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권태감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 단순한 흥밋거리로 '나는 믿지 않지

만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 루머는 비공식적이며 근거가 없고 전달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되기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병리현상일 뿐이다. 연예인과 관련한 루머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한다.

어떤 경우이든 루머는 사안의 중요성과 모호함이 클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소문은 더욱 증폭된다. 나훈아 씨 관련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도 '국민가수'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있는 그의 행적이 장기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대형 콘서트를 열었던 당사자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콘서트를 취소했고 기획사 사무실도 폐쇄되었다. 루머가 발생할만한 조건이 잘 갖춰져 있던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루머의 확산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사회적 여건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빠르게 네트워크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은 시민참여의 확대로 개인의 표현의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김진웅, 2007). 이런 시대적 환경 변화에서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신장된 반면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될 만큼 선진화된 정보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인터넷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네티즌이 비정상적 호기심, 악의적 발상 등으로 루머를 날조, 유포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재미삼아 가볍게 주고받던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될 경우 기정사실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나훈아 씨 루머와 관련한 최초 보도는 2007년 2월 20일 <스포츠조선>에 실린 “나훈아, 활동 중단 잠적 ‘쌓이는 의문’... ‘은퇴설-이혼설’” 기사였다. 11월 22일에도 “나훈아 잠적 9개월째...중병? 하와이 거주? 꼬리무는 설” 기사를 냈다고 한다. 또 12월 27일자에서는 “<연예가 25시> 중견가수 R씨, 일 조폭 두목 애인 건드려 못매”에서 신체훼손설까지 이니셜로 기사화했다. 계열 월간지인 <여성조선>은 2007년 5월호에서 이니셜을 통해 후배의 아내를 뺏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일련의 보도의 진원지는 <스포츠조선> 소속 연예담당기자의 개인 블로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MBC PD수첩, 2008. 1. 29.). 이 블로그에는 이미 나훈아 씨와 관련된 갖가지 소문들이 한 편의 소설처럼 연재되어 있었다.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처럼 퍼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루머보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피해자는 뚜렷한데 가해자의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나훈아 씨의 적극적 대처로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었지만 루머의 확산에 기여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네티즌들은 언론의 성급한 보도를 비판하고 심지어 ‘나훈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루머의 확산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에는 지금도 또 다른 검증되지 않은 온갖 정보와 뉴스가 올라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루머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한 언론사나 기자들도 아무런 해명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과 같은 루머보도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누가 그 희생제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4. 루머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

루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 언론매체에서는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각 언론매체는 사실과 칼럼, 기획 기사를 통해 각종 분석과 해설을 내놓았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법적인 규제조치들을 내놓고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온갖 방안들이 모색된다.

그러나 루머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사실 언론매체이다. 인터넷을 떠돌던, 말 그대로 뜬 소문에 불과했던 루머가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이다. 술자리의 안주거리로나 제격인 연예인에 대한 각종 뒷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활자화됨으로써 일말의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선정주의(sensationalism)란 언론이 다루어야 할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을 조명하기보다는 독자나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정주의는 전율과 긴장감을 제공하고 불건전하면서 유해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공포, 범죄, 재난, 성추문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인간의 탐욕에 호소하려는 속성을 지닌다(Tannenbaum & Lynch, 1960). 이런 속성은 소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색언론이란 19세기 말 경쟁적이고 침투력이 강한 상업적인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대중의 원시적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하는 저널리즘을 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논리가 심화됨

에 따라 신문이 스스로 상품화됨으로써 대중에 영합하여 취재하는 행위로서, 미디어의 내용을 선정적인 사건으로 채우고 이를 과도한 비중으로 다루는 현상을 일컫는다(성동규, 2002).

언론의 선정보도는 기자의 특종심리와 언론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이 원인이다. 언론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한다는 점은 곧바로 시장점유율 상승과 광고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특종심리와 언론사 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오보나 허위보도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안동근, 1998).

둘째, 편의주의적 취재관행을 고쳐야 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일선 기자들의 취재는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는 익명의 네티즌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다.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보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지하철 결혼식’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몇몇 연극전공 대학생들이 지하철 안에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결혼식을 연출했고, 그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의 저녁종합뉴스에 이 장면이 방송되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내용과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동영상이 취재내용의 전부였을 뿐 충분한 사실 확인은 생략되었다. 다음날 어느 방송사에서 후속 취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취재 과정을 단축시키고 번거로운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전형적인 취재편의주의로 인한 오보였다.

세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의 판단을 도와야 할 언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손쉽게

취재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기사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언론의 기본원칙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성동규, 2007).

언론에 부여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역할은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걸러야 한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비롯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루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언론이 상업적 동기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루머를 확산시키는 경로로 전락하지 말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 사실 확인을 수행함으로써 루머의 사회적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에만 충실해도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옥조(2001). 〈미디어윤리〉. 중앙M&B
- 김진웅(2007). “언론의 자유와 인권”. 언론인권센터 토론회
- 성동규(2002). “스포츠신문의 연예인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봄호
- 성동규(2007). “네티즌 댓글의 무분별한 인용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봄호
- 송경재(2005). “연예인 X파일 사건, 언론 그리고 인터넷”.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세미나
- 송경재(2008). “네트워크사회의 인권침해와 언론”. 언론인권센터 토론회
- 신순철(2006). “언론의 무분별한 속보성 경쟁과 연예인의 인격권”. 〈언론중재〉. 봄호
- 안동근(1998). “언론분석: 황색 저널리즘의 회귀”. 〈저널리즘비평〉. 25권
- 이재진(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호
- 이재진(2006). 〈언론보도와 인격권〉. 한나래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 『Sun』지 상대로 소 제기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첼시의 구단주 Roman Abramovitch가 『The Sun』지의 지난 9월 27일자 “Roman 구단주 : 나는 Jose를 먹어 치웠다! 첼시 구단주의 웃음” 기사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The Sun』지를 상대로 2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에는 첼시의 전 감독인 Jose Mourinho의 머리가 음식 접시 위에 올라 있고 이를 스테이크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해 막 먹으려 하고 있는 Roman Abramovitch 구단주의 모습이 합성된 사진이 실려 있었다.

Roman Abramovitch 구단주는 문제의 기사가 자신을 “비전문적이고 비능률적인 방식으로 처신해 온 것처럼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Roman Abramovitch 구단주는 공개석상에 잘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첼시의 전 감독인 Jose Mourinho를 공격하는 장면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모욕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은 물론 첼시 구단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일시적이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Roman Abramovitch 구단주는 『The Sun』지의 발행인인 News Group Newspapers가 해당 기사내용에 대해 자신에게 확인을 하거나 자신의 대변인으로 하여금 그 기사에 대해서 먼저 논평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더 무거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ress Gazette 2008년 2월 18일자) □

명예훼손은 극히 일부분이고, 서적 발행도 4년이나 경과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증쇄 및 판매를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

- 일본 도쿄 고등법원 판결 -

지난 2000년 일본 북해도 惠庭시에서 여성 회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6년형이 확정된 전 동료인 大越美奈子 수형자(受刑者)가 월간지의 기사와 기사를 채록(採録)한 문고본(文庫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新潮社 등에 문고본의 증쇄(增刷)와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2007년 10월 18일 도쿄지법의 1심판결을 변경, 금지(禁止)를 인정하지 않는 역전(逆轉) 판단을 내리고 배상액도 감액했다.

판결에 의하면 新潮社는 「新潮 45」 2002년 2월 호에 「惠庭 미인OL 사내연애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동년 11월에 발매되는 문고본 「살해한 것은 너다」에 채록했다.

문제된 이 기사는 大越 수형자가 살인사건 이전에, 당시의 근무처에서 발생한 방화와 절도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명예훼손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증쇄 및 판매의 금지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명예훼손은 극히 적은 부분에 한정된다. 서적이 발행된 후 4년 이상이 경과했고, 앞으로도 상당한 증쇄가 있으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액도 1심의 220만 엔에서

110만 엔으로 감액했다. 쌍방은 상고했다.
 (『신문협회보』, 2007년 11월 6일자) □

Northern Rock 은행 브리핑 메모 게재 금지

Northern Rock 은행이 『Financial Times』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 Northern Rock 은행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배포된 브리핑 메모 중 10여 페이지 이상의 전문이 『Financial Times』를 통해 게재되자 브리핑 내용이 담긴 『Financial Times』의 출판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인 Tugendhat 판사는 Northern Rock 은행에 관해 상업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 브리핑 메모를 『Financial Times』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Tugendhat 판사에 따르면 “Merrill Lynch와 Citibank 그리고 Blackstone Group 등은 기밀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 재정 기관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그 브리핑 메모를 준비”해 왔었다. 그러나 『Daily Telegraph』지가 지난 2007년 11월 8일에 그 브리핑 메모로부터 발췌한 정보를 포함한 기사를 게재했고 며칠 뒤인 11월 13일에는 『FT Alphaville』이라 불리는 『Financial Times』의 웹사이트에 Northern Rock 은행 브리핑 메모 중 10여 페이지 이상의 전문이 게재됐다. 이는 곧바로 『Dow Jones』, 『Evening Standard』, 『BBC』, 『The Guardian』 웹사이트, 『Reuters』 웹사이트 등에 문제의 메모에 관한 내용이 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태가 여

기까지 이르자 Northern Rock 은행은 『Financial Times』와 전 세계의 “혹시 모를 사람들”을 상대로 긴급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Tugendhat 판사는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Financial Times』가 공표한 편집되지 않은 구체적인 상업 정보가 알려지는 것에서 그 어떠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Tugendhat 판사는 『Daily Telegraph』와 다른 매체들이 브리핑 메모의 발췌본을 재발행 하는 것 역시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Tugendhat 판사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출판 금지 명령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FT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중이 접할 수 있었던 브리핑 메모에 관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의 상식으로 미루어볼 때 영리적으로 민감한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Tugendhat 판사는 “하지만 브리핑 메모의 요약본이 더 보도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거라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두고 볼 때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브리핑 메모를 발췌해 재발행 한 것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Press Gazette 2007년 11월 26일자) □

공표되기 전의 기사를 법원에 사전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로서 금지해야

기자들이 발행 이전의 기사에 대한 판사의 법적

승인을 얻기 위해 기사를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Telegraph Group와 Thomas Cook 여행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도 지켜졌다.

이 판결이 나온 것은 호텔의 난방기구에서 새어나온 연기에 의해 지난 10월 Corfu에서 사망한 두 아이들과 관련해, 그리스 경찰의 심문을 받은 Thomas Cook 여행사 직원의 실명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 『The Daily Telegraph』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Telegraph』 소속 기자인 Caroline Gammell은 2007년 10월 12일 Thomas Cook 여행사에 연락해 『Telegraph』가 한 직원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Thomas Cook 여행사는 명예훼손을 근거로 출판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보통 이런 출판 금지 명령 신청은 문제의 기사가 변명의 여지없이 절대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Thomas Cook 여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The Daily Telegraph』가 문제의 기사 전체 표현을 기사에서 거명하려던 직원이 미리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주 판결에서 또 다른 판사인 Eady 판사는 이전 판사가 오판했다고 말하며 1989년의 Leary 대 BBC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다. 그 사건에서 영국 항소 법원은 “원고가 된 매체가 기사 초안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는 법원을 검열자의 위치에 서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Eady 판사

는 “중중 언론들이 보도하려고 하는 내용을 법원이 미리 볼 수 있기를 선호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도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그들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Eady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내린 중간 판결을 뒤집었지만 그리스의 소송절차를 고려할 때 Thomas Cook 직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The Daily Telegraph』는 그리스 경찰 수사 중에 혐의가 드러난 Thomas Cook 직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를 신기로 결정했다.

『Telegraph』 측 변호사인 David Price는 “미디어 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판사는 신문이 발행 전에 기사 내용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종종 이해하지 못한다”며 “Eady 판사가 명백히 밝혔듯이,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법원에 기사 노출을 하는 것은 검열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7년 11월 16일자) □

애국의용군(LVF), 『Sunday World』지 상대로 PCC에 불만 신청해

준(準)군사조직인 ‘애국의용군’(LVF) 소속 단원들이 『Sunday World』지의 저널리스트들을 상대로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이들은 “애국의용군 소속 Neil Hyde가 마약소지로 기소된 적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Sunday World』

지가 애국의용군 전체를 마약상으로 묘사했다”며 PCC에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애국의용군 소속 Andrew King이 1997년에 있었던 애국의용군 리더 Billy Wright의 장례식에서 중요한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ndrew King을 불법 애국의용군의 일원으로 묘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unday World』지의 뉴스 부편집장 John Cassidy는 “이는 애국의용군들이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편집장은 “우리는 점잖은 시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準)군사조직의 껍데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애국의용군은 법무장관을 이용해 소속 단원의 폭력 관련 재판에 관하여 어떤 기사도 쓰지 못하도록 금지처분을 내리도록 종용한 적이 있으며 『Sunday World』지의 저널리스트였던 Martin O’Hagan은 6년 전, 애국의용군의 폭력 활동을 폭로하는 일련의 기사를 작성한 후에 애국의용군 멤버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했다.

(Press Gazette 2007년 9월 27일자) □

중국 정부, 『언론의 합법적 취재는 법률로 보호돼야 한다』

- 이례적으로 취재기자의 권리 강조 -

신문·잡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부서인 중국신문출판총서(總署)는 최근 뉴스취재기자의 합법적 취재는 법률로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지난해

11월 5일 신화통신이 전했다.

정부당국에 의한 엄격한 취재제한이 있는 중국에서 취재기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지침이 내려지는 일은 드문 일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보도규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피해 이미지 개선을 노린 이례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 지침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뉴스보도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기사를 구타하기도 하고 취재기자채를 파괴하는 등 방해행위가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는 기자들의 취재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지침은 취재하는 쪽도 국가의 법률이나 직업적인 도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기사를 가지고 금품을 받는다면 상대방에 광고비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7년 11월 13일자) □

**범죄 관련자의 신원 공개 금지와
공표의 자유는 그 이익을
잘 비교衡量해 결정해야**

형사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공개정의의 원칙’은 검시(檢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영국 고등법원 가정부(Family Division)의 장인 Mark Potter 경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죽은 아이의 사인을 조사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그 부모와 죽은 두 아이의

신원을 언론과 미디어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 청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영국 고등법원 가정부 관할 소송에서 한 여성이 당시 4살이던 자신의 딸에게 가혹 행위를 가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또한 7개월 된 그녀의 아들이 2003년 8월에 사망(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성에게는 죽은 두 아이 말고도 LM이라 불리는 5살짜리 딸이 있으며 현재는 입양할 새 부모를 기다리며 입양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역 당국은 언론이 LM 뿐만 아니라 죽은 두 아이와 그 부모를 포함하여 이번 검시(檢屍)에 관련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원을 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강제 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족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LM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의 입양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강제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Time Newspapers』와 『Guy Vassal-Adams』는 LM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대다수의 언론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보호는 LM에게 한정돼야 하며 검시(檢屍) 보도를 할 때 언론이 부모와 사망한 아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입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 가정부 수장인 Mark Potter는 판결문을 통해 “검시(檢屍)와 형사 재판을 둘러싼 세상의 이목이 수그러들고 나서도 이번 일로 인한 이야기로 인해 당사자들이 오랜 기

간 동안 시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Mark Potter는 “세상의 평판이 LM이 입양될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걱정은 전적으로 추측일 뿐이며 현재까지 LM을 입양할 새 부모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LM이 지닌 문제 있는 성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ark Potter는 “이번 일에 있어 언론의 권리인 제10조가 LM의 불행한 상황에 관련하여 참작되는 제8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Mark Potter는 “한 아이가 그 가족 내의 살인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삶에 발생한 혼란과 그 아이가 대면하고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와 공개 정의의 이득에서 일반적으로 기인하는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사건들이 이런 권리들에 규제를 가할 정당할 정도로 충분히 별다르거나 예외적인지의 질문을 상정하고 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ress Gazette 2007년 8월 8일자) □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규제해야” 90.9%
“국가에서 규제해야” 63.2%
규제가 압도적

-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유해정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내각부(內閣府)는 2007년 10월 25일 「유해정보에 관한 특별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인 묘사나 외설화상(畫像) 등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정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90.9%에 이르며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잡지, DVD 등의 유해정보 규제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0.8%, 『현재와 같은 정도로도 좋다』는 응답이 13.8%였으며, 유해정보의 규제를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2%,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21.8%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1,767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신문협회보』, 2007년 11월 13일자)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영화 저작권 불인정

- 일본 도쿄 지방법원 판결 -

북한의 영화를 무단으로 뉴스프로에서 사용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북한 문화부 산하의 행정기관인 「조선영화수출입사(社)」와 일본의 배급회사가 日本텔레비전과 후지텔레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 제47부는 2007년 12월 14일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른조약(Treaty of Berne)상의 저작권보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지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日本텔레비전은 2003년 6월, 후지텔레비전은 동 12월 뉴스프로에서 북한 영화의 일부를 허락 없이 방송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간 조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와의 사이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의무관계가 국가로서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12월 26일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1월 22일자)

공표 후 50년이 경과한 영화의 저작권은 소멸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1953년에 공개된 미국 영화 「센」 등을 염가의 DVD로 만들어 판매한 두 회사에 대해, 미국의 파라마운트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2007년 12월 18일 『공표 후 5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저작권은 소멸했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 판결로 파라마운트사 측의 패소는 확정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2004년 1월에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이 영화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 개정시점에서 50년을 경과한 1953년 작품의 저작권 유무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문화청은 1953년 작품의 보호기간도 연장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으나, 사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문협회보』, 2008년 1월 22일자)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단체가 ○○한우축제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한우를 혼용 판매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1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한우협회 ○○군지부 (지부장 조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증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합의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양일보 : (1) 『○○ 황토탠우 일반육 혼용판매 말
쌩』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3면)

내 용 : 충북 ○○군에서 얼마 전 개최된 '속리산
황토탠우 조랑우랑 브랜드육 행사(한우축제)'에서 행
사 목적과 달리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가 소비자들에
게 다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행사 주최측에서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를

대형마트나 일반 정육점 등에서 구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
는 등 철저한 경찰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중략)

○○경찰서와 한우협회○○군지부, ○○축협 등에 따
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군 일원
에서 열린 한우축제에서 협회에서 생산된 한우(조랑
우랑)의 양이 크게 부족해 일반 정육점이나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구입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판매했다. (중략)

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한우축제를 보기 위
해 찾은 소비자들이 행사장에서 사먹고 구입한 소고
기 대부분이 조랑우랑이 아닌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
기인 셈인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소고기 600g을
등급에 따라 3만 9,000원에서 1만 2,000원에 판매한 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 외에 수입
산 소고기와 불법 도살·가공된 소고기 등도 이날 행
사기간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략)

그러나 축협관계자는 협회측 주장과 달리 "협회측
에서 행사가 열린 날이 추석 전이라 물량이 달려 소
고기를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해 롯데마트나 정육점 등
에서 판매되는 2급 이하 값싼 소고기를 각 부위별로

‘모듬’ 형태로 납품받아 조합측과 일반음식점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2) 『혼합육 판매 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3면)

충북 ○○군에서 열린 ‘○○한우 축제’에서의 저가 소고기 대량판매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소고기 판매를 주관한 축협측이 정확한 매입·판매량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데다 매입처마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축협이 행사 전 비축해놓은 한우가 출처불명이라는 점이다. 축협은 비축해놓은 한우 1,400kg도 농협청주물류센터에서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본보 취재 결과 물류센터에서 ○○축협으로 공급된 한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측이 한우 매입처를 속인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축협 간부는 “언제 청주물류센터에서 구입했다고 했느냐. 비축된 한우는 행사 전에 서울 농협공판장을 비롯해 전국 농협공판장에서 사들인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는 모르지만 한우는 맞다”고 말했다.

○○군과 축협이 행사 전 소비자들에게 조랑우랑 등 ○○한우만을 판매키로 해놓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소고기를 판 것으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후략)

(3)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3일자 3면)

충북 ○○한우축제에서의 출처불명 소고기 판매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입소고기 등이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략)

그러나 축협이 추가 구입한 한우(296만 원)를 빼내며 3,700만 원 상당 소고기의 출처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판매된 소고기 중 수입소고기가 대량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4) 『○○황토한우 품질은 ‘최고’ 한우협군지부 상도덕 ‘최저’』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4일자 1면)

(전략) 그러나 전국한우협회 ○○군지부와 ○○축협이 지난 9월 개최된 ○○한우축제에서 황토한우가 부족하자 일반 한우는 물론 2등급 이하의 혼합육을 판매해 파문을 일으킨 것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특화에 성공한 ○○한우의 이미지 손상과 사업 확대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했다. (후략)

(5) 『“○○축협 원산지 표시 위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0일자 3면)

충북 ○○한우축제에서 한우를 판매한 ○○축협이 전국 5개 지역에서 사들인 한우를 ○○한우인양 판매한 데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원산지 및 부위·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중략)

○○경찰서는 19일 ○○축협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기관인 ○○군에 과태료부과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에 따라 경찰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9,200만 원 상당의 타지역 한우를 행사참가자들에게 판매한 ○○축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후략)

(6) 『“한우협 군지부 발전 기회 삼겠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2일자 2면)

충북 ○○한우축제 혼합육 판매 파문과 관련, 전국한우협회 ○○군지부(○○한우협회)는 이번 사건을 자정의 계기로 삼고 향후 행사의 내실화 등에 주력키로 했다.

이번 ○○한우축제 혼합육 파문은 경찰 수사 결과

수입소고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타지역 한우를 대량 매입,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9,200만 원 상당의 타지역 한우를 축제 참가자들에게 판매한 ○○축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군에 통보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 지는 지난 2007년 11월 9일자 3면 『○○ 황토 한우 일반육 혼용 판매 말썬』, 11월 12일자 3면 『혼합육 판매 의혹 확산』, 11월 13일자 3면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11월 14일자 1면 『○○황토한우 품질은 ‘최고’ 한우협군지부 상도덕 ‘최저’』, 11월 20일자 3면 『“○○축협 원산지 표시 위반”』 제하의 기사 및 11월 22일자 2면 『“한우협 군지부 발전기회 삼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007년 9월 14일~15일 ○○읍에서 개최된 한우축제 시 유통된 가짜 ○○한우와 수입소고기 유통의혹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경찰서에서는 수입소고기 저가 판매에 대해서 지난 2007년 11월 15일자로 무혐의 내사 종결했으며 ○○경찰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출장소로 의뢰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우축제에서 유통된 한우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입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가짜 ○○한우 및 수입소고기 판매 의혹 혐의 없어’

• 본 문 : 동양일보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종합면과 사회면, 지역면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읍 □□리 △△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한우축제에서 유통된 가짜 ○○한우와 수입소고기의 유통 의혹에 대해 일련의 보도를 하면서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축협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제목을 사용한바 있다.

그러나 ○○경찰서의 조사 결과, 수입소고기 저가판매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지난해 11월 15일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출장소로 원산지의 미표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일보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수입육에 대한 의혹 부분을 다룬 기사 내용이 마치 위법한 것처럼 보도되어 한우농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한편, ○○군 한우협회 측에서도 향후 축제를 개최할 시에는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8. 1. 18. 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11월 9일자 ○○황토한우 일반육...)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가짜 ○○한우 · 수입소고기 판매의혹 혐의 없어』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유성구청장이 술에 취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예산 의결이 늦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청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청·손배청구

신 청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장 진 동 규)

피신청인 : 대전시티저널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합 의 (정청)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전시티저널 :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2일자)

내 용 : (전략)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를 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성구 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A의원 등은 “단체장이 구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술에 취해 참석치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중략)

앞으로 유성구 집행부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예산안을 준비해야 되어 유성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처지에 놓였으며, 유성구청장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정 시일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유성구의 회 또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12월 22일자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성구 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구청장이 2008년도 본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 만취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회한 것이 아니라 정회한 것이고 예산안 의결은 구청장 참석유무와 관계없이 의결이 가능한 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9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대전시티저널이 지난 2007. 12. 22. 18:35 메인화면에 게재한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성구 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성구 집행부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준 예산안을 준비해야 되어 유성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처지에 놓였으며, 유성구청장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 의결에 구청장이 꼭 참석하여야 하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취재의도와는 다릅니다.

또한 유성구청장은 2007. 12. 21. 예산안 의결일에 만취한 사실이 없고 구청장이 불참한 관계로 예산안 의결기한이 도과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전시티저널 2008년 1월 9일자 09:00부터 1월 23일자 08:00까지 메인화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로,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시티저널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8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략 총학생회의 비리에 대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 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12월 18일 23:05)

내 용 : (전략)

▷성우 : 소문의 진위에 대해 증언해 준 것은 총학생회 간부 출신인 ‘박 씨’ 였다.

▷박OO(가명) : 집 애기까지는 모르겠고 중형차 한 대 정도는 뽑을 수 있어요.

총학 안에 관리하는 식구들이 40명이예요. 그 40명 동생들한테 안 풀고 자기가 최대한 쪼잔하게 해서 챙기며는 소위 말해서 에쿠스 한 대는 사갖고 나간다고 봐도 돼요. 집은 오바고.

▷성우 : 박 씨가 주요 수입원으로 꼽은 것은 다양한 학내 사업이었다. 총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오간 협찬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박OO(가명) : 자판기 이게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 진짜 드러워요. 사장님을 불러다가 안에 한 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었어요. 학교 자판기 업자 바꿔 주라고 그 사진 다 찍어서 공문에다 뒤에 다 붙여서 학교에다 공문 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500만 원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와요.

▷박OO(가명) :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허락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식으로 돈을 쥐요.

명절 잘 쇠시라고, 한 100만 원씩 와서 갖다주고 총학생회장은 그거보다는 완전 많다고 보시면 돼요.

▷PD : 가장 덩치가 컸던 게 어떤거예요?

▷박OO(가명) : 그게 거의 졸업앨범이에요. 졸업앨범은 그냥 하나 주면 그사람들이 몇천만 원씩 찍워 버리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2007년 12월 18일 「PD수첩」 프로그램 『흔들리는 총학생회』 제하의 방송에서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교 총학생회에 대해 취재·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에게 방송촬영 없이 구두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총학생회 비리를 증언하는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신청인의 추후 동의 없이 내

보내 신청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며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월 31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과거 본인이 지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의 소속 조합원들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환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환경일보 : 『경기도 자동차OOOO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일자 9면)

내 용 : 자동차○○○○조합 전임○○시 지회장을 (약 8년) 역임한 황모 씨는 지회장을 지내며 조합원들에게 전장품 및 부품을 판매해오다 2007년 11월 지회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전국자동차 ○○○○○국민운동본부 ○○시지부를 설립하여 자동차○○○○조합원들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중단속하겠다고 하며 우리 단체는 사법권도 있다고 협박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 회원인 윤모 씨는 전임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원들 중 자기 부품을 팔아주지 않는 회원사에게는 협회에 보고하여 지명단속 및 협박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며 경찰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3일자 9면 『경기도 자동차○○○○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전 지회장인 황모 씨가 조합원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팔아주지 않는 회원업소는 협회에 보고하여 지명단속을 하겠다고 하며 협박 및 강매를 하였고 2007년 11월 지회장 선거에 떨어지자 한국자동차○○○○국민운동본부 ○○시지부를 설립하여 자신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집중단속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회장 선거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있었으며, 전 지회장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물품 강매를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고 사법권 발언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기도 자동차○○○○사업조합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8년 1월 3일 사회 지방면 『경기도 자동차○○○○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전임 ○○지회장을 지낸 황모 씨가 조합원들에게 부품을 판매해왔으며, 지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 타 단체 지부를 설립하여 해당 단체에 가입할 것을 협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일어난 것으로 바로잡고, 황모 씨는 타 단체 회원에게 협박하며 사법권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현회원 윤모 씨의 말대로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명단속 및 협박을 하여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환경일보 9면 좌측하단에 상자기사로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2월 1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환경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5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노조가 대선 후 사장 퇴진 등을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물밑협상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위원장 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8일자 28면)

내 용 : (전략) 이와 관련해 방송계에서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연주 사장 퇴진 등과 교환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준다는 물밑 협상을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가 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당사의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 간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지는 지난해 2007년 11월 28일자 28면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제하의 기사에서 “방송계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연주 사장 퇴진 등과 교환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준다는 물밑 협상을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가 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2007년 11월 28일치 28면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기사관련 정정보도=본지는 한국방송 노조가 대선 이후 사장 퇴진 등을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물밑 협상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한국방송 노조는 수신료 인상 문제로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 한국방송 노조에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17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항의 보도와 함께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총선 불출마를 하는 대신 신청인 아내의 공천신청을 돕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부창부수』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5일자 5면)

내 용 : (전략) ○○갑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에 권○○(48) 씨가 남편인 김○○(52) ○○갑 위원장을 대신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이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어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아내인 권 씨를 도와 진수희 의원과의 당내 공천에서 승리하고 현역 의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천 의원을 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관련 정정 및 사과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5일자 5면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부창부수』 제하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불출마를 하는 대신 아내 권○○ 씨의 공천신청을 돕는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 위원장은 권○○ 씨가 공천을 신청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공천신청을 강력하게 만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바람난 가족’으로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부창부수’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김○○ 위원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정치면에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부창부수』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이 불출마를 하는 대신 아내 권○○ 씨의 공천신청을 돕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 위원장은 권○○ 씨가 공천을 신청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공천신청을 강력하게 만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바람난 가족’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창부수’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김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2월 28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5면 원보도 게재부분에 1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2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붙은 좌석이 없자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호 영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이데일리 : 『(이모저모)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4일자 정치면)
 내 용 : (전략) 회견장에 뒤늦게 도착한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자신의 명단이 붙은 좌석이 없어 다른 좌석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 (중략)

이 대변인은 주 대변인 좌석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원래 비서실은 뒤에 가는 거예요”라고 한마디. 주 대변인 자리는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 뒤편에 급조됐고, 결국 이날 당선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대변인들 좌석 배치는 주호영,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김인규(당선자 비서실 공보팀장), 이동관 대변인 순으로 조정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 자리배치 두고 대변인들 간 신경전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4일자 정치면 『(이모저모)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에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신년기자회견장에서 좌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어리둥절해 했으며 주 대변인의 좌석을 급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주 대변인은 기자회견의 사회자로서 별도의 사회자석이 있기 때문에 좌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거나 좌석명단이 없어 어리둥절해하지 않았으며, 좌석 또한 급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주호영 대변인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4일 『(이모저모)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에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자신의 명단이 붙은 좌석이 없어 다른 좌석을 훑어보며 어리둥절해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주 대변인은 당선인의 앞 좌석에 앉은 사람까지만 악수한 뒤 단상에 오르기로 계획되어 있어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좌석을 훑어본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데일리의 경제섹션 초기화면에 상기 정정보도문을 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데일리 : 『(주호영 대변인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5일자 경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허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 대학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9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접 수 일 : 2008. 3. 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허위 논문증명서 제출한 전 대학강사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인천지방경찰청은 연구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이의신청을 하면서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천 모 대학 전 강사 최모(32. 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모 학회 출판이사인 같은 대학 이모(52) 교수를 통해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해 대학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회 관련자 등을 상대로 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논문게재증명서 허위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사회면 『허위 논문증명서 제출한 전 대학강사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가 연구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이의 신청과정에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가 제출한 논문게재증명서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대학 측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최모 교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2월 11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연구업적 역시 2년간 논문 총 6편, 학술대회 발표 논문 총 6편으로 모두 12편의 실적이 있었으며, 이는 대학이 요구하는 2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써 업적 역시 충분했으나, 대학 측의 조직적인 심사평 조작에 의한 재임용탈락 혐의 등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인천 A대학 교수 '허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 혐의 벗어
- 내 용 : 인천지검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허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대학 측에 의하여 고발된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에 대해 2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최 교수가 제출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가 재임용 심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교수는 관련 학회에서 발급받은 정식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으며, 임용기간에 발표한 연구논문 편수도 대학 측의 요구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지역(인천)면에 2008년 3월 2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원 조정대상기사는 삭제한다.

pnews.co.kr) 지역(인천)면에 2008년 3월 2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원 조정대상기사는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원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2항, 제3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인천 A대학 교수 '허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 혐의 벗어』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4일자 인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 등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자 판결(2006가합11556)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이하 원고 회사)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기자(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지난 2006. 4. 1.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 『이슈, 비평 : 한 쪽은 칭찬, 한 쪽은 비판.. OOOO를 보는 상반된 시선』 제하의 보도에서 원고 회사가 지난 2006. 2.부터 커피전문점 OO OO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연이어 내보낸 것에 대해 “원고 회사가 OOOO를 연이어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OOOO가 조선일보의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제의를 거절하고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신문 무인판매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라며 “언론사가 자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일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이

처럼 기업체가 광고나 협찬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사가 이에 대한 보복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일선 기자들도 이러한 광고나 협찬 따오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회사와 OOOO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조선일보 기사의 보도 취지를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매체 간의 비평이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

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피고 김□□이 이 사건 방송을 위하여 취재할 당시 원고 회사와 ○○○○가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 김□□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를 취재하고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의 배경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다고 믿게 된 점, 이 사건 방송은 사실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매체비평적 관점에서의 평가적 의견 보도의 성격이 많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은 부족하더라도,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1556 손해배상(기)
 원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2. 김 ○ ○
 3. 손 ○ ○
 원고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사건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김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 론 종 결 : 2007. 9. 13.
 판 결 선 고 : 2007. 10. 25.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 손○○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1.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김○○, 손○○은 원고 회사 소속의 기자이며,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가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미디어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은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로서 2006. 4. 1.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에서 “이슈, 비평 : 한 쪽은 칭찬, 한 쪽은 비판.. ○○○○를 보는 상반된 시선”이란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취재하고 보도한 자이다.
 (2) 미디어포커스는 일주일에 1회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사건에 대한 신문, 방송 등 여러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비평을 하는 이른바 매체비평프로그램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경위

(1) 원고 손○○와 김○○은 2006. 2. 17. 조선일보 경제면 1면에 “자장면보다 비싼 커피값 왜?”라는 제목으로 커피전문점의 커피가격을 분석하면서, ○○○○의 로고만을 표시하였고, 그 내용도 커피원가 중 재료값은 200원에서 4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료, 인테리어비, 인건비이며, 마진은 18%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또한 원고 김○○은 2006. 3. 23. 조선일보 경제면 1면에 “○○○○가 기가 막혀”라는 제목으로 한국 ○○○○가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미국의 ○○○○ 본사로 송금을 하여 2005년 한해에만 로열티로 45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2006년부터는 미국 본사에 배당을 하게 되어 60억 원을 배당할 예정이며, 투자에 비하여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커피 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를 실어 ○○○○를 비판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라 한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중앙일보라 한다)는 2006. 2. 21. “하루 5만 홀짝... 커피도 경제다”라는 제목으로 ○○○○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커피 전문점을 찾은 것이 비즈니스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의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를 홍보하였다.

(3) 위 (1), (2)항과 같이 원고 회사는 ○○○○를 비판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게재하고, 중앙일보는 ○○○○를 홍보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① 미디어오늘의 소외 김△△ 기자는 2006. 2. 28. “조선, 중앙 새 사업 때마다 ‘오비이락’”이라는 제목으로, ② 머니투데이의 소외 홍○○ 기자는 2006. 3. 23. “유력 일간지 기 싸움에 ○○○○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③ ○○○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소외 최○○은 2006. 3. 29. 한국일보 미디어비

평란에 “선거철 편향보도가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조선일보가 ○○○○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중앙일보는 ○○○○를 홍보하는 기사를 쓴 것은 ○○○○가 조선일보의 요구는 거절하고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 매장에 신문 무인판매대를 설치·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 김□□은 2006. 4. 1. 피고 회사의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 중 “이슈 & 비평” 코너에서 위와 같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기사 내용이 ○○○○의 중앙일보 무인판매대 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기사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1) 조선일보는 2006. 2.부터 ○○○○가 너무 비싸다거나, 로열티가 지나치게 많이 빠져 나간다 등의 비판적인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2006. 2. 17. “자장면보다 비싼 커피값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경제면 머리기사로 실었으며, 위 기사에서는 ○○○○의 로고가 찍힌 컵을 배경으로 커피의 원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2006. 3.에도 경제면 1면을 할애하여 “○○○○가 기가 막혀”라는 제목으로 ○○○○를 비판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앙일보는 2006. 2. 21. “하루 5만 홀짝... 커피도 경제다”라는 제목으로 ○○○○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홍보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실어서 ○○○○를 홍보하였다.

(2) 조선일보가 위와 같이 ○○○○를 연이어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가 조선일보의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제의를 거절하고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신문 무인판매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3) 언론사가 자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일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데, 이처럼 기업체가 광고나 협찬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사가 이에 대한 보복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일선 기자들도 이러한 광고나 협찬 따오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22, 2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와 원고 회사 사이에는 신문 무인판매대와 관련한 분쟁이 없었고, 원고 김○○, 손○○는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를 작성할 당시 원고 회사와 ○○○○ 사이의 신문 무인판매대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를 의도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회사와 ○○○○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원고 김○○, 손○○의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 보도 취지를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매체 간의 비평이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건전한 매체비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진실한 것이며 가사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이 ○○○○와 무인 가판대 설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를 비판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비중 있게 게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

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위 2003다521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이 사건 방송은 원고 회사와 중앙일보가 ○○○○에 관한 서로 상반된 시각의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배경을 밝힘으로써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을 제2 내지 4, 8, 17 내지 2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 민○○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 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소속의 소외 민○○ 기사는 2006. 2. 20. ○○○○ 본사의 홍보실 대리인 소외 이○○를 만나서 취재를 하였는데, 이○○는 민○○ 기자에게 최근 조선일보가 ○○○○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은 ○○○○가 중앙일보에게 무인판매대를 제공하였는데 조선일보의 요구는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였던 사실, ② 민○○는 피고 김□□이 이 사건 방송을 위하여 취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의 이○○를 취재하였던 정보를 건네준 사실, ③ 피고 김□□은 ○○○○의 양○○ 팀장과 이○○ 대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으나, 양○○과 이○○는 신세계 그룹과 원고 회사 사이의 관계를 우려해서 민○○ 기자에게 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진술하였던 사실, ④ 피고 김□□은 2006. 3. 27. 미디어오늘의 김△△ 기사를 찾아가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김△△ 기사는 피고 김□□에게 자신의 취재 메모를 넘겨주면서 자신이 중앙일보 관계자, ○○○○ 이○○ 대리를 만나서 직접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던 사실, ⑤ 피고 김□□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사 소속의 소외 현○○ 기사를 인터뷰하였는데, 현○○ 기사는 자신이 신세계 그룹 홍보실의 모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방송과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인받았다고 답변하였던 사실, ⑥ 피고 김□□은 원고 회사와 중앙일

보 측의 반론도 신기 위하여 원고 김○○, 손○○ 기자와의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절하였고,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팀장인 소외 이△△은 인터뷰에 응하여 이를 이 사건 방송에 보도하였던 사실, ⑦ 피고 김□□은 한국일보 미디어비평란에 칼럼을 기고한 최○○ 교수와의 인터뷰도 시도하였으나 최○○ 교수가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 김□□이 이 사건 방송을 위하여 취재할 당시 원고 회사와 ○○○○가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 김□□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를 취재하고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의 배경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다고 믿게 된 점, 이 사건 방송은 사실보도 프로그램이 아

닌 매체비평적 관점에서의 평가적 의견보도의 성격이 많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은 부족하더라도,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김 은 정
판사 정 경 희 □

판결 2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자 판결(2007가합13887)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 노동조합과 조합장 지○○(이하 원고들)이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난 2005. 7.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카메라 출동 - ○○○의 블랙리스트』 제하의 보도에서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가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 ○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지○○은 2002. 12.경 실시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직원들로 구성된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제8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3. 1. 1. 원고 조합의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조합과 ○○○가 2004. 12. 17.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자, 동아일보, 한국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등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도하였는데, 한겨레신문도 2005. 1. 7.자 신문에 원고 조합과 ○○○를 신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찬성의견과 함께 '○○○의 강도 높은 노조 길들이기로 원고 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원고 조합과 ○○○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동시에 게재하면서 2003. 8.경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의 대표자와 악수하는 사진(이하 '제1화면'이라 한다)을 같이 실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의 기자인 박○○는 ○○○가 그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조합원 총회 종합대책'(을1호증의 1, 2002. 3.경 실시된 원고 조합 총회를 앞두고 ○○○가 작성한 서류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을 그 성향에 따라 강성과 온건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파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과 '2003년도 기관별 승진현황'(을5호증의 6, 이 사건 선거 직후 이루어진 ○○○ 승진인사에 대한 분석 자료로, 각 지점별 원고 지○○의 득표율이 명시되어 있다) 및 '면담직원'(을1호증의 3,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한 직원들의 명단이다)이라는 각 문건을 입수하였고, 원고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과, ○○○의 전·현직 임원들 등을 인터뷰하였는데, ○○○의 전직 지점장은 "임금찬반투표 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현 조합원들 중 일부는 '○○○는 노조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섬 등 오지로 직원들을 발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피고 방송사는 2005. 7. 3. 9시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위 각 인터뷰와 함께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가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원고 조합 총회를 앞두고 ○○○ 노사협력팀이 만든 비밀문서에는 직원들을 그 성향에 따라 강성과 온건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파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 전직 지점장들은 선거나 임금협상 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았다, ○○○는 노조활동이 활발한 조합원들은 섬 등 오지로 보내어 특별관리하였다,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제1화면'(아래에 그

출처로 '○○○ 홈페이지' 라고 표시하였다)을 위 보도 내용 중 '임금협상 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신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화면(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면이다. 이하 '제2화면'이라 한다)을 위 보도 내용 중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각 사용하여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피고 신○○은 피고 방송사의 보도국장으로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편집권한을 갖는 자이다.

마. 인터넷 신문 '레이버 투데이(Labor Today)'는 2005. 10. 27. '○○○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 선거에도 ○○○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4,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가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원고들도 ○○○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이 부당하게 노무관리를 한 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그러한 ○○○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1, 2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의 부당한 노무관리에 공모하거나 협조하는 등으로 개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어 원고들

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지○○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피고 방송사는 별지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도는 ○○○가 그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원고 지○○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위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가 부당한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들의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 점, 제1화면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이미 한겨레신문이 원고 조합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도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화면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였던

점, 제2화면은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로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가 부당하게 관여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도 ○○○의 위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는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 지○○의 허락 없이 제1, 2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지○○의 초상권이라는 개인적인 이익과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16280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2화면은 원고 조합을 대표한 원고 지○○이 ○○○의 대표자와 악수를 하거나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장면으로 제1화면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것인 점, 제2화면은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중 ○○○와 원고 조합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피고들은 제1화면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였던 점, ○○○가 부당하게 관여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들이 제1, 2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 지○○의 얼굴을 공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지○○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 즉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임대호

판사 강은주



보도 내용의 진실 상당성 여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자 판결(2007가합663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박○○(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6. 11. 27. 자 동아일보의 A1면 『일심회 보고서 “靑 비서관 수차례 등장”』 및 A3면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일심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 공안당국은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손○○, 이○○ 등과 함께 1985.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공안 당국은 원고가 손 씨 등의 정체를 알면서도 이들에게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해 독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손○○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누설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보가 장○○의 문건 내용에 원고의 이름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 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2006. 11. 27.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원이 확보한 장○○의 대북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12. 11. ‘일심회의 포섭 대상에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위 인사들 중 내사 대상자는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사실, 국정원이 송치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검찰청이 보관 중인 장○○의 대북보고문건에는 원고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취재 및 기사 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이를 확신하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서 더 나아가 당시 정치권 등 세간에 나돌던 풍

문을 공안당국의 판단인 것처럼 기사내용에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권 : 2007가합6630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박 ○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 론 종 결 : 2007. 11. 28.

판 결 선 고 : 2007. 12. 26.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부터 2007.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A3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제목을 별지 3 기재 기사의 게재 당시 부제목 활자체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본문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기간 안에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A1면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이 사건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본문은 이 사건 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거쳐 2006. 2.경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발탁된 자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6. 11. 27. 동아일보의 A1면에 『일심회 보고서 “靑 비서관 수차례 등장”』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를, A3면에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나』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위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를 'A비서관'으로 표현하였으나, 기사의 내용 중에 A비서관의 이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위 'A비서관'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한바(따라서 피해자의 특정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편의상 A비서관으로 기재된 부분을 원고로 표현한다)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 공안당국은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손○○, 이○○ 등과 함께 1985.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공안 당국은 원고가 손 씨 등의 정체를 알면서도 이들에게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손○○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누설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보가 장○○의 문건 내용에 원고의 이름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는바,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

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설사 일부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과 기사 내용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체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 공안당국이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 장○○와 함께 체포된 손○○은 원고와 과거에 학생운동을 함께 한 사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손○○을 통하여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2)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발견된 문건에 청와대 비서관인 원고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장○○ 등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 등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도 목적 및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가) 인정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만복 국정원장은 2006. 11. 27.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원이 확보한 장○○의 대북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이 2006. 12. 8. 배포한 ‘일심회 간첩 사건 중간 수사 결과’에 의하면, 장○○, 손○○ 등 피의자 5명 전원을 오늘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진 일심회의 하부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국정원과 함께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06. 12. 11. ‘일심회의 포섭 대상에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위 인사들 중 내사 대상자는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사실, 국정원이 송치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검찰청이 보관 중인 장○○의 대북보고문건에는 원고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진실성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①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으며, ② 이에 공안당국이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1 내지 9,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을 감안하면, 위 ①, ②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상당성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조○○ 기자가 2006. 11. 25.경 일심회 간첩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 한 국정원 중간 간부로부터 장○○의 대북보고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관계자를 통하여 위 사실을 재차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상당성 판단의 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설사 위와 같은 취재 및 기사 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은 검찰로 넘겨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국정원 간부로부터 받은 제보를 검찰관계자에게 재차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쉽사리 이를 확신하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서 더 나아가 당시 정치권 등 세간에 나돌던 풍문을 공안당국의 판단인 것처럼 기사내용에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위 ①, ②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그 표현방법, 피고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①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으며, ② 이에 공안당국이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은 허위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방식과 그 비중 및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A3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제목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당시 부제목 활자체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본문 활자체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불법행위일인 2006.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수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간접강제금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 지>

-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1월 27일자 A1면 및 A3면에 『일심회 보고서, “청, 비서관 수차례 등장”』,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다』라는 제목으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씨가 국가정보원에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의 A비서관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고, 공안당국은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A비서관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는 요지가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비서관에 대한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판결 4

반론제도가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자 판결(2006나112566)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

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11월 23일 파기환송한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신청인)의 패

소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각각의 취소재판보도를 허용하며 여○○(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각 10,000,000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비롯한 4개 신문사가 2001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자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문보도 중 일부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중 일부 혐의사실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도내용 중 일부가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회에 증폭된 관심에 편승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

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 56~95면 참조, 2~3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13~27면 참조).

파기 환송된 사건을 담당할 2심 재판부는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며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나11256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항소인 : 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중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부사장 송 필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 광 명, 최 세 련,
이 춘 원, 김 형 근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7. 11.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
라.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1)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1면 상단부분에 별지 1-1 반론보도문을 제
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
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
로로 게재하고, (2)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
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1-2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
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제1심 판결 선
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
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
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
로 게재하고,

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
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소을
나 제4호증의 2, 소을나 제5호증의 2, 소을마 제2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

(1) 일간 「동아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동아
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
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직 폭력배

출신 기업가', '국제○○○과 두목 출신', '1992년 광주 지역 최대폭력조직인 국제○○○파를 이끌었다'고 소개하고, 신청인이 2000. 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면서 2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2000. 7.경에도 D증권사를 통해 ○○○전자와 ○○○인더스의 전환사채 3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10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청인을 통해 이용호의 정관계 배후 및 비호세력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가 약속어음 40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고,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이용호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진정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2) 월간 신동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신동아」 2001년 11월호에서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국제○○○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 당시 조 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 검찰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 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3) 중앙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을 '국제○○○파의 배후'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폭력조직 국제○○○파 두목으로 구속기소 됐었고, 오래전부터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두터운 인맥을 쌓아 온 이른바 '마당발'로서 이용호의 정·관계와 검찰 로비 창구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용호와 K상고 동창으로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홍○○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 의원이 신청인의 구속 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300억 원대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 원은 신청인이 이용호를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나.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1-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02. 2. 1. 신청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별지 2-1, 2, 3의 각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1일 3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2. 2. 9. 「동아일보」 제4면에 별지 2-1 반론보도문을, 「신동아」 2002년 3월호 220면에 별지 2-2 반론보도문을,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2. 2. 10. 「중앙일보」 제4면에 별지 2-3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2.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이 사건 각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명예와 신용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1-1, 2, 3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그에 해당하는 원보도가 없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룬다.

나. 당원의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확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나 제12호증의 1, 2, 3, 소을나 제13호증, 소을나 제14호증의 6, 7, 8, 13, 소을나 제15호증, 소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폭력조직인 광주 국제○○파의 두목급 수괴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조직인 광주 국제○○파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고문급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신청인은 "2000. 1.경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위 횡령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 5.경 심○○의 고소 및 강○○의 진정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20억 원을 주면 동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용호의 승낙을 얻은 다음, 이용호를 대리하여 심○○ 등과 화해 및 고소 취소 등을 알선한 결과, 심○○이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고소를 취소함과 아울러 강○○으로 하여금 진정을 취하하게 하자, 이용호에게, 이용호가 신청인에게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받아 이 중 15억 원은 심○○, 강○○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사무마를 위한 청탁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며, 2억

원은 신청인이 위 약속어음 결제일 이전에 이용호에게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할인 이자와 신청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이용호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 상계하겠다고 하여,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 40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아 할인받은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을 심○○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신청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0. 6. 중순경 이용호에게 사실은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용호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7.경 이용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실업이 300억 원 규모의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용호로부터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7. 25. 위 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사실, 전 한국○○거래소 사장인 이○○는 2002.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2000. 6.경 신청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실업이 ○○증권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령한 뒤, ○○증권 주식회사 사장인 박○○에게 주식회사 ○○실업의 전환사채 발행건을 잘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12. 24. 상고가 기각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2000. 1.경 자신으로부터 위 횡령 고소사건의 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대검찰청 직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91. 12.경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김·경 인사 5명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한 명인 부장검사 1명은 그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며, 다른 한 명인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최○○는 1993. 5. 16. 신청인의 권유로 슬롯머신 업소에 투자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 1992년 당시 수사 검사였던 홍○○ 전 한나라당 의원은 신청인에 대한 수사 당시, 전직 국회의원인 조○○를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하였고, 고위 검찰간부로부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당시의 신문기사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은 2000. 5.경 이용호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전 검찰총장인 김○○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평소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인적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힘쓰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도내용, 즉 신청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이용호가 고소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40억 원,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홍○○가 신청인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는 모두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이나 기타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거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없었다는 취지 및 신청인이 이용호나 ○○인더스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는 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밖에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 중 나머지 부분, 즉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신청인을 면회하거나 신청인이 출소 후 만난 검찰간부가 없었다거나, 한 ○○, 권○○, 김□□ 의원 등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로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단, 피신청인 중앙일보사는 신청인이 이용호와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하였다가 2001. 9. 26. 중앙일보 제2면에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는 요지의 정정 기사를 게재하였다) 지엽적인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그 행사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

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들이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그 광고료 상당액이 피신청인별로 각 1,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김 진 현

판사 이 우 철

〈별 지 3〉 취소재판 보도

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4.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이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9.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신동아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년 11월호에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권력과 폭력조직의 관계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사

는 본지 2002년 3월호에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10.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독일 판결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휴가 중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허가 없이 공개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조문 : 기본법 제5조;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0조;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연방대법원 2007년 7월 3일자 판결 - VI ZR 164/06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요지

사회적 저명인사의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 여러 단계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가 의도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여자친구와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세계적 축구골키퍼인 올리버 칸의 사진 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사진공개에 대한 부작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소를 인용하였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허용한 상고심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축구 선수이다. 피고는 "Frau im Spiegel"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이 잡지의 2005년 7월 21일자 2005/30호에는 원고가 St. Tropez의 산책로에서 그의 여자친구 V.K.와 함께 산책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사진 아래에는 원고가 여자친구와 열애에 빠져 같이 있는 장면을 들켰다는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다. 또한 원고가 그로부터 일주일 전 자신의 가족(당시의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Sardinien에서 미리 계획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이유

I.

[3]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이른바 사회적으로 절대적 유명인사(absolute Person der Zeitgeschichte)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개된 사진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시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의 무단공개로 원고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이 보장하고 있는 보호 가치 있는 사생활 영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구속된다는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인이 다수

인 한가운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개적 장소에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만 사진공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휴가생활을 담고 있는 사진정보에 대해 피고가 발행한 잡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단순한 소일거리에 해당하는 정도의 미미한 이익만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의 효과적인 사생활 보호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보도용으로 사진이 촬영되는 저명인사들의 경우 종종 그러한 성가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보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2004년 6월 24일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사진공개로 인하여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II.

[4] 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결과적으로 상고심까지 유지되었다.

[5] 1. 원고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수인 가운데 한명으로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사진이 찍혔는지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한 하급심 판결재판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언급한 한적한 장소인지의 여부를 여러 재판에서 고려해왔다. 하지만 원고는 좀 더 진전된 기준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문제가 된 사진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6] 2. a)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인물 사진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의 사진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또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이 의미하는 일상적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허가 없이 그의 사진공개를 수인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경우 사진공개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러한 사진의 공개는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혔는지 아닌지 그 장소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허용되지 아니한다(재판부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대해서는 AFP 2007 S. 121 ff. und S. 208 ff.).

[7] b) 사진이 시사적 사건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상생활(Zeitgeschehen) 개념이 중요하다. 이 개념은 좁은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의 정보욕구와 관련하여 이 개념은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사건만이 아닌,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일반적 의문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 또는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답소도 의사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여는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사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진묘사행위가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게 될 때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보도가 항상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일상적 보도에서 공공의 정당한 정보이익에 대한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는 개별사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8] c) 출판의 자유와 의사형성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출판이 법적 한도 내에서 충분한 재량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출판은 대중매체로서 가지는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무엇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공익적 사안인

지 의사형성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6월 24일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는 출판의 자유의 의미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연관되어 강조된 바 있다. 출판이 민주국가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인들이 가지는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출판의 임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일상생활(Zeitgeschichte)의 개념과 일치한다. 재판소가 이러한 권리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한 이러한 제한은 명백하게 출판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공공의 알 권리 사이의 비교형량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보호로 인한 비교형량 등과 관련된다. 보도내용으로부터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을 대중매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지라도 출판물은 보도내용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다.

[9] d) 따라서 공공의 알 권리와 보도된 사람의 사생활 보호이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형량을 위해 한 정보가치의 의미는 재판부가 이전의 판결에서 강조하여 왔다(BGHZ 151 S. 26 [30]; VersR 2004 S. 522[523]; NJW 2007 S. 1977 [1979]). 공공을 위한 정보 가치가 높을수록 알려야 할 정보 가치는 커지게 되어 개인적 보호이익은 공공의 정보요구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일반을 위한 정보 가치가 적을수록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이와는 반대로 순수한 대화에 대해 독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비해 작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2006년 8월 21일자 결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즉 이러한 사례에서는 높은 지명도를 가진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견해로는 이러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2004년 6월 24일자 판결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적 유명인사

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도됨으로 인하여 객관적 사실에 대한 토론에 기여하는지 아닌지는 무시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도의 정보가치에 따라서 관련자의 지명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 가치에 대한 평가, 특히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상적 시사내용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출판의 본연적 임무인 의사형성임무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익형량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기본법 제5조를 고려하면서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 구속효에 반대되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서두에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독립된 공간에서의 원하지 않는 사진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의 보호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하지만 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라는 이익을 형량하게 될 때 공공을 위한 정보가치가 더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15일에 대체로 이러한 기본원칙에 상응하는 결정을 하였다(BVerfG, AfP 2006 S. 354 ff. = NJW 2006 S. 2835).

[10] 따라서 사진게재의 정보가치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을 하게 될 경우, 본 사건과 같이 사진설명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 사진설명은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NJW 2004 S. 2647[2650], Rdn. 64; AfP 2007 S. 208 ff.).

[11] 2. 본 사건은 이러한 기본원칙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형량하면서 해결되어야 한다.

[12] 문제가 된 사진은 St. Tropez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일상 사람들”(Leute aktuell)이라는 보도의 일부분이다. 이 출판물이 이 사진을 기본적으로 보도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더라도 출판은 공공의 의사형성을

위해 새롭고 진실한 정보의 보도여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중요성 없는 사적 대화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결국 사진 촬영된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사진게재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다. 사진 촬영된 사람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그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이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예술저작권법 제22조).

[13] 원고와 여자친구가 St. Tropez에 체류하고 있다는 보도는 일반의 공공이익이라는 어떠한 기준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EGMR, NJW 2004 S. 2647 [2649

f.] Rdn. 60 ff.). 그리고 이 사진보도는 일상 시사적 내용과도 관련성이 없다. 이는 문제가 된 사진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사진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휴가 중의 원고와 여자친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진보도는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원고와 같이 사진촬영을 당한 사람은 허가 없는 사진공개를 통한 인격권 침해를 수인하지 않아야 한다.

출 처 : AfP 38. Jahrgang Heft 5 - 2007 SS. 475~477.

번 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본 판결 1

**민주당 소속 의원인 원고가 우정(郵政)민영화 법안의
중의원 통과 직후에 동 법안 찬성파 의원과 동 법안 통과
「축하회」에 참가했다는 내용 등을 적시한 주간지의 기사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중요한 전제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평가적인 기재를 하고 있는 점에서 공정한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자료 500만 엔의 지불과
전국지에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한 사례**

원 고 : 筒井信隆

피 고 : 주식회사 小學館, 동 대표취체역 相賀昌宏 외 3명
도쿄지법 2005(7) 제15213호, 사죄광고 등 청구사건
2007. 1. 17 민사 제34부 판결, 일부 인용·항소
2006년 11월 8일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5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9월 2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은 별지 2의 제2기재의 사죄광고를 동 2의 제1기

재의 요령으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에 대한 다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夏川二郎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 등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9월 2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등은 요미우리 신문 조간 전국판에 별지 1의 제2기재의 사죄광고를 동 1의 제1기재의 요령으로 1회 게재하라.

제2 사안의 개요

1. 사안의 요지

피고 春野一郎, 동 夏川二郎 및 동 秋山二郎 등은 동 주식회사 小學館 발행의 주간지 「주간ポスト」(포스트)의 편집관계자로, 동지 2005년 7월 22일호에 『고이즈미 수상 「해산」 결의(決意)!, 「이로써 자민(自民)도 민주도 깨지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기사 속에 원고에 관한 허위의 기재가 있으며, 이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피고 등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했다.

2.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 등을 ()안에 표시하며, 직전에 표시한 증거의 쪽 번호를 []안에 표시한다.)

(1) 당사자

① 원고

원고는 민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이며, 주간지 발매 당시 의원(議院) 운영위원회의 수석이사였다. 동년 9월 20일부터 민주당 상임간사, 동월 22일부터는 결산행정감시 상임위원장으로 있었다(다툼이 없는 사실).

② 피고

Ⓐ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이하 「피고 小學館」으로 한다)은 잡지 및 서적 등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다툼이 없는 사실).

Ⓑ 피고 春野一郎(이하 「피고 春野」로 한다)는 피고 小學館이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포스트」의 편집장, 피고 夏川二郎(이하 「피고 夏川」으로 한다)은 동 주간지의 취재기자, 피고 秋山二郎(이하 「피고 秋山」으로 한다)은 동 주간지의 데스크이다(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의 전 취지).

(2) 기사의 게재

피고 小學館은 「주간포스트」 2005년 7월 22일호(이하 「본건 주간지」로 한다)에서의 『고이즈미 수상 「해산」 결의(決意)!, 「이로써 자민도 민주도 깨지다』라는 제하의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에서 『채결(採決)전부터 「축하회」 의논』이라는 소제목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장(이하 「본건 문장」으로 한다)을 게재하여 동월 9일에 발매했다(다툼이 없는 사실).

“채결 다음날 자민당 반대파가 집결하는 한편에서는 흥미로운 회합이 열리고 있었다. 장소는 도쿄시내 平河町の 越後요정. 그곳에는 川崎二郎 중의원 운영위원장, 민주당의 筒井信隆씨 등 어제까지 국회에서 날을 세우고 싸우던 자민당과 민주당의 운영위원회

이사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법안 중의원 통과에 「축하회」였다.

「이날의 회합은 약 1주일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5일 체결』로 여·야당이 합의한 시점에서, 민주당 쪽이 위로회를 제의해왔다, 「자민당 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뇌부가 綿貫씨, 龜井씨 등과 접촉, 공투(共闘)를 맺어가면서, 국회 대책의 현장에서는 역으로 자민당의 민영화 추진과와의 담합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이 『민주당도 깨진다』고 정계개편에 자신을 표명한 것은, 해산으로 자민당 반대파를 제명하는 한편으로, 민주당에 손을 뻗쳐 친(親)고이즈미 세력을 빼돌릴 공작을 벌여왔기 때문이 아닐까」”

제3 당 법원의 판단

1. 사실의 인정

전기 제2의 2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더해,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 등을 ()안에 표시하며, 직전에 표시한 증거의 쪽 번호 등을 □안에 표시한다. 이하 같다).

(1) 본건 회합 개최의 경위 등

① 원고의 입장

원고는 민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이며, 본건 주간지 발매 당시 중의원 운영위원회 수석이사로서 동당의 방침대로 우정민영화에는 반대입장이었다.

② 우정민영화 법안을 둘러싼 중의원의 심의상황 등 동 법안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동년 6월경에는 여당인 자민당 내에도 반대하는 의원이 상당수 있어 성립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서, 심의상황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동년 7월 6일 서밋(summit·주요국 정상회담)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자민당과 총

리관저 측은 총리가 귀국할 때까지 중의원 본회의가 열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출발 전에 가결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의 저지를 위해 체결일정을 가급적 지연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향을 갖고 있었다. 또 원고는 동 법안이 중의원에서 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른바 다수와 공작 결과, 부결될 공산이 있으면 체결일정을 앞당기고, 가결될 공산이 크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체결일을 늦춘다는 방침이었는데, 늦추기 위한 대책의 성공여부는 동월말의 시점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5년 6월 30일 동 법안의 중의원 우정민영화 특별위원회에서의 체결예정일이 7월 4일로 결정되었다.

③ 본건 회합의 개최 경위

山口의원은 2005년 6월경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議院) 운영위원회 동당 수석이사로서, 동 법안에 반대하는 자기의 입장과 수석이사의 직무를 양립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동 이사직의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원고는 여당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과 같은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山口의원을 위로하는 한편 동 법안에 대한 반대분위기를 만들어 낼 의도 하에 동 의원의 위로회 개최에 착안, 동년 7월 1일 민주당의 池田국회대책부위원장, 牧野의원과 공동으로 그 취지를 山口의원을 대신하여 자민당의 수석이사에게 취임한 鈴木恒夫의원(이하 「鈴木의원」으로 한다)에게 제안, 개최일을 동월 7일, 장소는 의원들이 잘 이용하는 越後요정으로 결정했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개최일이 동월 6일로 변경되었다.

동월 5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가결되도록 되어있었으나 원고는 참의원에서의 심의 및 체결이 그 이후로 잡혀 있다는 점에서 본건 회합을 개최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건 회합은 동월 6일 예정대로 개최되어, 동 법안

에 반대한 鈴木의원과 원고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 그리고 이에 찬성한 자민당 및 공명당의 의원 3명이 출석했다. 회비는 山口의원을 제외하고 각자 부담으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 몫으로 5만 엔을 원고가 부담했으며, 나머지 7만여 엔을 자민당의 川崎二郎의원 운영위원장이 부담했다.

(2) 「주간포스트」에 관하여

① 「주간포스트」는 1969년에 창간된 전국 주간지로 2004년의 발행부수는 약 80만 부, 2005년의 발매부수는 44만 8291부.

② 「주간포스트」 편집부는 편집장과 3 ~ 4명의 부편집장, 취재 및 기사작성의 지휘 관리를 하는 데스크 그리고 수 명의 편집부원(편집자)이 배속되어있다. 데스크는 편집자로부터 취재결과를 보고받고, 편집장, 부편집장과 협의를 거쳐 편집자를 지휘하면서 취재 및 기사작성을 관리한다. 기사는 편집자나 편집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라이터(앵커라고 불린다)가 집필한다. 기사내용과 게재는 최종적으로 편집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③ 보도기사는 플랜회의에서 기획을 검토한 후 데스크가 기획을 선별, 데스크회의(편집장, 부편집장, 데스크가 참가)에 제출하여 테마가 결정되면 편집자에게 취재를 지시한다. 편집자는 스스로 또는 외부의 취재기자에 의뢰하거나 지시하여 취재를 하며, 데스크 및 편집장의 확인을 거쳐 입고(入稿)한다.

(3) 본건 기사의 기획 등

① 피고 秋山은 2005년 7월 1일 언론인 冬木으로부터 동월 6일 여·야당의 의원 운영위원회가 연회(앞의 「본건 회합」을 지칭)를 예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월 4일의 기획회의에 이 정보를 내용으로 한 기사의 기획을 제출, 편집장으로부터 정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② 피고 秋山은, 冬木으로부터 동월 5일 山口의원 의 위로회라는 명목으로 예정대로 6일에 열리며, 회

합을 주도한 사람이 원고이고, 장소는 아카사카(赤坂)의 越後요정이라는 정보를 얻고는, 편집자에게 본건 회합의 취재와 사진촬영을 지시했다. 또한 피고 秋山은 동월 7일 부하인 北野편집자를 통해, 피고 夏川에게 원고 본인 및 鈴木의원에 대한 취재를 지시했다.

(4) 본건 기사에 관한 취재경위

① 본건 회합의 취재

「주간포스트」의 사진기자는 2005년 7월 6일 오후 9시경까지 본건 회합의 개최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했으며, 참가하는 의원들의 사진 및 연회장소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이 장소에 국무대신이 참가했음이 확인되어 편집부에 보고되었다.

② 원고 본인 및 鈴木의원에 대한 취재

피고 夏川은 2005년 7월 7일 의원회관 내 원고의 사무실과 鈴木의원 사무실에 각각 전화를 걸어 취재를 하려 했으나, 부재중이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피고 夏川은 전화에 응대한 鈴木의원의 비서에게 질문, 본건 회합이 의원 운영위원회 수석기사를 사임한 山口의원에 대한 위로회였다는 것, 정국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는 것, 개최일은 山口의원 사임한 직후에 결정됐다는 것, 참석자는 여당 4명, 민주당 의원 4명이였다는 것, 개최장소에 나타난 국무대신은 본건 회합과 관계가 없다는 것 등을 들은 후, 그 내용을 北野편집장에게 보고하고 데이터원고를 작성, 전자메일로 송신했다.

(5) 본건 기사의 편집, 발행, 발매

① 피고 春野 및 秋山 등은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원고로부터의 연락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없었다. 그런데 위로회에 대한 원고의 명목이 무엇이든, 동 법안의 체결을 예측하고 연회를 주선하여 자민당 관계자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밀회로, 민주당 집행부에 대한 배신행위임에는 틀림

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기사를 집필, 교정까지 끝냈다.

② 본건 기사가 게재된 「주간포스트」 7월 22일호는 동월 9일 피고 小學館으로부터 가두판매되었다.

(6) 본건 기사 발매 후의 사정

① 7월 14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피고 秋山이 본건 기사내용의 의도 등을 원고에게 설명했으나 이해를 얻지 못했다.

② 동월 17일 오후 원고의 사무실에 「정치인의 일구이언을 우려하는 시민으로부터」라는 명의로 「속임수의 가면이 드러난 筒井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이 팩스로 전송됐다. 이 글은 「주간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원고가 동 법안이 중의원에서 채택된 다음 날, 자민당의 민영화 추진과 축하회를 열어 축배를 들어, 민영화 추진의 담합을 거듭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구이언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표리부동한 의원을 우리들의 대표로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즉각 사퇴해야한다!」 내용이였다.

③ 9월 11일에는 제44회 중의원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원고는 4선을 이루었다. 또한 山口의원은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채 입후보, 당선된 후 동당을 탈당했다.

2. 본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1) 본건 기사의 해석

① 전기 제2의 2(2)와 같이 「채결 전부터 ‘축하회’를 의논」이라는 소재목 하에 「그 곳에는 川己二郎중의원 운영위원장, 민주당의 筒井信隆씨 등 전일까지 국회에서 서로 대립했던 자민당과 민주당의 운영위 이사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놀랍게도 법안 중의원 통과와 축하회였다」는 부분과 「축하회」가 법안 통과와 종료를 기념하는 연회를 통상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 법안의 가결을 기념하는 연회

라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은 동 법안에 반대 입장인 민주당에 소속한 원고가 동 법안이 가결된 것을 기념하는 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용(受容)이라고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수뇌부가 綿貫씨나 龜井씨와 접촉, 공동투쟁을 맺으면서, 국회대책의 현장에서는 역으로 자민당의 민영화 추진과와의 담합을 거듭해왔다」는 부분도, 상기의 「축하회」라는 부분에 이어, 국회대책의 현장에 있는 원고가 소속 정당의 방침에 반해 자민당의 추진과와 부정한 담합을 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는 기재(記載)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이에 대해 피고들은 「축하회」나 「담합」이라는 표현은 본건 회합에 대한 평가, 논평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회합의 취지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되는 바, 회합의 취지는 회합의 주최자나 참석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사실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2)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영향

본건 기사는, 원고가 동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찬성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해 자신의 정치이념을 개진하고, 이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 정치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기사의 적시사실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진실성, 상당성의 유무에 대하여

(1) 진실성에 관한 판단

상기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본건 회합이 동 법안의 가결을 기념하는 취지의 회합이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원고가 그러한 의도를 갖

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없다. 그리고 본건 기사는 본건 회합의 취지에 관해, 단순히 위로회라고 기재했을 뿐, 자민당의원이면서 동 법안에 반대한 鈴木의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동 의원을 포함하여 동 법안에 반대한 출석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일체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회합의 평가를 좌우할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독자의 평가를 오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상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 본인의 사무실에 대한 한 번의 전화로 동인에 대한 취재를 시도한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국은 취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석자에게도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편 본건 회합에 출석한 鈴木의원의 비서에 대한 취재에 의해 본건 회합의 목적이 수석이사를 사직하고 동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자민당의 山口의원의 위로회였으며, 정국에 관한 살벌한 대화는 일체 없었다는 정보를 얻어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있어서는, 본건 회합이 상기 (2)와 같은 목적의 것이었으며, 상기 특별한 사정의 존재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취재에 의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건 기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피고들에게 있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자료 혹은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들의 주장은 전기 제2의 3(2)에서의 주장으로 보아, 상기의 鈴木의원의 비서로부터의 취재내용을 가미(加味)했다고 하더라도 본건 회합의 취지는 동 법안의 중의원 통과와 축하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평가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일반 독자가 결정할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를 포함한 본건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상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 일반인이 그러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

으며, 만일 피고들의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상기 鈴木의원 비서로부터의 취재내용까지도 밝힌 다음 일반 독자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이며, 본건 기사는 본건 회합의 평가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제사실의 기재가 없어, 피고들이 내린 평가에 따른 사실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정한 언론활동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4. 책임 원인에 대한 요약

(1) 이상에 의하면, 본건 기사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이에 대해 기사내용이 공익성이 있고, 또한 공익목적을 가지고 게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를 본건 주간에 게재하여 발행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피고 秋山은 본건 기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본건 문장을 포함한 본건 기사의 문장에 붉은 글씨로 교정을 가했으며, 피고 春野도 편집장으로서 같은 관여를 했음이 인정되어, 피고 小學館은 본건 기사를 포함한 본건 주간지를 발행, 발매했으므로 이들 피고는 각자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구성은 상기와 같이 본건 기사를 집필, 편집, 발행했다는 데 있는 바, 피고 夏川은 北野편집자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데 불과하며, 집필, 편집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夏川은 고작 본건 불법행위를 방조한 가능성이 있다는데 불과하며, 본건 기사의 내용이 본건 문장과 같이 될 것이란 것을 예견했거나 예견이 가능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夏川에 대해서는 본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더구나 피고 등은, 원고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대책부위원장, 중의원 운영위원회 수석이사라는 공적지위에 있고, 그 활동이 널리 국민들의 비판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본건 기사내용이 설령 행동의 목적, 평가나 의미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인식과 다르다고 해도 수인(受忍) 한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구성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건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공익을 도모할 목적 아래 본건 기사가 게재된 것이라고 인정되나, 이 주장은 결국 피고들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5.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1)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본건 기사로 발생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의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해 검토한다. 원고는 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운영위원회 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해왔고, 그런 사실을 지지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었는데, 본건 기사에 의해 찬성파로 전향한 것 같은 행동을 취했으며, 동 법안에 반대의 의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수뇌부에 반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인상을 일반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에게 있어, 정치신조의 여하는 유권자로부터의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정치생명에도 관련되는 바, 본건 기사가 주제로 한 동 법안은 본건 기사 발행 당시 중요한 정치과제였고, 동 법안이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가결이나 부결 여하에 따라서는 중의원의 해산,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므로, 이러한 중요한 정치과제에 대한

언행불일치를 의심받게끔 하는 본건 기사에 의해 정치신조의 일관성에 의문이 생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은 용이하게 추인(推認)된다.

실제로 원고에 대해서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팩스 문서가 송신되어 오기도 하고, 다른 의원이 원고의 입장에 대해 석명(釋明)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었다. 따라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현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업무방해내용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건 문장의 게재에 의해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상기 (1)에서 실시한 사정에 더해, 「주간포스트」가 전국을 대상으로 발매되는 주간지라는 사실 및 그 발행부수에서 보면 본건 기사에 의한 영향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건 기사 발행 후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되었고, 또한 사죄광고의 게재를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정도로 위사(慰謝)된다고 보아짐으로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500만 엔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사죄광고의 게재에 대하여

상기 (2)에 더해 원고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에 의한 언설(言說)의 중대성, 본건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축하회」라는 표현에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 반성과 사죄의 태도가 불충분하고, 본건 기사가 전국에 유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대로 오미우리신문 전국판에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것도 상당하다.

또한 앞에서와 같이, 피고 夏川의 불법행위책임이
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광고자체 및 문자 크기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사죄광
고의 게재요령 및 그 내용은 별지2·제2의 한도 내

에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47호 (2007. 10. 15.) pp. 276~284.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일본 판결 2

주간지에 원고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동시에 신문광고 및 전동차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안에 당해 주간지의 광고를 게재한 출판사 등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게재가 인정된 사례

원 고 : 주식회사 넥서스(ネクサス), 대표이사 池谷誠一
피 고 : 주식회사 新潮社, 대표이사 佐藤隆信 외 3명
도쿄지법 2002(7) 제25138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2005. 4. 19. 민사 제45부 판결, 일부인용·항소
2005년 1월 14일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55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2년 9월 1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 新潮社는 동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週刊新潮」에 별지1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5,5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2년 9월 1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新潮社는 동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週刊新潮」에 별지2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 신조사는 별지3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및 일

본경제신문의 각 전국판 조간 사회면에 각 1회 게재 하라.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 주식회사 신조사(이하 「피고회사」로 한다)가 발행하는 주간지에 게재한 기사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하는 한편, 상기 기사의 편집발행인인 피고 Y1, 상기 기사를 집필한 피고 Y2 및 상기 기사의 근본이 되는 취재를 한 피고 Y3에 대해 피고회사와의 공동 불법행위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쟁점1에 관하여

(1) 본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① 본건 기사는 3쪽의 기사이며, 첫 페이지에는 약 4분의 1쪽 공간을 사용하여 오른쪽 상단에 독자의 눈길을 끄는 형태로 「러시아에서 미술품 『절도』 뒤틀린 요구 의혹, 『무엇이든 감정단(鑑定團)』 재하청프로의 스캔들투성이」라는 본건 제목이 붙여지고, 다시 같은 페이지의 왼쪽 구석 약 4분의 1쪽 공간에 「텔레비전 업계에서 트러블의 온상이 돼있는 것이 프로젝트 제작 프로덕션에 대한 “재하청”의 문제이다. 텔레비도 교의 『개운(開運)! 무엇이든 감정단』은 평균시청률 15% 전후를 자랑하는 인기프로이나, 실제의 제작은 하청프로. 이곳에서도 표면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 역시 스캔들투성이다. 프로출연을 둘러싼 “뒤틀린 요구”로 시작되어, 마침내는 러시아에서 미술품 절도 의혹까지 고발되었다」는 리드부분을 배치하고, 기사 본문에서는 출장감정에 뒤따르는 뒤틀린 요구 의혹, 러시아에 있어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의 순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원고는 본건 기사의 게재에 대해, 본건 제목부분, 리드부분 및 기사본문, 나아가서는 본건 주간지 안의 본건 기사 차례부분의 모두가 별개 독립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 행위는 사실적시의 내용 및 표현매체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건 기사는 본건 주간지에 차례를 붙여 게재되어, 본건 제목부분, 리드부분 및 기사본문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건 기사가 뒤틀린 요구 의혹 및 미술품 절도 의혹의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논하기로 한다.

② 뒤틀린 요구 의혹에 관하여

(가) 우선 본건 기사 제목 중 「무엇이든 『감정단(鑑定團)』 재하청프로」는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덕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뒤틀린 요구 의혹」이라는 문언(文言)이 범죄인 「절도」의 다음에 기재된 점이라든가 「스캔들투성이」라는 문언과 더불어, 일반 독자에게 무엇이든 감정단의 작성과 관계가 있는 프로덕션이 표면에 내놓을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의 지불을 요구한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 또한 리드부분에 있어서는, 본건 프로의 프로젝트 제작 프로덕션에 대한 재하청이 트러블의 온상이 되어 스캔들투성이가 되었다는 평가를 덧붙여,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프로출연을 둘러싸고 원고가 「뒤틀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함으로써 독자의 전기와 같은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다) ② 그리고 기사본문에 있어서는, 모두에서 본건 프로젝트 제작 프로덕션이 원고임을 실명으로 밝히고, 「인기프로임을 방패로 하청회사의 횡포가 횡행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고 문제제기를 한 다음, 본건 출장감정에 응모한 본건 이벤트의 실행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① 무료로 프로출연이 된다고 생각

했는데 150만 엔이나 쥐야한다고 해서 놀랐다 ② 제작협력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이벤트와 함께 스케줄을 짰는데, 본건 출장감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③ 출장감정의 수록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상가의 상인들에게서 금전을 받았다 ④ 원고는 처음부터 제작협력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⑤ 제작협력금의 불입선은 텔레비 도쿄로 되어있으나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아 뒷돈이 아닌지 의심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이어 텔레비 도쿄는 하청회사인 원고에게 본건 프로의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감정의 개최비용 전부를 지역에 부담시킬 뿐 아니라 제작협력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피고의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본문은, 본건 제목 및 리드부분에서 말하는 뒷돈이란 제작협력금임을 알리면서 원고가 출연자 측의 약점을 이용,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제작협력금을 청구하면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금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⑥ 또한 기사본문은, 제작협력금의 청구취지가 본건 프로 내에서 시청자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하지 않는 원고 및 텔레비 도쿄의 행위는 사기적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로 인해 텔레비 도쿄의 상기설명은 불합리하다는 인상을 주고 더욱 더 제작협력금의 청구가 자의적이며, 석연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한 부분을 매듭짓고 있다.

(라) 이상에 의하면 본건 기사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출장감정에 응모한 지역단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 약점을 잡아 원래 청구할 이유가 없고, 석연치 않은 표면에 내세울 수 없는 금전을 청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텔레비 프로의 제작회사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마) ㉔ 피고들은 「뒷돈」이라는 말은, 반드시 범죄에 직결되는 금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당 법원도 상기와 같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금전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회사인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하는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⑥ 또한 피고들은, 본문기사의 내용이 하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내용으로 보아 비판의 대상은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③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하여

(가) 본건 제목 및 리드부분은, 본건 프로의 제작프로덕션이 뒷돈 요구 의혹으로 스캔들투성이라는 기사처럼 러시아 미술품의 절도 의혹도 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주고 있음을 기사화하고 있다.

(나) ㉔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한 기사본문은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한 기사에 이어 「더욱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프로제작을 둘러싼 트러블은 이것만이 아니다. 마침내 해외로oke와 관련한 미술품의 절도 의혹까지 밝혀졌다」는 문제제기를 한 후 본건 로케반의 코디네이터역인 M씨의 고발형식으로 그의 발언을 상세하게 인용했다.

⑥ 본건 기사는 이어 절도 의혹을 부정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발언과 함께 절도 의혹을 부정하는 관계자들의 발언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코멘트도 게재했다.

(다) 이와 같이 본건 기사는, 원고가 본건 로케 때 감정사의 한 사람이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그 소장품인 「根付」(ねつけ·江戸(에도)시대에 남자가 담배쌈지나 지갑의 끈 끝에 매달아 허리띠에 질러서 빠지지 않게 상아·산호 등으로 만든 세공품)를 절취했다는 M씨의 발언을 상세히 인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이를 부정하는 관계자의 발언의 신빙성에 관해 부정적인 논평을 가함으로써, 본건 제목 및 리드부분의 기재와 함께 일반 독자에게 원고의 로케에 참가한 감정사의 한 사람이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根付」를 절도한 의혹(객관적 혐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본건 프로의 제작프로덕션이 스캔들투성이, 텔레비 도쿄는 하청프로의 감정까지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는 등 프로제작에 그러한 감정사를 참여시키고 있는 원고를 비판하는 것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2) 본건 광고에 관하여

본건 광고 중 「『무엇이든 감정단』 재하청프로」란,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덕션, 즉 원고를 의미하며, 「스캔들투성이」의 내용으로 「러시아에서 미술품 『절도』」 및 「뒷돈요구」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뒷돈 요구 의혹」이라는 문언은, 그 앞에 범죄인 「절도」가 기재되어있는 점 그리고 스캔들의 내용으로 예시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적어도 표면화 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의 지불을 요구한 의혹이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건 광고에는 원고의 명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건 프로 종료 시에 「제작 NEXUS」로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됨으로써, 일반 시청자가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덕션이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가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출장감정에 참여한 지역관계자까지도 포함하여 본건 프로에 출연한 다수의 사람들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계자 등에게는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 광고는 원고와 그 관계자들이 러시아에서 미술품을 절도한 의혹이 있다는 것과 공식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의 지불을 요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광고는 그 자체가 원

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2. 쟁점2에 관하여

(1)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하여

각 증거를 통한 프로제작협력금의 시스템에 의하면, 제작협력금은 지역단체의 주최에 의한 출장감정 때 제작비용 일부의 부담을 지역단체에 요구하는 것으로, 텔레비 도쿄와 원고 간에 텔레비 도쿄의 구좌에 불입하기로 하고, 그 곳에서 텔레비 도쿄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양해되어있다. 원고는 지역단체로부터 출장감정 응모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출장감정의 길」이라는 매뉴얼을 교부하고 그 취지와 금액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얻은 다음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래 청구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데 관해서는 「출장감정의 길」에도 기재되어 있고, 텔레비 도쿄가 청구서를 내서 텔레비 도쿄의 구좌에 불입되는 것이므로 석연치 않은 금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본건 출장감정은 지역주최형(型)이기 때문에 제작협력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원고는 본건 이벤트의 실시주체로부터 본건 출장감정 응모에 관한 문의가 있는 단계에서부터 「출장감정의 길」을 송부하고, 제작협력금이 소요된다는 설명과 함께 양해를 얻고 수락을 하는 것이다. 제작협력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실행위원회 멤버에게도 전해져 양해되고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출장감정 뿐 아니라 스트리트·갤러리전(展) 및 다도회(茶道會) 등의 이벤트를 포함한 총액 350만 엔의 비용을, 출장감정의 입장정리권(券)과 다도회권을 세트에 배포, 찬조금을 모금하여 확보한다는 협의도 가졌다.

또한 출장감정에는 지역주최형 외에 원고가 기획·주최하는 원고주최형도 있는데, 이 경우 제작협력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본건 출장감정에 있어서도 원고는 제작협력금의 필요성과 금액에 대해 사전에 설명

하고 양해를 얻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조차 없이 스케줄이 결정된 단계에서 지역의 약점을 노려 제작협력금을 요구하거나 상대에 따라 청구의 유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었음이 명백하다. 이상의 인정에 의해,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한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에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하여

각 증거에 의하면, 러시아 공항에서의 C와 세관원 간의 트러블은, C가 러시아 입국 때 소지한 일본 돈의 신고를 태만히 한데서 생긴 일에 불과하며, C는 일본 돈을 달러로 바꾸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N4와 세관원과의 트러블도 N4가 출국 시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액과 신고액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N4는 세관원에게 수하물을 전부 보여주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 때 N4가 소지한 키홀더를 세관원이 갖고 싶어하여 이를 건네주었을 뿐이며, 「根付」의 절도 의혹과 관련시킬 사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본건 미술관 자체가 그 수장품이 절도되었음을 부인했고, 러시아 당국도 원고관계자의 신병구속이 없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해 B는, C가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훔친 「根付」를 N에게 휴대시켰고, 이것이 세관원에게 발각되어 몰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언을 하고 있으나, B는 C가 「根付」를 훔치는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모스크바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마친 B의 위치와 N4가 위치한 세관카운터와의 거리는 약 20m 떨어져 있어, B는 N4와 세관원 간의 주고 받는 현장의 일부나 전부를 목격한 것도 아니며, 관계자의 사후의 언동에서 절도 의혹을 추측한데 불과한 것으로, 그 추측에는 아무런 합리성이나 신용성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동인의 진술이나 증언은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본건 미술관의 학예원, 감정사, 원고

의 스태프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根付」의 조사가 진행되어 「根付」의 절도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며, 세관에서 「根付」의 절도가 발각되었으면서 그대로 출국이 허용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이미 인정한 객관적 사실에도 여러 가지로 반하고 있어 도저히 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 의하면 본건 기사가 적시하는, 본건 로케에 참가한 감정사의 한사람이 러시아의 미술관에서 수장품을 절취한 의혹(객관적 혐의)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소괄(小括)

이상과 같이 본건 기사가 적시하는 사실은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지의 여부, 본건 기사를 게재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피고들의 진실성의 향변은 인정될 수 없다.

3. 쟁점3에 관하여

(1) 피고들의 본건 기사에 관한 취재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שאַרף).

(2) 뒷돈 의혹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①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Y2는 F, 지역관계자, 텔레비 도쿄의 T2 및 G에 대한 취재결과를 근거로, 주로 F와 지역관계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제작협력금이 원래 청구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이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지역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집필했음이 인정된다.

② 제작협력금의 취지에 대해 F는 뒷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텔레비 도쿄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를 내고 있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또한 F의 취재

때 제작협력금의 취지가 명기된 원고 작성의 「출장감정에의 길」, 텔레비 도쿄의 청구서 및 텔레비 도쿄의 구좌에 붙입한 영수증의 각 사본을 입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제작협력금에 관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바로 제작협력금이 석연치 않은 금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前橋지역 출장감정에서는 제작협력금이 지불되지 않았어도 괜찮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취재 때 前橋의 지역관계자도 前橋의 출장감정은 원고 기획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텔레비 도쿄의 T2에 대한 취재결과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출장감정에는 지역 주최와 원고 주최가 있어 후자의 경우 제작협력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前橋에서는 원고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제작협력금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관계자 중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제작협력금의 청구가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원고에 대해 그런 취지의 취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前橋의 출장감정은 당초 지역주최로 기획되었다가 제작협력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지역 측이 단념한 것이며, 그 후 수 개월이 지난 다음 원고의 프로편성 필요에 따라 원고 주최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다. 前橋의 지역관계자의 말은, 이 두 개의 출장감정의 기획을 혼동했음이 판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이상에 의하면 피고들로서는 F 및 지역관계자에 대한 취재결과만으로 바로 본건 기사내용을 결론 내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취재도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러시아에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① 절도 의혹이라는 범죄행위의 존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기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게 됨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진술내용을 신중하게 음미하는 한편 객관적인 입증사실의 취재를 태만히 하지 말고, 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신용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집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B와 A가 본건 로케에서의 코디네이터를 둘러싼 트러블로, 원고 등에 대한 적의(敵意)와 악감정을 품고 있음은 그들에 대한 취재결과에 의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애초부터 그들의 진술을 상당한 정도 예누리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B의 진술은, 본건 미술관에서 C가 「根付」를 응시했다는 것 뿐, 동인이 「根付」를 절도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며, 또 러시아 공항에서 N4와 세관직원 간의 교환에 대해서도 시종 목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후에 관계자의 언동을 근거로 「根付」의 절도가 있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그 추론에는 비약이 있으며, 단순한 억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케에 있어서의 「根付」의 조사 중 절도의 기회가 있었는지, 혹은 「根付」의 절도가 발각되었는데 러시아의 세관이 그대로 출국을 허용했는지 등 내용자체에도 합리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점이 있어, 신용성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C외에 본건 로케의 관계자들이 절도 의혹을 부정하고 있고, 진술의 사소한 부분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공항에서 C가 금족(禁足)을 당한 것은 통화(通貨)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였다는 점 및 「根付」의 절도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 신용성을 배척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D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는 점, D에 대한 취재가, 피고 Y3가 B를 동행, 오로지 B가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이에 D의 동의를 얻으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D가 경계를 갖게 된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D의 진술의 신용성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입증조사에 있어서도 이미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코디네이트 회사를 통해 러시아의 모스크바 세관당국 및 본건 미술관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관계자 중에서 미술품의 절도 혐의로 세관당국에 신병이 구속된 자는 없으며,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도난당한 흔적이 없다는 회답을 받아놓고 있는 바, 본건은 반드시 속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로서도 당연히 이에 대한 입증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입국 시 엔화를 신고하지 않아 출국 시에 갖고 나올 수 없었으며, 세관원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달러로 환전한 후 갖고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 Y2는 여행사에 확인 결과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기 때문에 C의 변명은 신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점도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코디네이트 회사를 통해 조회한 바, 입국 시에 통화의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규칙을 위반한 경우, 환전소가 발행한 통화취득에 관한 은행의 증명서가 그 통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관직원이 이체(移替)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회답을 받아놓고 있었으며, 과연 피고 Y2가 러시아 실정에 밝은 여행사를 상대로 충분한 조회를 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② 이상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계자의 진술내용을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절도 의혹을 부정하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을 안이하게 배척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입증조사도 태만

히 하여, 그 자체 신용성을 떨어뜨리고,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B 및 A의 진술 만에 의거, 절도 의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집필한 것으로, 피고들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을 진실로 오신(誤信)한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쟁점5에 관하여

이미 판시한대로 본건 기사 등의 게재에 의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는 인정될 수 있는 바, 이에 의한 신용저하 등의 비재산적손해(무형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① 본건 기사 및 본건 광고는 원고가 출장감정 때 제작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표면에 내세울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을 지역에 요구한 의혹 및 본건 로케에 참가한 감정사가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미술품을 절도한 의혹이 있음을 적시한 것이며, 적시사실은 모두 원고 또는 그 관계인에게 범죄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비난이 큰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명예훼손 못한 내용의 문언을 타이틀 등에 사용하여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표현행위의 내용 자체가 명예·신용에 대한 침해성이 높다는 것 ② 본건 주간지는 약 72만 부 발행되고, 또한 본건 광고는 전국지 및 전동차 내에 매다는 광고에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본건 명예훼손 행위는 다수인이 볼 수 있었다는 것 ③ 모든 기사에서 피고들은 취재결과의 충분한 검토 및 필요한 반면(半面) 취재와 입증취재를 태만히 하여 본건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 ④ 원고는 텔레비전용 프로를 제작·제공하는 회사로서, 프로의 스폰서 기업을 획득함에 있어, 클린기업의 이미지가 극히 중요하며, 지금까지 프로제작을 통해 업계에서 일정한 평가를 쌓아왔다고 인정되어, 본건 기사에 의해 명예·신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인(推認)된다고 한 본

건에서의 침해양태나 원고의 업무성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손해(무형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한다면 500만 엔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5. 쟁점6에 관하여

본건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죄광고의 내용 및 게재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고의 명예는 본건 기사 뿐 아니라 본건 광고에 의해서도 침해되었는데, 본건 광고의 기재내용은 본건 제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명칭이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본건 광고만으로 바로 밝혀지지 않으므로 본건 광고에 의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본건 기사에 의한 것 보다는 작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죄광고도 『週刊新潮』에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전국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지는 없다. 또 사죄광고의 문언은 피고회사의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이 본건 기사에 의한 원고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별지 1과 같이 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별지 2 및 3 기재대로의 사죄광고 게재를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본건 기사의 오보를 사죄하는 광고의 게재로 충분하며, 원고의 관계자에 사죄하거나 영성한 취재자세의 자인이나 앞으로의 보도 방침에 관한 언급까지 사죄광고의 문언에 포함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회복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별지 1 (1) 사죄광고내용 (생략)}

출 처 : 『판례타임즈』 1243호 (2007. 9. 1.) pp. 190~207.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영국사례 1

**언론이 취재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면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PCC는 『Daily Record』지의 2007년 9월 5일자 “Ferris의 세 번째 아이”와 “Ferris의 여아” 제하의 두 기사가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3조(프라이버시), 제4조(위협) 및 제6조(아동위반)을 위반했다고 Carolyn Cunningham과 Paul John Ferris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을 일부 위반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으며 다른 쟁점들은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 딸의 이름과 함께 그 출생을 공개했고 ‘범죄자들의 세계’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사에서) ‘폭력배’로 묘사된 불만신청인(Ferris)이 아이의 출생을 비밀에 불임으로써 자신의 가족들을 보복 공격으로부터 보호

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출생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려 시도하지 않았으며, 인용된 소식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복의 위협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아이의 신원이 무단으로 차용되었으며 소제가 공공연하게 알려졌다고 항의했다. 불만신청인은 『Daily Record』지가 아이의 사생활을 낱알이 공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만신청인(Ferris)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은 아동과 관련한 윤리강령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들이 불만신청인(Cunningham)이 전에 살던 집 밖에서 사흘간 대기하며 불만신청인의 아들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들은 이웃들이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야 비로소 철

수했다.

‘범죄자들의 세계’의 소식통을 근거로 기사를 썼던 『Daily Record』지는 문은 기사 발행 전에 불만신청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Daily Record』지는 불만신청인들에게 공개편지나 후속 기사의 형식으로 문제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그러나 『Daily Record』지는 기사가 불만신청인의 딸의 이름과 구체적인 거주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신원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Daily Record』지는 어느 누구도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Daily Record』지는 불만신청인(Cunningham)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캐지 않았으며 불만신청인(Cunningham)이 전에 살던 집의 이웃들이 취재차 와 있던 기자들에게 떠나달라는 요구했던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PCC는 윤리강령은 저널리스트들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하므로 『Daily Record』지가 인

용한 소식통이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조사할 수는 없었다. PCC는 언론이 불만신청인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판단했다. PCC는 편지나 별도의 기사를 실어주겠다는 제안을 불만신청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출생을 비밀로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PCC는 『Daily Record』지의 후속 조치는 충분했다고 보았다.

또한 PCC는 유아의 이름과 유아와 불만신청인이 사는 동네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제3조 프라이버시와 제6조 아동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아이의 출생 사실 자체와 아이의 부모(불만신청인)가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여 출생을 비밀로 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PCC는 유아의 이름, 출생 사실, 거주 동네 등 아이에 관한 정보는 피상적이었다고 보았고 아이의 이름과 출생이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도 나오므로 아이의 이름과 출생은 공적인 기록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PCC는 ‘위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4조(위협)는 저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PCC는 제4조는 저널리스트들이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끝까지 취재하

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CC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저널리스트들이 인터뷰를 거부한 어느 누구에게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나 따라다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

혔다. 또한 PCC는 위협받았다고 이야기 된 사람들이 직접 PCC에 불만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PCC는 제4조(위협)와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쟁점이 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영국사례 2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사적 사실을 보도한 경우 언론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영국 PCC는 익명의 불만신청인이 Swan Turton 변호인단을 통해 『OK! Magazine』이 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어느 남자 유명인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사는 남자 유명인사와 불만신청인이 ‘알코올중독자는 아무나 모여라(이하 알아모)’라는 모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두 사람을 찍은 사진의 제목에서도 이들이 ‘알아모’ 모임에 출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만신청인의 변호사는 문제의 기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알코올중독자이고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는 언론에 전혀 알려진 적이 없던 내용인

데다 기사에는 ‘알아모’ 모임 밖에서의 불만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어 불쾌감을 더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한 『OK! Magazine』지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보낸 편지에 직접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OK! Magazine』지는 불만신청인이 문제 삼은 내용은 기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친구인 저명인사와 그 모임에 동행했던 것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OK! Magazine』지는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알코올중독 치료에 관한 어떠한 세부사항을 신지 않았고 독자들은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저명인사 친구가 도덕적으로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알아모’ 모임에 참석하기만 한 것일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 주

장했다. 『OK! Magazine』지는 불만 신청인이 이 기사의 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불만신청인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으며 불만신청인이 문제 삼은 내용을 다시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CC는 『OK! Magazine』지가 불만신청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출판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PCC는 사진, 사진제목, 기사의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불만신청인의 ‘알아모’ 모임 참석과 관련해 불만신청인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이 과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사실이며, 치료 전력을 불만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PCC는 판단했다.

뉴질랜드 사례 1

의견임이 명백한 내용의 경우 이에 대한 불만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Tauranga 도시의 변호사인 R. Lavén가 『Bay of Plenty Times』지의 2007년 10월 16일자 의견란에 게재된 기사들이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등을 지키지 못했이라며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Bay of Plenty Times』기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불만신청을 초래한 두 번째 부분은 변호사를 비꼬는 미국 농담을 다른 방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편 『Bay of Plenty Times』지의 칼럼니스트는 Canterbury 학생 잡지인 『Canta』가 인기 있는 젊은 영화배우들을 그들의 성적매력에 따라 평가한 익명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계속해

서 비판했다. 『Canta』의 익명 기사는 몇몇 이성애자 남자들도 그 젊은 배우들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을 거 같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Bay of Plenty Times』지의 칼럼은 예상치 못한 비판으로 마지막 문장을 맺었는데, 『Bay of Plenty Times』지의 칼럼니스트가 성적 확대를 묵과하는 조잡한 『Canta』의 기사를 비판한 것과 앞서 언급한 『Bay of Plenty Times』지 칼럼의 두 번째 부분에서 변호사를 비꼬아 비판했던 내용을 연결시킨 것이다.

불만신청인은 『Bay of Plenty Times』지 칼럼의 두 번째 부분 전체 그리고 특히 마지막 문장이 부정확하고, 불공평하며, 불균형적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변호사에 관한 저급한 논평들은 의견을 가장하여 실증적인 증거나 이유 없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체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껄이는 농담들이 의견의 개진이라고 보지 않으며 저급한 언동을 할 목적으로 변호사들을 아동 학대에 연결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ay of Plenty Times』지의 편집자는 불만신청인에게 전달한 답변과 이후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서 밝힌 답변 모두에서 강력한 어조로 반응했다. 편집

자는 그 칼럼은 순전히 그날의 논점들에 관한 칼럼니스트들의 의견일 뿐임을 명백히 했다. 편집자는 종종 해학과 풍자를 사용하여 그의 관점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는 만일 불만신청인이 그 칼럼을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안 읽으면 그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들이 공중을 즐겁게 하거나 혹은 그들을 토론과 논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의견 기사들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 칼럼은 『Bay of Plenty Times』지의 의견란에 분명히 실렸다고 판단했다. □

아님』을 특별히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편집장은 그 기사는 정확하고, 균형적이며, 공평한 것은 물론 『Herald』지가 그 행사를 다룬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기사를 작성한 저널리스트는 “그날 밤 더 가치 있는 행사들에 관하여 매우 적절하게 보도했다”며 불만신청을 한 불만신청인은 그 모임에 참가한 12,000명의 군중 중에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사례 2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이 중요하지만 모든 관점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모두 대변될 수는 없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Benny Hinn이 Auckland에서 지난 2007년 6월 10일 개최한 모임에 관한 『Herald』지의 일요일 보도에 관하여 Thijs Drupsteen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Herald』지 일요일자가 부정확, 불공평, 불균형하게 불만신청인이 개최한 모임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2007년 6월 14일에 기자가 “모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열거했고 그 모임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적인 사건 중 어느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기자는 금요일 모임에만 참석했지만, 텔레비전 복음 전도사인 Benny Hinn은 세 번

의 행사를 열었고 불만신청인은 모두 참석했으며 균형적인 보도라면 기사에서 기자가 열거한 10가지 부정적인 점들과 최소한 동일한 수의 기적적인 사건과 치유의 간증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박스 모양의 표를 첨부하여 Benny Hinn 목사와 Dalai Lama를 비교했는데 그 내용이 균형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erald』지의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다. 편집장은 “Benny Hinn 목사의 도움으로 목발을 더 이상 짚지 않아도 되는 기적을 체험한 참가자”와 대화하고 이를 보도한 것은 “결코 부정적인 행사만을 보도한 것이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편집장은 신문과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무엇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편집장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결정에 신문의 판매부수가 좌지우지 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사건의 기사에서처럼 보도와 편집자의 판단이 모든 독자를 항상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신문이 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길 원한다면 특별한 이해관계나 지대한 개인적인 관심들에 비위를 맞추는 일을 필요에 따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을 위해 존재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모든 관점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다 대변될 수 없으며 종종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고 본다. 종교적인 믿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점은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며 해당 기자는 그가

본대로 모임을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판단했다. □

호주사례 1

언론이 경찰을 통해 입수한 목격자들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특히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Gold Coast Bulletin』지가 지난 2007년 10월 13일자 “글라이더 조종사, 산에서 수직하강하다 사망” 제하의 기사에 대해 Geoffrey Martin가 제기한 불만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한 행글라이더 조종사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사고 현장에 있던 세 명의 이름을 인용했는데 불만신청인이자 행글라이딩 행사의 참가자였던 Geoffrey Martin, 사고를 당한 공군 상사 Mike Jones 그리고 사고 피해자의 친구인 Len Paton이었다. 기사는 소방대의 한 고위 관료도 인터뷰했는데 이 관료가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이 동의 없이 언급되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그가 속한 협회에서 언론의 인터뷰를 만류하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언론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명성에 흠결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old Coast Bulletin』지는 불만신청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기사에 실린 불만신청인의 논평은 행글라이딩과 관련된 위험요소와 행글라이딩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관한 짧은 설명이었기 때문에 불만신청인의 의견이 기사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불만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이

기사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에 의해 제공된 세부사항 때문인데, 추락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방식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의 신원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지 걱정하는 불만신청인의 입장과 달리, 호주 언론평의회는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Gold Coast Bulletin』지가 익명을 요구했던 불만신청인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유감이나 이것 자체만으로는 호주 언론평의회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만한 신원에 관한 다른 사실들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언론이 경찰을 통해 입수한 목격자들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특히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다. □

호주사례 2

기사의 사실적인 부분과 관련 없는 제목을 사용한 경우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Daily Telegraph』지가 아동 살인 전과자

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전과자가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제기된 불만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The Daily Telegraph』지는 문제의 기사에서 이 전과자가 거주 중인 곳이 초등학교 인접 지역임을 발견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몇몇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그릇된 사실을 담고 있고, 정보가 정직하고 온당한 방식으로 수집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았고 사실들이 부정확하게 전달된 데다, “우리 골목에 사는 맹수”라는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The Daily Telegraph』지는 이 전과자가 1999년에 출

소한 이래로 이 남자와 관련된 보도를 강경조로 일관되게 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The Daily Telegraph』지는 이 남자가 평생 가석방 상태이며 전자팔찌를 늘 차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이 전과자가 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The Daily Telegraph』지가 이를 보도한 것은 정당했다고 봤다. 또한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Daily Telegraph』지가 블로그 사이트에 다양한 관점을 올렸으며 Inside Edition 섹션에서는 범죄를 저지르

고 형을 마친 사람이 사회로 재편입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과 문제들을 탐색한 내용들을 게재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Daily Telegraph』지가 전과자 문제를 다룬 전체적인 내용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토론을 도모했다는 것은 공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를 고려한 것이며 균형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기사 제목에서 사용한 ‘맹수’라는 용어는 기사의 사실적인 부분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 강상현 외(2008). 디지털 방송 법제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형철(2007). 한국 방송정책의 공익성 실현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새 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 세미나 발제문. 2007. 12. 27.
- 김 성(2007).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광주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7. 10. 16.
- 김미영(2007, 12월). 연예인 이혼 관련 보도 - 이혼보도, 속보 경쟁할 사안 아니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4호, 97-100.
- 김민정(2007, 겨울).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현황.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21-33.
- 김시철(2008). 언론법 판례의 최근 동향 분석.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8년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세미나 - 언론법의 최근 동향' 발제문. 2008. 3. 7.
- 김재영·양선희(2007). 한·미 신문의 윤리적 실천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통권 제51권 6호, 243-266.
- 김창룡(2007, 하반기). 신장아 보도, 권력형 비리를 추적하는 언론의 빛과 그림자.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20호, 22-30.
- 박범석(2007, 하권). 신문사와 포털의 이용허락 계약.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2호, 61-84.
- 박용상(2007).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박진우(2007, 겨울).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52-64.
- 방석호(2007, 9월). 포털의 검색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7-3, 39-68.
- 성동규(2007). 인터넷 미디어 정책 방향 - 규제와 진흥의 조율. 한국언론학회 주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II - 진단과 대안 토론회 3' 발제문. 2008. 1. 17.
- 성동규(2008, 2월). 2008년 주목해야 할 언론 이슈(인터넷) -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인터넷법 시급.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6호, 17-21.
- 성숙희(2008, 2월). 2008년 주목해야 할 언론 이슈(미디어 융합과 규제환경) -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등 미디어 지형 변화.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6호, 26-29.
- 손태규(2007). 기자와 정보공개법.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2007년도 편협 정보공개법세미나' 발제문. 2007. 11. 22.
- 송경재(2008). 네트워크 사회의 인권 침해와 언론. 언론인권센터 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8. 2. 21.
- 송의호(2007).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 안 혁(2007, 겨울). 언론 현장에서 본 언론법제 교육 실태(I).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34-40.
- 안명규(2007). 제17대 대선과 인터넷 언론 :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재단 주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언론: 종합 평가와 과제' 토론회 발제문. 2007. 12. 27.
- 양재규(2007, 12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1 - 사진, 함부로 찍거나 함부로 쓸 일 아니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4호, 126-129.
- 양재규(2007, 겨울).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65-84.
- 양재규(2008, 1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2 - '중대한 공익상 필요' 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5호, 150-153.
- 양재규(2008, 2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3 - 취재원 보호는 전가의 보도인가?_선택도 결과도 기자 본인의 몫.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6호, 130-

- 133.
- 엄용섭(2008). 언론정책의 최근 동향 분석: 방송통신융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8년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세미나 - 언론법의 최근 동향' 발제문. 2008. 3. 7.
- 유일상(2007). 언론법제론. 서울: 박영사.
- 윤성옥(2007, 겨울).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 통권 제40호, 150-191.
- 이민영(2008). 컨버전스와 미디어법.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부하(2007). 표현의 자유와 미국 헌법.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상기(2007, 12월). 일간지 인터넷 판의 선정성 - 수익 모델 개발하고 선정적 콘텐츠 걷어 내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4호, 116-120.
- 이상언(2007, 겨울). 언론 현장에서 본 언론법제 교육 실태(II).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41-44.
- 이상정(2007, 하권). 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2호, 9-31.
- 이인호(2007). 모델영화와 인격권.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이재진(2007, 겨울).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쟁점.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4-20.
- 이재진·이승선(2008).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8년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세미나 - 언론법의 최근 동향' 발제문. 2008. 3. 7.
- 임종일(2007). 선거보도심의와 지역 인터넷 신문의 올바른 대선보도.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주최 '17대 대선과 지역 인터넷 신문의 역할' 세미나 발제문. 2007. 12. 1.
- 장행훈(2008, 2월). 장행훈의 JOURNALISM CRITIQUE 41_새 정부의 언론정책 - 여론 수렴 없는 신문법 폐지는 민주주의에 큰 위협.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6호, 54-57.
- 전관석(2007, 겨울). 언론 현장에서 본 언론법제 교육 실태(III).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45-51.
- 정용준(2007). 유료방송의 소유 및 진입 규제 개선 방안.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 '차기정부 방송통신융합 정책 기획포럼 4' 발제문. 2007. 12. 7.
- 정윤식(2007). 한국 방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법제 개편: 자유/공익/산업의 조화 실현. 한국방송학회 주최 '새 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 세미나 발제문. 2007. 12. 27.
- 정재호(2007). 정보공개청구 사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2007년도 편협 정보공개법세미나' 발제문. 2007. 11. 22.
- 정종섭(2007). 언론과 법의 지배. 서울: 박영사.
- 조연하(2007, 겨울). 언론의 성적 선정적 보도와 여성의 인격권. 언론중재, 통권 제105호, 134-143.
- 최영재(2007). 새 정부, 신문/언론 정책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주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II - 진단과 대안 토론회 3' 발제문. 2008. 1. 17.
- 최재영·김민재(2007).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대선 관련 포털뉴스서비스 분석' 세미나 발제문. 2007. 12. 21.
- 최진순(2008, 2월). IPTV법 통과와 신문사의 미래전략 - IPTV 이전에 고품질 영상을 생산하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6호, 120-124.
- 한위수(2007). 언론관계소송.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 한창호(2008, 1월). 2008 언론에 바란다 - 한 개인의 피해에도 관심 뒤 언론의 신뢰 세우길.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5호, 17-19.
- 황성기(2007, 하권).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최근 입법동향의 문제점.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2호, 32-60.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1.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